

발 간 등 록 번 호

11-1230000-000200-11

세계 최고의 공공부문 물적자원 조달·관리 전문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PUBLIC PROCUREMENT SERVICE



나라살림 가치창조

**조달청**

# 조달청 심벌마크 & 캐릭터



## 심벌마크

- 기업가적 혁신마인드로 '세계일류 조달전문기관' 도약 의지를 형성화
- 조달청의 전자조달, 클린조달, 세계일류 서비스의 의지 반영

조달청(PPS)의 P(Procurement)

\* pps : Public Procurement Service

전자조달의 e(Electronic)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운영 주체

클린조달의 C(Clean)

세계일류 조달기관의 1(No. 1)

## 캐릭터 | 나르미, Narmi

- 투명을 상징하는 **황새** 모습
- 조달 서비스를 **바르고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
- **전자정부의 의미**를 담은 첨단 이미지

나르미의 꿈은 누구 하나에게 행복이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두에게 배달되는 멋진 세상을 만드는 것,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나르미는 힘차게 하늘을 날고 있다.



**목 차**

**제1장 정부계약제도 일반**

**제1절 적용법규, 소관, 용어 등**

- 1.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 3
- 2. 국가계약법령 조항중 “계약대상자” 란? ..... 4
- 3.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 ..... 4
- 4. 예정가격 결정의 적용 대상 기관은? ..... 5
- 5. 거래실례가격의 정의 ..... 6
- 6.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 7
- 7.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용역"의 범위 ..... 8
-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협상적격자 등 ..... 8
- 9.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시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 9
- 10. 관급공사에서의 낙찰율의 산정 ..... 10
- 11. 현장대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하여 ..... 10
- 12.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 11
- 13.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계약의 유·무효 ..... 12

**제2절 관련법령 적용 기준**

- 1. 계약문서 적용의 우선순위 ..... 13
- 2.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 14
- 3.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 14
- 4.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의 법적 효력 ..... 15
- 5.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16
- 6.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 17
- 7. 협상계약에 있어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 18
- 8. 옵션계약기간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18
- 9. 최초 설계작업시 작업시간 부족에 따른 할증적용 가능여부 ..... 19
- 10. 공사용지 확보의 주체 ..... 20

11.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당시 기준 .....	21
12. 공기연장 관련 문서접수일 기준 .....	22
13. 준공검사 완료시점까지의 관리비용 부담주체 .....	22
14.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23
15. 법인합병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지위 승계여부 .....	23
16. 주계약자 (발주기관) 변경가능여부 ? .....	24
17. 특허시공 .....	24
18. 계약업체 명의 변경건 (전용실시권자에 대한 변경) .....	25
19. 국가계약법상 감독업무의 수행범위 .....	26
20.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	27
21. 공사중지기간 중 도로공사 구간내 사고 책임의 한계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는? .....	28
22. 공사비(산재보험료)계상 및 지불에 관한 질의 .....	29
23. P.S. 항목 중 품질시험비 정산처리에 대한 질의 .....	30
24. 특허공법으로서 신기술로 지정된 보호기간 경과후에 특허공법으로서의 설계에의 적용여부 .....	31
25. 특허 심의증인 공법은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	31
26. 계약체결후 분리발주에 따른 설계변경 .....	32

**제2장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제1절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1. 원가계산 용역기관 요건 .....	35
2. 거래실례가격의 의미 .....	36
3. 용역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 방법 .....	37
4. 잡재료비의 원가계산시 계산 방법에 대하여 .....	38
5.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	39
6.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	40
7.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에서 예정가격작성 .....	41
8. 계약금액이 ○○조합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와 조달청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에도 계약금액 환수요건에 해당하는지 .....	42

## 제2절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1) .....	44
2. 입찰참가자격(2) .....	44
3. 용역 입찰참가자격 .....	45
4.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란? .....	46
5. 법인의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주소변경 .....	47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정한 등록인증서 제출 .....	47
7. 대표대표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의 효력 및 성격 .....	48
8. 국가계약 공고조건에 따른 자격기준 .....	49
9. 중소기업자간 지명경쟁물품의 입찰대상자 선정 .....	50
10. 전세버스 임차를 위한 입찰공고 제한기준 .....	50
11. 지점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통한 입찰참여 가능여부 .....	51
12. 건축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감리수행 여부 .....	52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여부 .....	53
2.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	54
3. 미술품구매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가능여부 .....	56
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지명방법 .....	57
5. 시설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유무 .....	58
6.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구매입찰의 적법성 여부 .....	59
7. 입찰관련 업무의 건(제한경쟁) .....	60
8. 소독과 청소를 일괄발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	60
9.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	61
10.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시 지역제한의 가능여부 .....	62
1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한 후 실적제한이 중복제한인지 여부 .....	62
12. 국가계약법령상 부당특약 금지원칙 위배여부 .....	63

### 제3절 입찰방법, 공고 및 집행

#### 수의계약

1.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	64
2.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65
3.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제조공장 보유가 계약조건이 되는지 여부	65
4. 건설신기술을 보유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기간 및 법적근거	66
5. 신기술이전 협약체결 및 양수인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67
6.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토대상	67
7.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여부	68
8. ○○단체가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는지	69
9. 특정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근거의 법령조항 및 적법여부	70
10. 복지단체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국가계약법령상 위법여부	70
11.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물품이 아닐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71
12. 수의계약 한도액	72
13. 보수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73
14. 일괄입찰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73
15.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74

#### 입찰공고

1. 학술연구용역 대상여부	75
2. 특정제품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75
3. 물량내역서 교부에 관하여	76
4. 입찰시 특정물품이 아닌 기능 및 사양으로 정정	77
5. 용역계약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 근거와 적합성 여부	78
6.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게시일자와 입찰 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79
7. 입찰공고 방법의 적정성, 공고기간 요건구비 및 사업집행·사업유무 검증방법	80
8. 지적화정측량 계약	81
9. 업체자체 연구개발에 성공한 장비의 계약방법과 분할납품여부	82

#### 입찰집행

1. 유찰시 입찰절차는	83
--------------	----

2.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	83
3. 견적안내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을 입찰로 볼 것인지 여부 .....	84
4. 동가추첨을 포기했을 시 재입찰 참가 가능여부 .....	85
5.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란 .....	85
6. 발주처에 의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	86
7. 내역입찰에서 산출내역서의 정정에 대하여 .....	87
8.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질의(낙찰자 결정방법) .....	88
9.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법은 .....	89
10. 나라장터에 미 입력된 사항에 대한 적격심사 관련 .....	90
11. 수 개 품목을 1건으로 단가 입찰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계약 가능여부 ....	92

###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	93
2. 입찰보증금 연장 관련 .....	93
3. 건설업면허를 포괄 양수한 법인의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여부 .....	94
4. 낙찰자가 계약이행불가능시 입찰보증금 귀속여부 .....	95

### 제4절 입찰의 유·무효

1. 입찰 유·무효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	96
2. 내역입찰의 유무효 및 수정 가능여부 .....	97
3. 임대인이 임대물건에 대하여 직접공사를 요청 .....	98
4. 내역입찰의 무효여부 및 수정방법 .....	98
5. 면허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에서 계약체결 후 그 입찰 및 계약이 원인무효인지 여부 .....	99

### 제5절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PQ심사

1. 저가심사시 공종의 선정 및 구분 방법 .....	100
2. 기업합병시 사전심사기준 적용 기준일 .....	102
3. 기업의 합병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	103
4.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건설업 분할·신설시 경영상태 평가 .....	104

### 적격심사

1. 검침용역업무의 적격심사 기준 ..... 106
2. 전자입찰 관련 적격심사 자료 적용 ..... 107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 입찰가격평점산정 ..... 108
4. 개인사업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는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나 영업장 소재지의 제무제표 또는 신인도 자료의 경영상태 인정여부 ..... 109

### 낙찰자 선정

1. 협상계약에서 배점한도 적용 적법성 여부 ..... 110
2. 협상계약에서 가격점수 평가 ..... 110
3. 적격심사시 잘못 입력된 전산자료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 111
4. 계약체결 가능여부 ..... 112
5. 유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 113
6.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을 적용방법 ..... 113

### 계약실적의 인정

1. 용역입찰시 이행실적 규제 ..... 114
2. 입찰참가자격 유무효 및 실적인정 범위 ..... 115
3. 실적제한 입찰에 있어서 공사실적 인정 여부 ..... 116
4. 실적제한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여부 ..... 118
5. 면허 취득과 납품실적 인정여부 ..... 119
6. 선금 취득 전의 실적인정 여부 ..... 120
7. 공동수급 시 용역실적 인정에 대하여 ..... 121
8.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준공의 기준일에 대하여 ..... 122
9. 계열사간 실적승계 가능여부 ..... 123
10.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인정 여부 ..... 123
11. 하도급 실적의 인정여부 ..... 124
12. 하도급업체 시공 전문공사 실적을 원도급업체가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아 실적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 125



**제3장 계약관리**

**제1절 계약체결**

**계약보증금**

- 1.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 129
- 2.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 130
- 3. 정부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 130
- 4. 장기계속공사 연차준공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 ..... 131

**연대보증**

- 1. 연대보증인 변경 가능여부 ..... 132
- 2. 공사이행 보증방법 변경 ..... 133

**공사손해보험**

- 1.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 133
- 2. 공사비 증액시 건설공사 손해보험 추가 부보여부 ..... 134
- 3.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임의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135
- 4. 공사손해보험료 정산방법 ..... 136

**제2절 감독 및 인수**

**감독, 검사 및 검수**

- 1. 용역업무 배치인력 운용 ..... 137
- 2. 검사관 지정시기 ..... 138
- 3. 외산 사급자재(철근) 공급원 승인 ..... 138
- 4. 관급자재 관리 한계 ..... 139
- 5. 특정제품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 140
- 6. 기성대가 지급시의 약식기성검사 기준 ..... 141
- 7. 감리원(공사감독관)이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한 제품을 터기공사의  
자재로 사용가능여부 등 ..... 142
- 8. 책임감리현장에서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 및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책임소재 ..... 143

### 납품 및 준공

1. KS 인증기준 ..... 144
2. 문서 접수일자 판단기준 ..... 145
3.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 145
4. 납품은 하였으나 발주처가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준공에 대하여 ..... 146
5. 납품 후 사용규격 변경 ..... 148
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상대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의 변경 가능여부, 지점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와 그 방법은? ..... 149

## 제3절 선금급 및 대가지급

### 선금급

1. 물품구매계약에서 선금지급 가능여부 ..... 150
2. 구매설치계약의 선금지급 가능여부 ..... 151
3. 기성금 지급후 선금지급 가능여부 ..... 152
4. 선금지급보증서 미제출시 선금잔액 공제 ..... 153
5. 선금급 반환 ..... 154
6. 선금잔액 반환에 대한 약정이자 적용이율 ..... 155
7. 선금정산 가능여부(1) ..... 156
8. 선금정산 가능여부(2) ..... 157

### 대가지급

1. 연간단가물품의 납품('04)후 대금청구('06) 가능여부 ..... 158
2. 다수물품을 동시에 매각하는 입찰에서 낙찰물품의 대금납부 방법 ..... 159
3. 선감리의 기성대가 지급 ..... 160
4. 우선시공물량에 대한 기성신청 가능여부 ..... 160
5.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지급을 개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61
6. BTL사업 공사 기성금 지급 ..... 162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관련 ..... 163
8. 공사타절시 이자보상에 대한 유권해석 ..... 164

## 제4절 보증시공 하자관리

### 보증시공

1. 무하자확인서 발급 가능여부(보증기관 변경 관련) ..... 165
2. 시공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책임과 보수비 청구 ..... 166
3.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과 입찰참가자격제한 ..... 167

### 하자보증금

1. 장기계속공사에서 기성부분 인수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여부 ..... 168
2.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 169
3. 현금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 169
4. 하자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으로 동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 170

### 하자처리

1. 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수책임 해당여부 ..... 171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하자책임의 범위 ..... 172
3. ○○대로 현수교 케이블밴드 안전성에 대한 하자관련 질의 ..... 172
4. 복합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을 위한 공종분류에 대하여 ..... 173
5. 실시설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운영효율 저하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 ..... 174
6. 건설업양도시 양도자가 계속 시공할 수 있는지 ..... 175
7.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하자보수책임여부 ..... 175

## 제5절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 계약기간 연장

1. 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 176
2. 계약기간과 절대공기와 동일여부 및 공휴일의 합산여부, 강우일수  
    전체의 공기연장 가능여부 ..... 177
3. 계약체결 후 입찰공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위법 여부 ..... 178
4. 집단민원·인허가의 지연과 발주처의 책임여부 ..... 179

### 지체상금

- 1. 지체일수 산입 여부 ..... 180
- 2. 지체상금 산정에 관하여(분할 납품) ..... 181
- 3.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 ..... 182
- 4. 지체상금 관련 질의(민원 발생 등) ..... 183
- 5.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부분인수) ..... 185
- 6.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질의(부분준공) ..... 186
- 7.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1) ..... 187
- 8.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2) ..... 188

## 제6절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 계약해제·해지

- 1.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 189
- 2. 공사수행 파기에 의한 공사비 정산 ..... 190

### 부정당업자 제재

- 1.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 191
- 2. 물품구매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1항2호의 적용 가부 ..... 192
- 3.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가능 여부 ..... 192
- 4.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 194
- 5. 공동도급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질의(하도급 위반) ..... 194
- 6. 뇌물 공여시 부정당업자 제재 승계여부 ..... 195
- 7. 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각자대표법인에 대한 효력 ..... 196

## 제4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제1절 조정기준

- 1. 계약금액 조정가능 ..... 201
- 2.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에 관한 질의 ..... 202
- 3. 설계용역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203

4.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204
5.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	205
6.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 .....	205
7.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206
8.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207
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소급적용가능여부 .....	208
10. 물품납품계약에 대한 적용대가 산정 등 .....	209
11. 구매계약의 경우 조정기준일 및 적용대가 산정 .....	210
12. 물가변동 산출내역서 비목군 분류시 기준 내역 .....	211
1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및 물가변동 신청기관은? ...	212
14.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일이란? ....	212
15.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방법 .....	213
1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214
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체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 ...	215
18. 물품구매계약에서 공사중지기간에 대한 물가변동 반영여부 .....	216
19.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217
20.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	218
21. 여러차례 물가 상승분을 한번에 걸쳐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19
22. 물가변동조정신청 후 지급받은 기성대가 공제여부 .....	220
23.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차수준공대가 공제여부 .....	220
24.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	221

## 제2절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1. 건설기계계의 기계경비지수 산정 .....	222
2. 건설기계경비 물가변동 조정업무 .....	222
3. 공사손해보험료의 물가변동대가 적용여부 .....	223
4. 수입품 및 노임의 지수산정 .....	224
5. 물가변동 수입물가지수 적용방법 .....	226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수입물가지수 관련 .....	226
7. 물가변동시 정기안전점검비 등 경비성 비목의 적용대가 제외 여부 ....	227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적용하는 조정율과 정산항목은 ....	227
9. 조정율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	228

### 제3절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1. 물가변동 감액조정 .....	229
2. 청소용역계약에서의 물가변동관련 .....	230
3.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등락을 산정 .....	231
4. 물가변동(품목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방법 .....	232
5.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아닐 경우의 가격 산정방법 .....	232
6. 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로 명시된 경우 계약의 원칙에의 저축여부 .....	233
7. 민자사업의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234

### 제4절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1. 물가변동 반영 .....	235
2.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235
3.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	236
4.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있어 적용대가 산정방법 .....	237
5.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238
6.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 .....	239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총공사 공정표로 산정하는지 .....	240

## 제5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제1절 설계변경 기준

1.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	243
2. 산출내역서(인테리어 specification)의 설계서에의 해당여부 .....	244
3. 재설계도서 교부여부 및 공사비 관련 질의 .....	245
4. 전력비 부담관련 현장설명서의 해석 .....	246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	247
6. PHC PILE 두부보강 이음자재 비용부담 주체 .....	248
7. 오탉방지막 설치를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249
8. 세륜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반영여부 .....	249
9. 설계변경 관련 자재 할증 적용 .....	250
10. 설계변경 관련 .....	250

11. 설계변경 가능 .....	251
12. 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	252
1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253
14.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	254
15. 1식단가 설계변경시 단가변경 가능여부 .....	255
16.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56
17.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 자료가 잘못 책정된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256
18. 규격·가격분리입찰로 집행된 계약 건 규격변경 가능여부 .....	257
19. 기성대가 수령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258
20. 하자보수 완료후 원가계산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	259
2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0분의 10 기준 .....	260
22. 조합을 통한 계약이행중 추가물량의 계약내용 변경 .....	261
23. 면적의 변경이 없는 자재규격의 변경시공과 설계변경 .....	261
24. 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가능 여부 .....	262
25. 설계단가 과소산출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263
26. 장기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263
27.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	264
28.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적용 제외 여부 .....	266
29.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	267
30. 설계변경시 예비율 적용방법 .....	267
31.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 여부 .....	268
32.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과 기타경비의 계상방법 .....	269
33.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	270
3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등 단가 .....	270
35. 가시설 강재손료(시트파일, 락) 기간의 추가적용시 신규비목 여부 .....	271
36. 설계변경시 단가적용과 실적공사비 단가 .....	272
37. E/S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	273
38. 설계변경과정에서 단가적용 오류시 정정 가능여부 .....	273
39.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	274
40.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	275
41.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	276

## 제2절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상호모순

1. 설계변경 가능여부 .....	278
2. 알루미늄 창호공사 .....	279
3.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280
4. 물량내역서 누락공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단가 .....	281
5.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281
6.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282
7. 1식단가 공종의 경우 당초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 적용여부 .....	283
8. 신규단가 관련 .....	284
9. 설계변경 단가적용 .....	285
10. 조립식 강관동바리의 신규비목 적용 .....	286
11.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될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287
12. 신규단가 관련 (설계서 불분명) .....	287
13.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 불분명) .....	288
14.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	289
15.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290
16.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	291
17.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시공여부 .....	292
18.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293
19. 슬레이트(석면함유)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 등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294
20.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부담주체 .....	295
21. 시공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296
22.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또는 사급전환 가능여부 .....	296
23.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297
24. 발주처가 입찰시 작성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하는 경우 .....	298
25. 품셈적용 착오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299
26.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300
27. 자재수량 및 수급방법의 변경시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	300
28. 설계도와 계약내역서상의 시공자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	301
29. 안전점검비 부담주체 및 설계서간 불일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302
30.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	303
31.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간 상이, 특정제품) .....	303



### 제3절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경우

1. 단위중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304
2.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가시설물) .....	305
3. 작업현장 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	306
4. 시방서 해석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	307
5.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 .....	308
6.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상이 .....	309
7. 토질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309
8. 공사현장과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310
9.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및 단가 결정 방법 .....	311

### 제4절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 신기술사용료 지급 .....	312
2.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 .....	313
3. 신기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314
4.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대하여 .....	315
5. 당해 절감액의 의미 .....	316
6. 신기술공법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 가능여부 .....	316
7.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317

## 제6장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제1절 계약기간 연장

1.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기연장 가능 여부 .....	323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	324
3.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및 1식 단가조정 .....	324
4.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	326
5.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327
6. 장기계속공사 전체공기 연장시 손해보험 및 간접비 조정 .....	329
7. 하도급계약에 있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	330

## 제2절 운반거리 변경

1.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330
2. 현장여건과 다른 운반거리 및 운반량에 대한 설계변경 .....	331
3. 골재원 변경에 따른 사석단가 변경 .....	332
4.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332
5. 사토장 운반거리 실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334
6. 계약 후 사토장의 위치확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 .....	335
7. 사토장 운반거리 단축 .....	336
8. 토취장 변경에 의한 단가조정 .....	337
9. 토취장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단가 산정방법 .....	338
10. 설계변경(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관련 .....	339
11. 최저가 입찰 공사계약에서 운반로가 변경된 경우 실비산정방법 .....	340
12. 당초 설계서의 사용할 토취장의 자재(점토)가 부적격으로 적격자재가 있는 새로운 토취장으로 변경한 경우 운반거리와 자재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	341

## 제3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1.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산정 .....	342
2. 의무적 가입보험료의 정산관련 .....	343
3.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정산대상 .....	343
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시 납부한 금액 적용 기준 .....	344
5. 장기계속공사에서의 법정경비 정산방법 .....	345
6. 예정가격 작성기준 소급적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346
7. 사후정산 보험료의 예가금액 반영후 변경계약 .....	347
8. 대가지급시 경유세율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정산대상인지 .....	348
9. 가설재 손료 산정 .....	349
10. 작업부산물(고재) 공제 .....	350
11. 강재손료 적용방법 .....	351
12.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 .....	351
1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도급계약 정산여부 및 계약금액의 조정여부 .....	353
14. 계약체결이후 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 .....	353
15.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연륙교가 개통된 경우 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354

### 제4절 수급자재의 변경

1. 상호류 사급자재 전환 .....	355
2. 관급자재인지의 판단여부 .....	356
3.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	356
4.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	357

## 제7장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

1. 근무일수 .....	363
2. 기성청구시 계약금액 정산가능 여부 .....	364
3. 시공사책임하에 미술장식품 설치 가능여부 .....	365
4. 용역계약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	366
5. 실시설계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367
6. 장기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방법 .....	368
7.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369
8.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370
9. 공사비용 변동계약에 따른 감리용역비용의 조정 및 재계약 여부 .....	372
10.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의 분리계약 가능여부 .....	373

## 제8장 공동계약과 하도급

### 제1절 공동계약

#### 공통기준

1. 공동도급계약 .....	377
2.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적용 .....	378
3.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제한 .....	379
4.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계열회사 .....	379
5.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부분이란 .....	380
6.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대표자 선임 .....	381

7. 공동수급체 구성시 참여비율이 같을 경우 대표자 선정은? .....	382
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면허, 시공능력, 실적이라 함은 .....	383
9. 공동계약의 경우 보증금 납부방법 .....	384

### 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	384
2. 수급체구성원이 모두 면허 등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	385
3. 대표사의 중도 탈퇴와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 .....	386
4.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제재 및 기성대가 지급기준 .....	387
5. 공동도급사간 채권 양수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	388

### 분담이행방식

1.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	389
2. 건설업자와 일반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여부 .....	390
3. 대표사 단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	391
4. 분담이행방식에서 추가물량의 공정이 불분명한 경우 시공업체 선정기준은 .....	392

### 출자지분변경

1. 공동도급사 부도로 인한 지분을 변경 .....	393
2.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의 계약이행방법 .....	394
3. 가압류로 인한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의 탈퇴와 지분율의 변경 .....	396

## 제2절 하도급

### 하도급 일반

1. 하수급예정자 변경 .....	397
2.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	398
3.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	398
4.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 .....	399
5. 하도급업체의 타절정산과 물가변동 .....	400
6. 하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의 법적근거 .....	401
7. 소방공사를 부대공사로 하여 시공가능 여부 .....	402

8. 하도급계약업체 부도발생시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해지가능 여부 ..... 403

9. 발주기관의 승인없는 하도급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 404

10. 하수급예정자 계약포기시 하도급계획 변경 ..... 405

11.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 406

12. 발주처에서 하도급실적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406

**하도급 대가지급**

1.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 407

2.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408

3.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하도급변경의 적법성여부 ..... 409

4.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 410

**제9장 대형공사**

**제1절 공통기준**

1. 원안설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참가자격 ..... 413

2.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 ..... 415

3.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 416

4. 대형공사에 있어 사후환경영향평가의 분리발주 여부 ..... 417

5.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 418

6. 기본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실시설계시에 삭제할 수 있는지 ..... 418

7. 기본설계 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는지 ..... 419

8. 턴키공사 계약서류 우선순위 적용 ..... 420

9. 대안공사의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421

10. 턴키입찰에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산정 기준 ..... 421

11. 일괄입찰(Fast Track)에서 산출내역서의 작성주체 및 이윤율 등의  
 준비율은 당초 입찰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 422

12.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423

**제2절 설계비 보상**

1. 대안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 424

2. 건축설계 공모당선작의 권리 및 보상에 대하여 ..... 425
3. 대형공사에서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 ..... 425

### 제3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일괄입찰공사에서 물가변동 ..... 426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 427

### 제4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대형공사 수량정산 ..... 428
2.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에 대하여 ..... 429
3. 대형공사 인허가기관 요구사항 수용시의 설계변경 ..... 431
4. 암매각대 단가조정 ..... 432
5. 추가시설물의 설치요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433
6.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 433
7.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434
8.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 435
9. 대안공사의 설계변경 ..... 436
10. 대안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437
11. 대안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 ..... 438
12. 부분대안공사의 인허가기관 요구 수용과 위치변경 ..... 439
13.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정 ..... 440
14. 대안입찰에서 원안설계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441
15. 대안입찰공사의 문화재 시굴관련 계약금액조정 ..... 442
16. 대안입찰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 443
17. 대안입찰공사의 내역서상의 간접비 조정 가능여부 ..... 444
18. 대안입찰공사에서 설계오류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체공사계약금액의  
조정방법 ..... 445
19. 일괄입찰에서 계약이행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 ..... 446
20. 일괄입찰(Fast Track)공사의 계약금액조정 ..... 447
21.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 I ..... 448
22.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 II ..... 449
23. 일괄입찰에서의 설계변경(우선시공분 이외의 시공분) ..... 450
24. 일괄입찰공사의 신기술신공법적용에 의한 설계변경 ..... 451
25.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 452

26.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실시설계서 변경과 계약금액조정 ..... 453

27.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 453

28. 턴키공사에서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시 경우 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 ..... 454

29. 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방법 ..... 455

30.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 456

31.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457

**제5절 기타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기술제안입찰의 계약금액조정 ..... 458

2. 기술제안으로 일부 증가되는 관급자재의 구입비용 부담주체 ..... 459

3. 추가도급계약후 비상주감리원의 변경요청 반영여부 ..... 460

4. 턴키공사의 운반거리 정산 ..... 460

5.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 461

6. 턴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 462

7.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공사의 준공서면을 공사감독관이 준공일에 접수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송 중 분실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 463

8.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464

9.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 465

**제10장 국제입찰**

1. 국제입찰대상 여부 ..... 469

2.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의거 국제입찰 여부 ..... 469

3. 국제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 ..... 470

4. 국제입찰과 지역의무공동계약 ..... 471

5. 외국기업 참여시 불이익 해당여부 ..... 471

6. 국제입찰진행방법관련 ..... 472

7. 외국기업 평가 ..... 4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제1장 정부계약제도 일반



## 제1장 정부계약제도 일반

### 제1절 적용법규, 소관, 용어 등

#### 1.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법무 41301-1000, 2003. 08. 20

#### ■ 질 의

재정부,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 관련부처에 질의를 하면 소관부처로 이첩 또는 재 질의하도록 하거나 대부분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는데...

#### ■ 회 신

- 국가기관이 계약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질의답변을 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해석권한이 있으므로 소관이 아닌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이나 질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기관으로 이첩하거나 동 기관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질의내용이 법규해석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공사인 경우 설계서, 계약문서 및 계약조건, 현장여건 등)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함이 적절합니다.
- 앞으로 우리 청은 국가계약관련 법규해석 요청 및 각종 질의에 대하여 가능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본 질의 회신 내용은 국가기관에서 집행하는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2. 국가계약법령 조항중“계약대상자”란?

법무지원팀-2001, 2005-12-08

### ■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 중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를 의미하는지, 시공사를 의미하는지 ?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3.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

법무지원팀-1185, 2005-10-06

### ■ 질 의

1. 질의 1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는
2. 질의 2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은
3. 질의 3 :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견적서나 예산서와 관계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면 되는지

### ■ 회 신

#### 1.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서, 추

정가격이 50억 원 (현행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동 조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억 (현행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2.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인 바, 동 일반조건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4. 예정가격 결정의 적용 대상 기관은?

법무심사팀-522, 2005-05-24

### ■ 질 의

- 1) 계약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적용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 2) 수의계약의 견적서에 이윤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준칙에 의한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및 견적서에 명기된 이윤율이 동 준칙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동 이윤을 인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포함)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예정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 금액

또는 수의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금액(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은 입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경우는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현행 「예정 가격 작성 기준」( 계약예규 2200.04-160-4, 2007.10.12)】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국가기관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동 예규의 규정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지의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의계약 견적서에 이윤을 얼마나 반영할 지는 수의계약대상자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5. 거래실례가격의 정의

인터넷질의번호 9777, 2004. 8. 27

## ■ 질 의

-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의미는
- 상기의 거래실례가격이 의미하는 바가 계약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받은 견적에 의한 가격도 해당되는 것인지, 실제 거래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자”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임.

## 6.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인터넷질의번호 12787, 2004. 12. 18

### 질 의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22000.04-103-6, 2004. 4.6)에서 말하는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지칭하는 것인지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현행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현행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동 일반조건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임.

## 7.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용역"의 범위

법무지원팀-05-63, 2005-02-23

### ■ 질 의

녹지공원의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 위험수목 및 고사목 제거작업,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8호 마목”에 정한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 신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라 함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등 역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마”목에 정한 “용역”의 경우도 당해 사업목적 을 노무등 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개별법령에서 당해용역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동 용역사업의 수행자격,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정한 바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동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의 특성, 내용, 수행자격(면허, 등록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용역목적달성에 적합한 동법 관련 규정을 판단, 적용하여야 할 것임.

##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협상적격자 등

인터넷 질의 12086, 2004. 11. 26

### ■ 질 의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경우에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협상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 협상대상자와 협상시(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임) 협상대상자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협상대상자의 제시가격으로 협상을 성립(낙찰)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협상대상자의 최초 제시가격을 무시하고 별도의 협상(목표)가격 등을 추가로 결정하여 협상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입찰에 있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동 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당초 입찰공고에서 가격 협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였고, 협상대상자가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금액등의 조정없이 협상이 성립된 계약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 9.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시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인터넷질의번호 7638, 2004. 06. 14

## ■ 질 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서“사 급 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 ”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 및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를 의미한다 할 것임.

## 10. 관급공사에서의 낙찰율의 산정

법무지원팀-1531, 2005-11-03

### ■ 질 의

관급공사 에서 낙찰률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낙찰률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임.

## 11. 현장대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하여

법무지원팀-378, 2006-02-06

### ■ 질 의

전기공사계약의 경우 현장 대리인 선임 및 변경과 관련하여

1. 질의 1 :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는지, 또는 「전기공사법령」에 따르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전기공사법령」에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질의 2 : 당초 현장대리인 선임 기준이 중급기술자였으나 최초 현장대리인 선임시 특급기술자를 배치한 경우로서 동 특급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변경 배치함에 있어 그 자격기준은 당초의 선임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당초 배치한 특급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제1항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과 체결한 전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현장대리인은 「전기공사업법령」에 정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장대리인의 퇴사 등의 사유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된 당해 공사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격자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전기공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전기공사업법령」(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4 및 제12조의2제3항 관련 별표 4의2)을 토대로 사실판단하거나 「전기공사업법령」의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질의할 사항임.

## 12.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024, 2008-12-01

## ■ 질 의

물품구매입찰의 낙찰자가 사전규격공개와 입찰공고시 제시한 규격에 따라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함에 있어 ① 입찰공고된 규격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참고만 하고 임의의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② 특정규격 제품의 납품시 동등이상품으로 하면 되는지? ③ 동등이상 제시가 가능하면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 ■ 회 신

물품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 되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상표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쳤다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 명시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동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입찰조건·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규격서 등에 명시된 물품보다 동등이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용도와 규격 및 성능 등을 명시하는 객관적 자료(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13.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계약의 유·무효

법무지원팀-1412, 2005-10-19

#### ■ 질 의

1. 면허를 갖춘 경쟁업체 6개사를 선정, 타당성을 비교분석한 바, 응모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의계약을 하였음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그 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닌지
2. 1의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따른 행정벌 처분대상이 되는 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동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전상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실적의 인정여부

#### ■ 회 신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발주기관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등 포함)에 위배되게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 법령위배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원천무효인 계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법령 등의 관계법령의 위배정도와 위배의 정도가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국가계약법령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한 관계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의 소관 사항이 아님.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인정 여부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

## 제2절 관련법령 적용 기준

### 1. 계약문서 적용의 우선순위

인터넷 질의번호 4945, 2004. 2. 27

#### ■ 질 의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 계약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적용의 우선순위는

#### ■ 회 신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설계서(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정한 문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상호 보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우선순위는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한 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2.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법무 41301-55903, 2003. 11. 26

### ■ 질 의

1.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 산출내역서는 계약당사자중 어느 쪽이 제출한 내역서를 사용하는지
2. 지방서(규격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이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납품규격은

### ■ 회 신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동 일반조건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동 일반조건 제22조제4항에 따른 기납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규격서(지방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규격서(지방서)상의 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7조에 의하면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3. 날인이 없는 공사지방서의 효력

법무지원팀-441, 2005-08-11

### ■ 질 의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 당시 공사지방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인감날인 및 간인을 하지 않은 공사지방서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 ■ 회 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의거 필요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동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및 제5조에 정한 문서를 말하는 것인 바, 동 예규 제3조에 정한 계약문서 중 계약서를 제외한 계약문서는 반드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기명·날인하여야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동 예규 제3조에 따른 계약문서 중 설계서(동 예규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임.

#### 4.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의 법적 효력

법무 41301-55199, 2004. 03. 15

##### ■ 질 의

- 제안서를 심사한 후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에 제시된 작업량보다 과업지시서의 작업량이 더 많은 경우에
  - 증가된 작업량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 입찰공고상의 과업내용보다 추가된 내용을 제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추가 제안내용도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행치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받는지의 여부

##### ■ 회 신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바,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 내용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발주처가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업무를 지시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5.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무심사팀-673, 2004. 10. 18.

### ■ 질 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입찰방법이 대형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일반공사)로 심의·결정된 공사를 사후에 공사의 특성상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의 심의 시기는?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방법을 심의하여 동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의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기타공사)로 입찰방법을 심의, 결정한 후 동 공사 입찰방법을 대안입찰로 변경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0조 및 동 시행규칙 제78조 내지 제8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 심의시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전 또는 기본설계후 심의요청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 자체심의기준에 의거 심의, 결정하여야 할 것임.



## 6.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법무심사팀-275, 2005-04-29

### ■ 질 의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공사입찰에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자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로서 계약체결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한 상속절차에 따라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상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동 기한내 사실상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지연에 따른 계약목적 달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 상속인과의 계약체결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계약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20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인 바, 동 계약서의 기명·날인은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명의로 하거나 인감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도 사망과 동시에 소멸함.

## 7. 협상계약에 있어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인터넷 질의번호 12729, 2004. 12. 21

### ■ 질 의

경쟁입찰에 2개사가 참여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1개사만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예정가격이 74억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의 입찰가격은 66억원, 협상대상자는 입찰가격을 72억원으로 제시한 경우 가격협상을 통해 68억원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동 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바,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감액 등의 조정 없이 협상이 성립된 가격(계약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가격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가격협상기준,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 8. 옵션계약기간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831, 2007-07-12

### ■ 질 의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에 있어서 본 계약은 구축사업과 유지보수사업으로 되어있으며, IAT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은 IAT 공급 및 설치사업 종료후 3년간 유지보수사업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보상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사업 계약형태가 옵션계약인 상태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반영조건을 적용하여 정식계약을 체결이 가능한지?

## ■ 회 신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목적과 규모, 성격 등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인 바, 특정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공고조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옵션계약조건에 의한 계약체결을 정식의 계약체결로 보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체결시 입찰공고조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9. 최초 설계작업시 작업시간 부족에 따른 할증적용 가능여부

법무지원팀-705, 2008-03-03(신)

## ■ 질 의

작업 현장여건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용기준에 의거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간선도로인 4차선도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세별 할증율인 변화가(4차선도로)할증 2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1일 5시간만 작업을 하는 작업조건상 작업능율저하할증 37.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우리청은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계약예규에 대한 질의답변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내용 등을 확정하기 위한 예정가격작성 기준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규모, 공사현장과 시장상황, 건설관련 설계기준,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설계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 10. 공사용지 확보의 주체

규제개혁법무담당관-3816, 2010-08-12

### ■ 질 의

발주처와 민원인의 상호이해관계로 민원인이 공사구간 내 유료주차장을 운영한 다면서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시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민원을 해결하여 공사용지를 확보하고 계약기간 내에 준공처리를 독촉하지만, 시공사가 공사용지를 확보할 수 없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중에서 공사용지의 확보주체는?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공사용지 확보의 주체는 발주처임을 알려드리며, 공사용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상관련민원 등은 원칙적으로 발주처에서 보상 또는 협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11.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당시 기준

법무지원팀-589, 2007-02-09

### ■ 질 의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일부 확정계약분으로 나머지 일부는 개산계약분으로 체결한 경우 단위공사의 설계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착수시점(설계 변경당시) 기준은

#### □ 갑의 주장

관례상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발주관서의 작업지시를 따라야 하며, 작업지시서가 2006.05.06 자로 접수되었으므로 접수된 날을 착수시점(설계 변경 당시)으로 보아야 한다.

#### □ 을의 주장

작업지시서에 의거 계약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며, 공사수행에 필요한 확정된 설계도서가 2006.11.08 이후에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 확정 되었으므로 이때를 착수시점(설계변경 당시)으로 보아야 한다.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설계변경당시"란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발주기관이 확정할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개산계약분을 확정함에 있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작업지시서(설계변경 의사)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때는 발주기관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도면을 확정하여 통보한 시점인 2006.11.08을 "설계변경당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12. 공기연장 관련 문서접수일 기준

법무 41301-55402, 2004. 05. 14

### ■ 질 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간접비)을 산출하여 신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비용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관련법령의 근거 및 관련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간접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간접비)의 신청일을 계약상대자가 최초로 추가비용(간접비)을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간접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이 때 조정신청일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서류의 첨부없이 추가비용(간접비)을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13. 준공검사 완료시점까지의 관리비용 부담주체

인터넷질의번호 10417, 2004. 09. 17

### ■ 질 의

준공기한에 맞추어 전기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발주기관에 준공검사 신청을 한 경우 준공기한 이후 준공검사 완료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전기료 및 기타 공과금의 납부 주체는 발주기관인지 시공사인지?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따라 발주관서는 인수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기 전까지의 제반비용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14.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인터넷질의번호 8800, 2004. 07.

**■ 질 의**

전기공사업으로 낙찰자가 결정된 후 설계내역에 소방설비 부분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 소방을 분리 발주해야 하는지?

**■ 회 신**

공사계약에서 낙찰자 결정후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낙찰금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낙찰금액에 포함된 소방공사는 계약체결후 소방 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15. 법인합병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지위 승계여부**

법무지원팀-545, 2005-08-26

**■ 질 의**

강원도 소재 레미콘 제조, 판매 업체인 A가 경기도 소재 동종업체인 B와 합병할 경우 합병 후에 해산할 회사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합병 후에 존속법인이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유지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 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구체적인 경우 「상법」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

## 16. 주계약자 (발주기관) 변경가능여부 ?

법무지원팀-1709, 2005-11-16

## ■ 질 의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중 위탁협약서에 따라 ○○공사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자를 ○○공사에서 시행자인 ○○도나 공동시행자인 ○○관광공사로 하는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자 변경은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계약관련 업무가 이관되거나 승계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정부측 계약자명의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17. 특허시공

법무심사팀-728, 2005-06-09

## ■ 질 의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상 시공방법이 특허공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현장설명서에 특허공법에 대한 특허료와 기술지도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특허료와 기술지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는 계약상대자와 특허권자 양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발주처가 동 예규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특허공법에 의한 시공방법이 지정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허권 사용료의 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임.

## 18. 계약업체 명의 변경건 (전용실시권자에 대한 변경)

법무심사팀-603, 2005-02-18

## ■ 질 의

특허권자가 수의계약으로 특허 물품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물품에 대하여 제3자와 전용실시권(기간 : 3년, 지역 : 대한민국 전역)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대하여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계약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지?

## ■ 회 신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타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계약상대자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당해 영업 양도를 승인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계약상대자로서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것이나, 포괄양수도의 약정이 없이 단지 계약상대자인 특허권자가 특허에 기하여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제3자와 전용실시권 설정에 대한 약정을 하고 이를 등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초 특허권자의 계약상대자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은 아닙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법령」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등록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비추어 당해 물품의 생산·판매권 등이 전용실시권자에게 전속되어 동 전용실시권자가 아니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의 여부, 양수인이 당초의 수의계약 사유 및 요건을 충족하는 등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및 제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양수인에게로의 계약자 변경승인 또는 별도의 새로운 계약추진 등 조치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임.

## 19. 국가계약법상 감독업무의 수행범위

법무지원팀-2208, 2005-12-20

### ■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의 건축공사에 있어 건축사가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속공무원이 그 사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동 규정의 내용을 공무원이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회 신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등이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의미함)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동 예규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하며,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감독관은 동 예규 제16조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및 동 예규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 이므로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범위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거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 질의할 사항임.

## 20.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법무지원팀-1391, 2005-10-19

### ■ 질 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터널방재시스템개선공사에 있어 1차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인수 운영 중에 있으나 2차공사와의 하자기간 차이로 인하여 2차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 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 ■ 회 신

공사의 적격심사시 특정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을 발주 목적물과 동일공사실적 또는 유사공사실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실적증명서의 내용과 발주목적물과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실적을 증명한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한 경우라면 이는 전체공사의 준공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

## 21. 공사중지기간 중 도로공사 구간내 사고 책임의 한계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는?

법무지원팀-807, 2005-09-14

### ■ 질 의

1. 공사 중기간 중인 도로공사 공사구간내에서 사고발생시 배상에 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부서에 있는지 여부 ?
2. 실착공(실제로 착공)이 되지 않고 공사중지 되어 있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은 시공사(계약상대자) 또는 도로관리청 누구에게 있는지 ?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공사현장에서 인명에 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사고당사자가 현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당사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착공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규정한 공사용지를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인수한 후 동 예규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된 현장대리인은 동 예규 제14조에 규정한 ‘공사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 예규 제47조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기간 중에도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등의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22. 공사비(산재보험료)계상 및 지불에 관한 질의

법무지원팀-200, 2006-01-18

### ■ 질 의

○○유지관리 역무를 1년 단위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수행 중 발주기관이 계약상 산재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 차이에 대하여 산재보험료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하여 금년도부터 법정요율 한도금액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실적 정산토록 계약조건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타당성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액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계약상대자가 하며, 그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의 수단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항목의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산재보험료 등과 같이 관련법령에서 정산토록 규정하지 않은 비목은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계약금액 조정대상인 경우 등의 특별사정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음.

## 23. P.S. 항목 중 품질시험비 정산처리에 대한 질의

법무지원팀-817, 2005-09-01

### ■ 질 의

입찰 당시 품질시험비가 P.S항목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P.S항목이라 하더라도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단가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실적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잠정(개략)단가 [P.S.항목 (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약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당해 비목에 대하여 사후 정산할 것을 명시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정산할 수는 없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공고조건,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격, 규모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24. 특허공법으로서 신기술로 지정된 보호기간 경과후에 특허공법으로서의 설계에의 적용여부

법무지원팀-3434, 2007-08-03

### ■ 질 의

건설교통부 고시 신기술 제○○호 및 특허 제□□호(공기타격식 해머와 특수앵커피를 이용한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체화 공법)의 협력사인 당사가 보호기간이 만료된 동 신기술을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의 설계시 특허공법으로 적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의 위배여부와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인지의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설계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의 시공방법,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등의 공법선정 등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25. 특허 심의중인 공법은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법무지원팀-1350, 2005. 10. 21

### ■ 질 의

건설공사 설계시 특허출원하여 심의중인 공법에 대하여 설계(실시설계,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설계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건설공사의 설계는 공사 목적물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시공방법, 해당공법 등을 설계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를 집행하는 발주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임.

## 26. 계약체결후 분리발주에 따른 설계변경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96('07.01.17)

### ■ 질 의

발주기관에서 설계서에 계약상대자가 영향평가대행자 선정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계약조건대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대상사업의 공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분리 발주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계약금액만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 산출내역서에 사후환경영향평가비가 무대인 경우 모든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나. 분리발주에 따른 모든 비용(예산)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당초부터 위법·부당한 계약이므로 계약금액은 감액하지 않는다.

### ■ 회 신

관련법령상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공사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통합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사의 계약내용에서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은 관련법령의 취지, 입찰안내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결정할 사항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제2장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제1절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제2절 입찰참가자격

제3절 입찰방법, 공고 및 집행

제4절 입찰의 유효성

제5절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제2장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제1절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1. 원가계산 용역기관 요건

법무지원팀-552, 2007. 02. 07

#### ■ 질 의

본 연구소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검토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에 입찰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적격심사기준상의 여성고용인원 배점기준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는 대학교 직원은 연구소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본 연구소의 주장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제2호 '나목'의 단서에 따라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기관 의견대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 ■ 회 신

물품, 용역 등의 계약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입찰공고한 당해 입찰건의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학술용역입찰에서 원가계산용역대상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인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 이어야 함.

## 2. 거래실례가격의 의미

법무지원팀-815, 2007. 02. 28

### ■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거래실례가격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물품제조계약에서 65%로 낙찰되어 계약이행중에 있는 경우 다음 발주시 전에 낙찰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인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서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계약하여 납품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그 거래실례가격이라 한 경우의 적정한 거래란 어떤 의미인지

### ■ 회 신

####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적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이행중에 있는 계약금액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과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2>에 대한 답변

당해 물품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조구매계약의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에게서 직접 확인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납품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질의 3>에 대한 답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정한 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나, 덤핑거래, 특별한 관계의 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가 아닌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장여건,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 3. 용역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 방법

법무심사팀-797, 2005. 06. 15

### ■ 질 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동 시스템전환 및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System Package 구매 분야는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고, 동 구매부분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SI 용역 업무는 당해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금액 결정방법은?

(갑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1조의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규정을 근거로 당해 용역의 예정가격에 경쟁입찰의 낙찰율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결정

(을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근거로 수의시담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 ■ 회 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

며,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 가목·나목,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고,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규정은 계약목적물이 공사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4. 잡재료비의 원가계산시 계산 방법에 대하여

법무지원팀-1781, 2005. 11. 15

##### ■ 질 의

###### <질의 1>

잡재료비를 노무비의 일정 비율로 계상하는 경우 원가계산시 노무비로 계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재료비로 계상되어야 하는지, 또한 노무비의 몇 %로 계상되어야 하는지

###### <질의 2>

공구손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어느 항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산정 기준은

###### <질의 3>

주야간 또는 야간 작업시 노무비, 공구손료 잡재료비에 대한 할증 등 품의계산은

##### ■ 회 신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간접재료비란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7조제2항(현행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및 가설재료비등은 간접재료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다만, 동 재료의 설치인건비는 직접 노무비에, 동 재료 구입과정이 아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이 경우 공구손료 및 공구조작 작업원 비용 산출시의 품할증(또는 품할감) 및 공구손료 계상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에 있어서 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따른 품할증의 적용 또는 제외 여부 등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417)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

## 5.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법무지원팀-3948, 2008. 11. 16

### ■ 질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의 입찰공고서에 ‘국가계약법령 제2조에 의거한 추정가격이 18억원이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한 공사원가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원가내역서의 제출을 종용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와 입찰보증금의 몰수하겠다고 하는데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 1) 조달청은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에도 관급자재의 구매를 대행합니까?
- 2) 입찰공고서에 관급자재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관급자재를 공사비에 포함시키라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 3) 대한○○회는 국가계약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었는지?
- 4) 관급자재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켜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서도 귀청에 관급자재로 구매요청을 하여 공급받아도 되는지?

### ■ 회 신

- 귀 질의 1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단체가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 제2007-2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귀 질의 2,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해당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관급자재대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공사에 관급자재가 포함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귀 질의 4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하여 조달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수요기관에 해당하는 발주기관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조달요청이 가능할 것임.

## 6.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법무지원팀-3407, 2006. 10. 16

### ■ 질 의

<질의 1>

공사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중 비품만 일반관리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2>

일반관리비의 개념과 적용범위는?

### ■ 회 신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임.

## 7.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에서 예정가격작성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20('08.4.04)

### ■ 질 의

- ① 물품에 포함된 설치공사비를 국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원가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 ② 물품을 총액으로 계약함에 있어 낙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세부내역서상의 설치공사비가 매우 과소한 경우,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 ③ 유사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의 적용 우선순위는?

### ■ 회 신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 ②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음.
- ③ 감정가격과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의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동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임.

## 8. 계약금액이 ○○조합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와 조달청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에도 계약금액 환수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무지원팀-2844, 2006. 08. 29

### ■ 질 의

○○출장소와 ○○조합간에 2004~2005년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위조되어 제출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한 결과 사실로 인정되어 당해 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계약금액 차액을 환수함에 있어

#### 1. 특약내용(조달청 집행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1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 2. 가격자료 현황

- ○○조합이 허위로 제출한 가격자료 평균가격 : 62,193원
- 조달청이 재조사한 가격 : 61,300원
- 계약가격 : 58,860원

#### <질의 1>

계약금액이 ○○조합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와 조달청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에도 계약금액 환수요건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계약금액 차액을 환수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 <질의 3>

계약유효기간 내에 납품 완료된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미납물량에 한하여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 <질의 4>

계약기간이 도과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환수청구권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

## ■ 회신 :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귀 질의의 계약금액 감액 또는 환수를 규정한 조달청 집행지침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11조제2항은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그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발주처가 동 특수조건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할 수 있으려면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으며 또한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을 때” 비로소 위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동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환수는 당해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며,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로 한정하여 환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여 동 청구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임.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 환수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환수대상금액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허위로 제출한 가격증빙자료, 발주기관 자체 조사가 격, 예정가격, 계약조건 및 계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제2절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1. 입찰참가자격(1)

법무지원팀-3087, 2007. 07. 31

##### ■ 질 의

지역산림조합이 모여서 산림조합중앙회가 결성되었고,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관리 및 인사 등 모든 권한을 산림조합중앙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은 상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과 같은 구조로 보아 동 법인간 경쟁입찰은 성립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타당한 것인지?

##### ■ 회 신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였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의 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2. 입찰참가자격(2)

법무지원팀-3101, 2007. 07. 31

##### ■ 질 의

□□사업소 건설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면허보유업체로 제한한 경우 토목공사사업과 건축공사사업의 면허를 함께 소지한 업체의 입찰참가 가능여부

##### ■ 회 신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를 시행령」 제12조 각항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건설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토목공사업 면허와 건축공사업 면허를 함께 보유한자도 동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임.

### 3. 용역 입찰참가자격

법무심사팀-317, 2005. 01. 15

#### ■ 질 의

용역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귀청에 질의하였으나 귀 청으로부터 “특정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용역관련 법령, 과업내용의 특성, 이행의 난이도, 과업규모의 대소 및 과업수행방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을 받은 바, 당해 회신내용에 있어

1. 특정 용역입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2. 입찰참가자격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3. 과업내용에 측량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 ■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우리 청이 회신한 내용 중 “특정용역입찰”이라 함은 특정 분야의 용역에 대한 입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구체적·개별적인 당해 용역에 대한 입찰을 말하는 것임.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의 이행방법 및 난이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동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케 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제5조제2항(현행 「용역입찰 유의서」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입찰에 관하여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광고조건 상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당해 발주처의 설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 4.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란?

인터넷 질의 ('11.06.09)

##### ■ 질 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한 결과 응찰한 업체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하였습니다.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응찰한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판단하고 가격평가를 하여야 합니까?

##### ■ 회 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실시하는 입찰에서 발주처가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 입찰자의 입찰자체는 유효한 입찰로 보아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5. 법인의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주소변경

회계제도과-523, '08. 6. 11

### ■ 질 의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만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전된 주소만으로 입찰참가등록증의 주소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6의3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삭제한 취지는 변경된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라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은 추후 변경토록 한 것인 바,

이 경우와 같이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만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전된 주소만으로 입찰참가등록증의 주소 변경이 가능함.

##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정한 등록인증서 제출

법무지원팀-3027, 2007. 07. 26

### ■ 질 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시행한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과정에 당해 입찰공고문 등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발주기관에서 「전자법」 제46조 및 제57조의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협상기간 내 MIIC(전자파 적합등록)인증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미제출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 인증서를 협상기간 이후에 제출해도 되는지?

## ■ 회 신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 있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대한 사항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

## 7. 대표대표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의 효력 및 성격

인터넷 질의(2006. 05. 30)

## ■ 질 의

낙찰예정 업체(법인)가 3인의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입찰참가등록 하고, 이중 1명을 대표대표자로 지정하여 투찰하였을 경우, 지정된 대표대표자가 투찰한 것은 그 외 입찰등록한 대표자가 투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인지? 당해 입찰참가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대표자를 대표대표자로 지정해야 유효한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는 관련법령(민.상법. 등기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인(여러명)이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책임운영기관인 조달청에서는 대표대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당해 법인을 대리한 법률행위로서 그 법인이 입찰에 참여한 법률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 개인이 입찰참가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2인의 각자 대표자중 어느 한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다면 결국 그 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것이므로 계약체결시 다른 각자대표자가 그 법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도 결국 그 법률효과는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무방한 것입니다. 다만, 각자대표자인 경우에 가능하며, 입찰참가 주체 즉 당사자는 그 법인인 것입니다.



## 8. 국가계약 공고조건에 따른 자격기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999, '08. 07. 28

### ■ 질 의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공고를 한 경우로서

#### 1. 공고 내용

- 1) 사업공고명 : 도시철도표준화 연구단 분리공모과제 시행공고
- 2) 과제명 : 도시철도용 선택 차단형 DC 통합 보호계전장치 개발

#### 2. 자격요건 : 관련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이 있고,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 하고자 하는 기업이어야 함

##### ○ 참여업체 중

- A업체는 해당과제에 대한 도시철도용 DC 보호계전기에 직접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이 있고
- B업체는 DC 보호계전기에 관한 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이 없고, 일반용 AC 보호계전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이 있을 경우  
⇒ 국가 계약에 있어서 A와 B 누가 선순위가 있는지 여부

### ■ 회 신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실적을 말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경쟁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개별 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용역의 성격 등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실적인정범위를 AC보호계전기가 아닌 DC보호계전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입찰공고가 정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입찰 공고내용을 따라야 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 실적인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 9. 중소기업자간 지명경쟁물품의 입찰대상자 선정

법무지원팀-2770, 2006. 08. 22

### ■ 질 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지명경쟁입찰자를 최소 5인 이상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대상자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제조업체참여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관련 협동조합에 대상업체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된 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하였다 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는 없는 것임.

## 10. 전세버스 임차를 위한 입찰공고 제한기준

법무지원팀-2847, 2006. 8. 29

### ■ 질 의

각급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세버스 임차를 위한 입찰공고문에 제시하는 입찰참가 자격과 조건에 대하여

1. 차량 보유대수 및 차량 년식을 제한하여 입찰공고하는 경우 차량의 보유대수 시기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공고, 입찰, 계약)?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울산광역시에서 근거(주사무소)를 두고 타 시도의 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아 타 시도에서 영업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있어 지역제한(울산)을 할 경우 타 시도 영업소의 차량도 울산광역시 운송조합의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한 경우 당해 지역안에 소재하는 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본사가 당해 지역안에 있는 업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차량보유 인정기준, 낙찰자선정 방법, 공고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목적,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 11. 지점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통한 입찰참여 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 ■ 질 의

저희 회사는 축산물(육류)을 주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고자 G2B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는데 있어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에 인증을 받아 전국 학교입찰에 참가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 입찰 자격을 해당 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 업체를 한정하고 있는데, 지점 사업자의 인증으로의 입찰참가가 가능한지요?

### ■ 회 신

우리청은 법인의 지사에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입찰 및 계약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여 2008. 11. 2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하나의 법인적인 본사(법인)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본사의 입찰참가등록증내에 등록하는 것이며 별도의 독립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사와 지사는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동일한 법인이므로 당연히 동시에 동일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경쟁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 참가하여

야 하므로 지사는 입찰참가 할 수 없으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 가능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하실 수 있음.

## 12. 건축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감리수행 여부

법무지원팀-3035, 2008. 10. 07

### ■ 질 의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한 건축사업무신고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 <질의 1>

4명의 각자대표 중 1명이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건축업과 전기감리업의 두 가지 면허의 동시등록이 가능한지

#### <질의 2>

건축사 아닌 대표이사가登記되고 두 가지 면허가 모두 등록된 업체가 건축법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시 제재사항이 되는지 여부

#### <질의 3>

타법감리의 P.Q 평가시 건축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귀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법인이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인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그 대표자가 건축사(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건축사)이

어야 할 것임.

#### - 귀 질의 2, 3에 대하여

위 관련으로 귀사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사업무신고와 감리전문회사 등록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우리청의 국가계약법규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건축사법 등 관련법령·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참고로, 당해 계약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이 없이 참가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어 무효이며, 면허·등록 등이 없이 계약을 이행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1.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여부

인터넷질의, 계약제도과-1517, 2011.12.14

#### ■ 질 의

입찰참가자격을 실적(규모)으로 제한하면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공고하고, 동 입찰특별유의서에는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도록 규정한 경우 상기 입찰공고가 중복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중복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상 시공능력공시액 제한규정의 효력 및 적격심사가 진행중인 동 입찰을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경우 이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함.

#### ■ 회 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입찰 건은 공사실적과 함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시공능력공시액의 경우 입찰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입찰참가 자체를 제한한다기보다는 적정한 공사 이행능력이 없는 업체를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이라기 보다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법무지원팀-3030, 2007. 07. 26

### ■ 질 의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를 전담하는 존속회사(지주회사)인 ○○홀딩스와 건설업과 조선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공업을 신설하는 형태로 분할할 경우에 있어

#### <질의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건설업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때 즉 양도·양수 수리 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전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지 여부?

#### <질의 2>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 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 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주)평가방법 3항에서 기업분할인 경우에 신설업체가 법인의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결산서 작성 전까지는 종전법인의 결산서로 입찰이 가능한지?

#### <질의 3>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심사항목 2번 기술능력평가 다항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평가는 분할 신설인 경우(포괄적 승계) 신설업체에 승계 적용하여 입찰이 가능한지?

## ■ 회 신

###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법인이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로 인하여 당해 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참가한 입찰과 관련된 입찰참가자의 지위 등도 제3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2. 귀 질의 2, 3에 대하여

공사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평가제도는 2007. 07. 04. 폐지되었음.

최근년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산서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주 2) 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 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인 바,

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업체의 최초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경영상태평가는 분할되기 이전 업체의 결산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3. 미술품구매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514, 2008. 06. 27

#### ■ 질 의

예산의 추가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체결하여 시공 중인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으로 미술장식품(조형물 70%, 회화 및 판화 30% 정도) 구매설치비를 반영하여 집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함

1. 작가 개인 또는 학교(연구소)와 수의로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2. 미술품 구매를 일정비율로 지역작가 참여조건으로 발주할 수 있는지?

#### ■ 회 신

##### - 귀 질의 1에 대하여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여기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하여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수의계약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바, 이 경우 작가 개인 또는 학교(연구소)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 -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구매, 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지명방법

법무지원팀-2067, 2007. 05. 22

### ■ 질 의

본 사업협동조합은 2007.01.01부로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계량계측기기 제조업체가 모여서 설립한 '한국계량계측기기사업협동조합'입니다.

지금까지 각 수요기관에서는 지명경쟁입찰 대상자를 선정할 때 관련 협동조합에 추천을 요청하는 방법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명경쟁 대상자 선정시 이 방법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추천 대상에 해당 물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사업협동조합'도 포함될 수 있는지?

### ■ 회 신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명경쟁 입찰대상자의 선정방법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규모, 성격과 시장상황, 입찰대상자의 자격보유 여부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 5. 시설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유무

법무지원팀-2475, 2007. 06. 20

### ■ 질 의

제한경쟁(시공능력제한)에 의한 터널교통관리시설 구축공사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07.5.31(목) 10:00이고, 개찰일시가 '07.05.31(목) 10:10인 경우에 입찰공고서상에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을 충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한 경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가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마친후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라 규정과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유효기간이 입찰개찰일인 2007년 5월 31일부터 2008년 4월 30일로 신고된 업체가 입찰참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시 등록 자격의 유무

### ■ 회 신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정한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의 공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는 것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당해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요건 구비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6.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구매입찰의 적법성 여부

법무지원팀-2092, 2007. 05. 23

### ■ 질 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의 입찰방법 등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All or None Basis 구매방법이 어떤 계약방법인지?

질의 나) 구입물품명세서상에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구매입찰의 적법성 여부?

### ■ 회 신

#### - 귀 질의 '가'에 대하여

All or None basis에 의한 구매는 일반경쟁구매에서 당해 물품이 관련 기자재 등 수요목적상 동일제작자의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또는 소액 다종 품목으로써 동일 공급자로부터 일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방법은 구매대상품목을 전부 또는 그룹(Group)별로 묶어 단일 공급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가격을 품목별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대상 전 품목 또는 Group별로 대비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로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 귀 질의 '나'에 대하여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제5호에 의하여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계약의 특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또는 모델)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 7. 입찰관련 업무의 건(제한경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8-156, 2008.10.01

### ■ 질 의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관한 입찰공고 내용에 시간당 1ton이상 소각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을 두었으나, ○○병원의 월평균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월 약35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정정 입찰공고가 가능한지?

### ■ 회 신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 8. 소독과 청소를 일괄발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법무지원팀-366, 2007. 01. 15

### ■ 질 의

소독과 청소를 일괄공고하여 청소업과 소독업을 병행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소독업만 하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타당성 여부 및 청소업과 소독업은 관련법령이 서로 다른 업무인데 일괄발주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

### ■ 회 신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

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정한 경우라면 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계약에서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분할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청소 및 소독업무가 복합된 용역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이를 일괄 또는 분리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9.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법무지원팀-4091, 2006. 12. 11

### 질 의

○○신호설비공사를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철도신호공사부분 연동장치 공사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회사의 1건의 공사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의한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 회 신

제한경쟁입찰에서 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 바,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구하고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21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 또는 과다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10.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시 지역제한의 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206('08.2.21)

### ■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서 동항 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되는지?

### ■ 회 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

## 1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한 후 실적제한이 중복제한인지 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405, 2008. 08. 22

### ■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의 중소기업간 제한물품을 동조제3호 내지 제4호로 동시에 실적제한으로 구매 입찰하는 경우 중복제한을 금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 회 신

'07. 10.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규정을 마련한 바, 이는 제한규정의 신설이 아니라 WTO 정부조달협정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개방대상에서 제외(국제입찰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규정을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명시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

## 12. 국가계약법령상 부당특약 금지원칙 위배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174 (‘11.08.17)

### ■ 질 의

국가계약법령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사안의 개요)

1. 공공기관이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에 “당해공사(이하 ‘선행공사’라 함)를 대표사로 낙찰받은 자는 동 발주기관이 향후 발주하는 다음공사(이하 ‘후속공사’라 함)에 연속하여 대표사로 입찰참가 할 수 없음”이라는 특약을 기재함.
2. 당사는 동 선행공사를 낙찰받아 시공중에 있음.
3. 동 공공기관은 후속공사에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을 통보함.

#### (질의)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1조,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국가계약법령 및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안과 같이 선행공사의 낙찰을 이유로 후속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동 법령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3절 입찰방법, 공고 및 집행

### 수의계약

#### 1.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

법무지원팀-853, 2005. 09. 09.

#### ■ 질 의

건축공사를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하던 중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왔으나 공동수급체 중 1개사가 전차공사 낙찰률을 적용하면 손해가 많다면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다른 2개사의 공동수급체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때에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이거나 수의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잔존 구성원만으로 등록, 시공능력 및 실적 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의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2.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1780, 2005. 11. 22

### 질 의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회 신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호 '사'목에 따라 특허권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상 실시권자인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기간, 지역 및 실시내용 등)가 당해 계약대상자로서 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 통상 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다.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체결 여부는 동 규정, 계약목적물의 특성, 대응품이나 대체품 유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 3.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제조공장 보유가 계약조건이 되는지 여부

법무지원팀-2138, 2005. 12. 20

### 질 의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작자이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회 신

계약에 있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로서의 자격요건은 같은 법 제12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권자가 당해 실용신안제품의 제조시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4. 건설신기술을 보유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기간 및 법적근거

규제개혁법무담당관-1355, 2008. 06. 18

##### ■ 질 의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관련규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4항 '마'목인지 아니면 동조제7항 '사'목인지? 그리고 당사가 보유한 신기술도 같은 법 시행령 동조제7항 '사'목의 '개발완료 확인 후 2년 이내의 기간'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기술보호기간('03.1.05~'11.1.04) 만료일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에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함)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마'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해당 수의계약 대상자의 요건 충족여부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 5. 신기술이전 협약체결 및 양수인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291, 2007. 10. 24

### ■ 질 의

신기술개발자(NET공법)가 제3자에게 장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신공법에 대한 기술을 이전(기술이전약정서 체결 및 권한위임)할 수 있는지와 당해 신기술의 사용권을 이전받은 제3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귀 질의의 신기술을 보유한 자와 제3자간에 체결하는 통상적인 기술협약서의 체결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우리 청의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니며, 이해 당사자간의 필요 및 판단에 따라 민법, 상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함)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마’ 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당해 신기술권자와 신기술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

## 6.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토대상

규제개혁법무담당관-6094 (‘11.11.24)

### ■ 질 의

전력신기술 제69호는 지중배전공사 관로내 전력케이블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신기술적용에 관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한 명확한 적용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업무집행으로 투명성을 기하고 다툼을 방지하고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 일부란 어느 정도인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당해 공사를 신기술보유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하거나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고, 동 기준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입찰방법에 의해 신기술보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동 기준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게 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동 기준 제5조의2제1항 제2호의 일반경쟁에 부치게 되는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의 의미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동 제도의 취지·공사의 특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7.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442, 2007. 11. 05

## ■ 질 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성능인증제품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입찰에서 동 구매물품의 성능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1개사만 있어 제한경쟁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바,

- 1) 제한경쟁의 경우 2개사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입찰참가업체 수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지
- 2) 구매물품의 인증업체가 1개사 인 경우 제한경쟁이 불가능한지 혹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 것인 바,

이 경우와 같이 당해 입찰의 참가자가 1인만 있는 경우라면 경쟁입찰은 성립되

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 8. ○○단체가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는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91 (‘11.06.15)

### ■ 질 의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단체로서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는 물론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단체로 하여금 단체설립 목적달성을 위해 같은 법 제7조의2 및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시설관리(경비, 주차, 청소, 방역) 및 조경공사(식재, 시설물) 용역' 업종에 대한 수익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4.19민주혁명회는 조경공사면허를 얻어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바, 본 단체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조경공사(식재, 시설물) 용역이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 ■ 회 신

국가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로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9. 특정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근거의 법령조항 및 적법여부

법무지원팀-4828, 2007. 12. 04.

### ■ 질 의

□□청에 등록된 법인인 ○○은 어떠한 법률근거를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이권 사업에 매진하는 ○○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이의 적법성여부?

### ■ 회 신

계약에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 바,

수의계약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 규정과 관련법령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 10. 복지단체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국가계약법령상 위법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3, 2008. 04. 08

### ■ 질 의

수요기관이 물품의 조달 의뢰시 복지단체를 계약대상으로 지명하거나 혹은 계약 당사자로 추천하여 문서로 조달 의뢰할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위법성이 있는지?

### ■ 회 신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경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목적물과 지명경쟁대상자 범위와 규모를 정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7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 동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 보훈단체를 지명경쟁 대상으로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상대자로 지정 또는 추천하여 조달요청하는 경우 이를 국가계약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귀 단체를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로 지명할 것인지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격·규모와 귀 단체의 설립근거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11.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물품이 아닐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5005, 2007. 12. 13.

### ■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바목의 규정과 조달청 “보훈·복지단체 물품 구매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내용이 약간 상이하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일지라도 중소기업간 경쟁대상물품이 아닐 경우 수의계약의 가능여부?

### ■ 회 신

계약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방법의 결정은 관련법령,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계약이행의 전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 12. 수의계약 한도액

규제개혁법무담당관-6230 (‘11.12.01)

### ■ 질 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 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6항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한도액은 얼마인지? 발주기관의 수의계약 금액한도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계약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음.

### ■ 회 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새마을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2282호, 2010.7.21〉제7조에 따라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라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한도액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공장에 해당된다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3. 보수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533, 2007. 06. 22

#### ■ 질 의

“○○기념관” 전시시설은 2007년 □□협동조합에서 준공하였으나 일부장비의 교체와 전시패널 부분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원시공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계약에서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계약의 목적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14. 일괄입찰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210, 2007. 10. 18.

#### ■ 질 의

턴키공사로 집행된 공사에서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와 같이 일괄입찰공사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및 동 예규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15.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595, 2005. 11. 04.

### ■ 질 의

본교는 시청각실 및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증축하려고 하는 바,

- 1) 전차공사와 수직 및 수평으로 증축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 건축물의 하자보증기간을 당초 3년으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그 중 일부 주요구조부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것인지?
- 3) 수의계약평점 산출시 전차공사 예정금액 대비 금차공사 예정금액으로 산출하는 지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때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4장 수의계약의 운용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공사의 특성, 구조, 전차공사와의 하자책임구분의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 규칙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동 규칙 별표 1에 규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종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조정할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공종별로 조정된 하

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질의 중 수의계약평점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입찰을 집행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으로서 우리 청의 국가계약법규 해석 대상이 아님.

## 입찰공고

### 1. 학술연구용역 대상여부

법무지원팀-3949, 2007. 10. 01.

#### ■ 질 의

○○항 배후부지조성공사 준공 이후 조성된 부지의 지반거동분석을 위하여 미개량 지반의 침하량과 지반구조 재배열에 따른 2차 압밀침하량을 장기계측 및 분석을 통하여 토질공학이라는 기초과학을 토대로 배후부지 현장의 지반거동을 해석, 이론식화 하여 문제점 및 사전대책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동 사업이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 ■ 회 신

용역계약에서 “학술연구용역”이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제1호에 정한바와 같이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사업이 동 규정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2. 특정제품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3916, 2006. 11. 28.

#### ■ 질 의

정부 발주공사의 기계설비설계시 특정 제조업체 제품의 동등이상품으로 설계할 경우에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설계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의 시공방법, 공법선정, 공사자재 등 설계기준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설계기준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3. 물량내역서 교부에 관하여

법무지원팀-213, 2006. 01. 10

## ■ 질 의

#### <질의 1>

추정가격이 1억 이상 100억 미만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에게는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인지

#### <질의 2>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낙찰자는 단가 및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데 관련 법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 ■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동조제1항의 입찰관련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6호

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 6항 및 제7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이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동 예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인 바,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바 공내역서)로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고, 다만, 단가 및 금액은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 4. 입찰시 특정물품이 아닌 기능 및 사양으로 정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4, '08-06-02

#### ■ 질 의

일부 지자체나 국가기관 입찰시 특정 물품의 모델 납품을 강요하거나 공급자증명원을 조건으로 하는 입찰이 있는데, 이는 특정업체나 물품을 비호하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조달청 입찰시 이런 경우와 같은 기능 및 동등사양의 물품 납품도 가능하도록 배려 바랍니다. 특히 특정 모델에만 있는 특정사양만을 고집해서 해당모델이 아닌 경우 납품이 안 되도록 하는 편법도 빈번한 바, 같은 동등이상의 기능을 충족하면 납품이 가능토록 배려 바랍니다. 유권해석 바라겠습니다. 상기 내용이 조달법령과 위배되는 것인지요?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 : 특정 수입품목의 규격(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 또는 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 적용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 5. 용역계약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 근거와 적합성 여부

법무지원팀-359, 2007. 01. 25

## ■ 질 의

○○전문대학 “전직 및 재취업 평생교육사이트 구축” 용역입찰(지역경쟁, 총액)에 참가하여 13,259,999원으로 낙찰된 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 1>

당초 입찰참가자격요건에는 없었으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계약요건으로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 <질의 2>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업체에 11,000,000원을 선지급 하여야 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

### <의견>

원가계산에 기술지원확약서의 반영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공개입찰의 목적에 위배되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공고되는 입찰은 기술지원업체와 수 의계약으로 추진함이 혼란이 없을 것임

## ■ 회 신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동 예규 제4조제1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입찰서류의 하나인 과업내용서에서 계약체결시까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에 따른 제반 문제는 제조사와 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임.

## 6.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게시일자와 입찰 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법무 41301-55490, 2003. 08. 05.

## ■ 질 의

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우 G2B시스템에 게시한 일자와 입찰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입찰공고일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일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7조제5항에 따라 동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함.

## 7. 입찰공고 방법의 적정성, 공고기간 요건구비 및 사업집행·사업유무 검증방법

법무지원팀-695, 2007. 02. 20.

### ■ 질 의

1. △△사업설명회 관련 입찰공고를 발주처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현장설명회 이후 10일안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입찰의 공고방법 및 공고기간의 적정성 여부?
2. 위 사업 집행내용 및 사업유무를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 ■ 회 신

#### - 귀 질의 1에 대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그 공고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일이라 함은 적어도 10일 이상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고기간의 연장은 입찰조건, 계약이행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 - 귀 질의 2에 대하여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임.



## 8. 지적확정측량 계약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52, '08. 09. 25.

### ■ 질 의

토지의 조사·등록 즉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국가가 조사·측량하여 등록하도록 지적법 제3조에 규정하였고,

지적측량은 소관청(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업자)가 측량하도록 지적법 제32조에 규정 되었으며, 또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도록 지적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업(업무)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인 바,

이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당해목적물의 특성, 경쟁할 수 없는 경우인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9. 업체자체 연구개발에 성공한 장비의 계약방법과 분할납품여부

법무지원팀-4224, 2007. 10. 19

### ■ 질 의

○○부로부터 비행훈련장비 자체개발 승인을 받고 관련규정에 따라 □□개월의 개발공정을 거쳐 연구개발에 성공한 비행훈련장비의 납품과정에 △개월의 추가공정이 필요한 경우 제조구매계약 또는 단순한 구매계약 중 어느 계약방법이 타당한지?

제조구매계약이 타당할 경우 총 획득소요 2식(개발 1식, 양산 1식)을 묶어 장기 계속계약으로서 납기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

### ■ 회 신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방법을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과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는 것임. “제조구매”는 발주기관의 사업특성에 맞도록 특별히 작성한 규격에 합치되는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함으로 제조설비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금 계약체결 자격을 부여하는 계약방법이며, 단순한 “구매”는 특수한 기술이나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약방법인 것임.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고 해당 각 계약목적물별로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계약함이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제조구매” 또는 단순한 “구매”(공급)로 계약방법을 결정할 것인지 또는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당사업의 목적, 성질 및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함.

## 입찰집행

### 1. 유찰시 입찰절차는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1840(2007.10.17)

#### 질 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경우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인지?

#### 회 신

입찰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칠지 여부, 또는 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2.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법무지원팀-3253, 2007. 08. 09.

#### 질 의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입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및 공사원가계산서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회 신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찰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거나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 3. 견적안내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을 입찰로 볼 것인지 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426('07.3.13)

#### ■ 질 의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쟁입찰의 경우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로 보아 새로운 입찰안내절차를 추진하여야 하는지? 동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경우이지만 지정정보장치에 의한 공개경쟁에 의한 경우이므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 ■ 회 신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하여도 이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없는 것임.

또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때 다음 계약상대자를 차상위자로 결정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을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음.

#### 4. 동가추첨을 포기했을 시 재입찰 참가 가능여부

법무 41301-55283, 2004. 04. 07

##### ■ 질 의

동일가격 입찰자가 모두 추첨을 포기하여 재입찰에 부친 경우추첨을 포기한 자도 동일건의 재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지

##### ■ 회 신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하였다 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는 없는 것임.

#### 5.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란

법무지원팀-2239, 2005. 12. 26

##### ■ 질 의

- 계약예규 '내역입찰 집행요령'과 관련하여
1. 제4조제1호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란?
    - 집계표(공무원가계산서)상의 총계금액을 의미하는지?
    - 산출내역서의 전체세부내역에서 누락 또는 오류된 금액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의 총계금액인지?
  2. 제4조제2호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에서 각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이란?
    - 집계표(각 공종별 공무원가계산서)에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 산출내역서의 전체세부내역에서 누락 또는 오류된 금액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 ■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거 시행한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동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한 경우 동 산출내역서의 유·무효 등 적정성 검토는 계약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동 집행요령 제4조제1호(현행 동 집행기준 제20조제1호)의 ‘산출내역서상의 총계 금액’과 동조제2호의 ‘각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입찰자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할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의 입찰 유·무효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

## 6. 발주처에 의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법무지원팀-2091, 2005. 12. 12

## ■ 질 의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재료비중 사급자재대는 이윤 아래로 원가 계산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는 사급자재대를 재료비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제경비율로 감액변경 가능한지?

## ■ 회신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 계약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 제5조(현행 동 집행기준 제21조)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하는 것이며, 이 때 계약단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

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6호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원가계산기준 포함)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기초 자료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원가계산기준 포함)의 단가에 비해 다르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감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 7. 내역입찰에서 산출내역서의 정정에 대하여

법무지원팀-1856, 2005. 11. 23.

### ■ 질 의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의 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에 대하여 입찰내역서에 동 자재비를 기재하여 투찰, 계약 체결된 경우 동 금액의 감액처리가 가능한지?

### ■ 회 신

내역입찰에 있어 낙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바르게 정정하여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균등 배분하는 것인 바, 동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입찰금액의 증감 없이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 이후에 동 내역입찰서(산출내역서) 작성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도 계약체결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동 집행요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8.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질의(낙찰자 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1607, '08. 07. 04.

### ■ 질 의

1. 당 단지는 위탁관리 아파트로서 청소, 소독용역을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 <갑론>

1. 공고사항 중 선정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최적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하기로 공시하고
2. 응찰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기준을 최저가업체와 최고가업체를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투찰업체를 선정키로 심의 의결 한 후 미리 접수한 밀봉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유효하다

#### <을론>

1.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29조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감독을 실시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도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고사항 중 업체선정방법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개별 통보한다는 공시자체가 위규처사임
  - 관리규약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낙찰자 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음, 예정가에 근접한 가액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은 미리 공고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음

### ■ 회 신

조달청은 정부계약 관련법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고시 등)의 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귀소에서 질의한 공고사항 중 업체선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아닌 주체가 시행하는 입찰이므로 우리청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내용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입찰일시와 장소 및 개찰일시와 장소를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공고한 내용대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한 후 개찰일시와 개찰장소에서 개찰을 하여야 할 것임.



## 9.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법은

법무심사팀-1167, 2005. 03. 28

### ■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입찰하였으나 예정가격 대비 최저비율 낙찰방법이라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는바

#### <질의 1>

제품사양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 <질의 2>

각사 제품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른 기관에 납품한 가격을 기준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 <질의 3>

최저비율 낙찰구매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의제기가 가능한 입찰인지 및 재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 회 신

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특정생산품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경쟁입찰에 의함으로써 특정 물품의 독점 수익계약에 의한 고가구매를 방지하고,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제품의 성능과 기술개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 바, 유사물품 복수경쟁에 의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각각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며, 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로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계약 등의 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의 순으로 결정하는 것임.

귀 질의 3에 대하여 :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 의서」 제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입찰에 관하여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물품의 경우에는 2억 1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유의서 제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이의제기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유의서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입찰의 무효사유가 없는 자로서 관련 규정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동 유의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야 하는 것임.

## 10. 나라장터에 미 입력된 사항에 대한 적격심사 관련

법무심사팀-994, 2005. 06. 24

### 질 의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입찰 및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등 관련 자료 및 소관단체인 대한건설업협회의 문서에 의하여서는 '98.12.05부터 영업을 하여 왔음이 확인되나, 동 협회에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영업기간을 미입력 하였을 경우 영업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적격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년 이상으로 평가하여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 등의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공고조건에서 낙찰자의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할 것과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낙찰자의 결정 및 심사 자료의 평가는 동 세부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동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적격심사자료로 평가하는 것이며,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조제1항에 의하여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 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 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11. 수 개 품목을 1건으로 단가 입찰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8, 2006. 01. 02

### ■ 질 의

11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단가계약입찰에 있어 입찰공고문에 '계약체결시까지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 바, 낙찰자가 11개 품목 중 3개 품목에 대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전체품목에 대하여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8개 품목은 계약체결하고 3개 품목에 대하여만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8개 품목은 계약체결하고 3개 품목은 공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차순위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낙찰업체가 전체품목을 낙찰 받고 3개 품목에 대하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처리 및 제재 가능여부

### ■ 회 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목적물에 대한 단위당 단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수 개의 품목을 1건으로 실시한 단가입찰(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각 품목에 대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공고 조건) 에서 낙찰자가 일부 품목에 대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품목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각 품목별로 계약이행을 하여도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할 수 없다 할 것으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에 낙찰내용(품목)을 조정하여 계약체결한 것이므로 동 품목에 대한 계약 미체결을 사유로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제재 등은 곤란하다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공고시 단일 건으로 입찰을 집행한 취지, 공급확인

서를 제출한 일부 품목에 대한 우선계약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인터넷 질의회신 2011. 07. 14

#### ■ 질 의

입찰 시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받지 않고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받아도 되는지의 여부

#### ■ 회 신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동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입찰자의 현황,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2. 입찰보증금 연장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111. 10. 10

#### ■ 질 의

발주기관 사유로 계약체결일이 지연되어 입찰보증금 보험기간 내에 계약이 사실상 어려울 경우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을 연장하여야 하는지? 하여야 한다면 비용부담은 발주기관이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 있어 보증보험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발주기관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5조(실비의 산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3. 건설업면허를 포괄 양수한 법인의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여부

법무심사팀-960, 2005. 07. 01

## ■ 질 의

당사는 2002. 5. 03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면허를 득하여 건설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으로부터 2005. 01. 05에 분할 신설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면허를 포괄 양수한 법인입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의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영위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여부?

## ■ 회 신

공사입찰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공사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법인으로 분할신설하고 기존 법인의 건설업을 신설법인에 포괄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및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예규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분할신설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판단할 사항임.

## 4. 낙찰자가 계약이행불가능시 입찰보증금 귀속여부

인터넷 질의회신 2011. 11. 11

### ■ 질 의

실험체(Techspan) 공사를 위하여 일반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동 시설물은 특허 등록된 시설물로서 낙찰자가 특허권자의 특허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시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입찰보증금은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여부는?

### ■ 회 신

공사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참고로, 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특허권사용료 및 기술료 등을 공사원가에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의 이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지정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경우 동 일반조건 제37조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서상 특허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설계서의 해석대상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제4절 입찰의 유 · 무효

### 1. 입찰 유 · 무효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법무지원팀-2999, 2006. 09. 12

#### ■ 질 의

세입이 되는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구비와 관련하여

<질의 1>사업자등록증 및 납세번호가 없는 개인의 입찰자격 유무

<질의 2>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입찰의 무효여부

<질의 3>입찰이 무효일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를 질의함

#### ■ 회 신

#####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에 관한 제14조 내지 제16조는 적용이 배제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것인 바, 세입의 원인되는 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 개별입찰에서 당해 입찰공고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은 무효임.

##### 3. 귀 질의 3에 대하여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것임.



## 2. 내역입찰의 유효 및 수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124, 2005. 12. 16

### ■ 질 의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서 금액, 총계금액, 공종별집계표상의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나, 공사단위 세부비목 금액이 착오가 있는 경우로서 동 착오에 의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입찰이 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공사단위별 세부금액의 수정 가능여부

### ■ 회 신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입찰에 있어 산출내역서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9조에 규정된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고,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수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하인 경우는 동 집행기준 제20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처가 교부한 물량내역서 및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또한,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로서 동 집행기준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은 동 집행기준 제21조 각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는 것임.

### 3. 임대인이 임대물건에 대하여 직접공사를 요청

법무지원팀-3270, 2006. 10. 02

#### ■ 질 의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에 의하여 임대차 물건의 변형을 가져오는 대수선을 시행하려할 때에 임대인이 대행하여 임대차 물건에 대한 대수선을 직접 집행하고자 할 경우 그 비용의 지불방법? (공사비가 약 8천만원 소요)

- 1) 임대인의 시공서류를 제출받아 승인 후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
- 2) 임대인에게 시설부대경비 형태로 지급

#### ■ 회 신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 발주 및 대가지급방법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4. 내역입찰의 무효여부 및 수정방법

법무지원팀-806, 2005. 09. 14

#### ■ 질 의

총액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로서 낙찰자결정통지를 받고 계약준비 중 입찰내역서에 일부공종(토공사)의 합계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세부비목을 합산한 금액이 불일치되는 입찰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한 유효한 입찰인지 여부

#### ■ 회 신

내역입찰에 있어 산출내역서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9조에서 규정한 별지1호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고,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며,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 5. 면허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에서 계약체결 후 그 입찰 및 계약이 원인무효인지 여부

법무지원팀-3480, 2006. 10. 24

### ■ 질 의

관련법에 면허를 받은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입찰에서 면허를 가진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고조건에 따라 면허 미소지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입찰계약이 원인 무효인지, 아니면 관련법에 위반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경쟁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공고내용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입찰내용을 정정하거나 또는 취소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경쟁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입찰 및 계약의 원인무효 여부는 해당 구매목적물의 자격요건에 관한 법령, 민법, 사업목적의 범위 및 규모, 계약이행 여부, 당해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 제5절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PQ심사

#### 1. 저가심사시 공종의 선정 및 구분 방법

법무심사팀-155, 2005. 01. 07

#### ■ 질 의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있어서 공종의 선정은 발주기관이 자체 예정가격조서 (원가계산자료 또는 설계내역 등 포함)상의 공사내역에 따르는지?
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있어서 공종이란?  
예컨대, 전체 공사에 있어서 부분별 또는 상호 연결되는 기능별 공사로서 구획이 가능하며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량에 가격을 적용한 일위대가 계산단위를 말하는지?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터파기, 암반제거, 발파, 기초골조 공사,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단위공정별 공사금액, 간접노무비, 경비 등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있어서 공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 ■ 회 신

경쟁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종의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에 따르는 것이므로 동 기준에 의한 공종의 선정에 관하여는 동 심사기준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 입찰에 있어서 공종의 선정에 관하여는 동 심사기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동 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정된 공종의 목록과 내용에 관한 서류

및 당해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 등을 당해공사 현장설명일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교부한 공종 관련 서류, 세부심사기준 및 입찰공고 등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최저가 낙찰대상공사에 대한 공종의 구분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바, 동 세부기준에 의한 공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구분은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며, 법정경비,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 부가가치세, 이윤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 2. 기업합병시 사전심사기준 적용 기준일

인터넷 질의(’ 11.06.10)

### ■ 질 의

가. ○○ 시설공사 (2등급지명공사, PQ심사 대상공사, 최저가 공사, ○○지역가점공사), PQ마감일 2011년 04월 15일, 현장설명 4월 29일, 개찰일 05월 20일, 사유서 심사 5월 27일, 계약일자 6월 3일

나. △△ 시설공사 (3등급지명공사, PQ심사 대상공사, 최저가 공사, 인천지역 49% 의무공도도급 대상공사), PQ마감일 2011년 04월 15일, 현장설명 4월 29일, 개찰일 05월 20일, 사유서 심사 5월 27일, 계약일자 6월 3일

양수자 : A건설 주식회사 (조달청 3등급사, 경기지역 소재)

양도자 : B건설 주식회사 (조달청 2등급사, 인천지역 소재)

질의 1.) ○○ 공사의 경우 B건설회사는 신용평가등급 A0로 PQ심사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판정을 받았으나 입찰일 이전 위 양수자 A건설에 합병되었고 A건설사는 신용평가등급이 CCC+ 이었다면 PQ심사시 받은 적격판정이 취소, 번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적격을 받았으니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며, 또한 결격 이라면 어느 시기(현설, 입찰, 계약)까지 A0의 신용등급을 유지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시설공사의 경우 PQ마감일인 4월 15일에는 인천지역 소재였던 B건설사가 지역업체로 참여 하여 PQ심사 결과 적격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B 건설사는 개찰일인 5월 20일 이전에 A건설사로 양도가 되어 존속하게 된 법인 A로 합병이 되었다면(소재지 경기로 변경) PQ적격판정시 지역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결격이 되는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현설일, 입찰일, 계약일중 언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인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라 함)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절차)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PQ심사 적격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PQ심사 적격자가 당해 입찰의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에 다른 법인으로 흡수합병되었거나 양도되어 없어진 경우라면 동 없어진 법인(PQ심사 적격자)은 입찰에 참가가 불가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는 민.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흡수합병 및 양도.양수의 법률적 효력(권리.의무의 양도범위 등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 등을 검토하여 당해 입찰집행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단, 입찰참가자격 그 자체를 국가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의무"로 까지 보는 것은 곤란시 될 것입니다.

### 3. 기업의 합병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347('08.11.03)

#### ■ 질 의

A업체(합병에 의하여 존속예정인 법인)는 신용평가등급(BBB+)이고, B업체(합병에 의하여 소멸예정인 법인)는 신용평가등급 없는 경우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평가 이전의 신용평가등급 적용은 흡수합병이므로 합병에 의하여 존속예정인 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은?

#### ■ 회 신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합병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심사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낮은 업체의 등급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업체의 정확한 신용평가등급 반영이 우선목적이며, 아울러 합병이 신용평가등급 상향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임.
2. 따라서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획득 시 까지는 등급이 가장 낮은 업체를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신용평가등급이 실제보다 평가절하 되거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병업체 스스로 새로운 신용평가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4.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건설업 분할 · 신설시 경영상태 평가

법무지원팀-3196, 2007. 08. 07

### ■ 질 의

당사는 건설업과 조선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2007년 8월 1일자로 인적분할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전담하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잔존회사)와 건설업 및 조선업 등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신설회사인 (주)○○중공업으로 분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및 조선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신설회사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주2)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과 「적격심사기준」 [별표2]주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방법”에 관련하여 질의함.

#### <질의 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최근년도 정기결산서의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주)○○중공업의 “기술개발투자비율”은 분할되기 이전의 가장 최근의 법인의 직전년도 정기결산서에 의한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질의 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방법 중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평가하는 바, 투자를 전담하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잔존회사) 설립을 위하여 건설업(조선업 포함)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 건설업체의 경영상태평가는 당해연도 정기결산서 작성 전까지는 최초결산서(개시대차대조표와 동일,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기술개발투자비율,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평가자료가 없음)로 하는지, 아니면 분할되기 이전의 가장 최근의 법인의 직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는지.

#### <질의 다>

만약, 기술개발투자비율평가 및 경영상태평가를 최초결산서(개시대차대조표와 동일,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기술개발투자비율,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평가자료가 없음)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건설업(조선업 포함)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바랍니다.



## ■ 회 신

입찰에서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자가 「상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으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입찰과 관련된 입찰참가 및 낙찰자의 지위, 평가자료(실적 등)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건설업 분할·신설시 경영상태 등의 평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2200.04-147-23, '07.7.04)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심사의 기술능력심사에 있어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의하는 바,

이 경우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전담하는 지주회사(잔존회사)와 건설업 등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신설회사로 분할하게 된 경우, 신설회사는 건설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건설부문매출액 및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포함)하였으므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의 당년도 정기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기술개발투자비율은 분할되기 직전 법인의 가장 최근년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한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 귀 질의 “나, 다”에 대하여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2200.04-149-19, '07.7.4)에 의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같은 예규 [별표] 2 주2) 제3호에 따라 신설회사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토록하고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으로 인한 분할 신설의 경우는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가 실제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있으며,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악용할 소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의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경영상태평가는 분할되기 이전 회사의 가장 최근년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적격심사

### 1. 검침용역업무의 적격심사 기준

법무지원팀-308, 2006. 01. 27

#### ■ 질 의

##### <질의 1>

국가계약법령상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바 검침용역의 경우 어떠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2>

일반용역의 경우 적격 심사 시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기준점이 되는 100분의 88(88%)을 상향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 3>

일반용역인 검침용역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4>

검침용역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 ■ 회 신

- 질의 1, 2에 대하여

용역입찰에서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세부심사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동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나,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검침용역입찰에서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기준점도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동 예규 제6조에 의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할 것임.

### – 질의 3에 대하여

용역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또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분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임.

### – 질의 4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 2. 전자입찰 관련 적격심사 자료 적용

법무심사팀-904, 2005. 06. 20

### ■ 질 의

지하역사 고취도 유도등 개량공사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고 적격심사는 G2B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 부적격통보를 하였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회사 소속직원의 G2B 전자입찰시스템 입력 실수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G2B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바로잡고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재심사는 당초의 자료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잡은 G2B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재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입찰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를 함께 있어서 적격심사 자료를 동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토록 입찰공고

(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적격심사자료로 평가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된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구체적인 경우 심사 자료의 적용은 입찰공고 내용(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적격심사대상자 및 관련협회에서 제출(등록)한 자료,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 입찰가격평점산정

인터넷 질의

#### ■ 질 의

##### 예시)

입찰가격점수(배점)가 20점이고,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였음)이 15억원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입찰가격이 갑은 11억원, 을은 13억원, 병은 14억원, 정은 15억원인 경우, 입찰참가자들의 입찰가격점수(평점)는 몇점인지요?(갑의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의 80% 미만이고, 을병정 3명의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의 80%이상임)

의견에 따라서는,

- 1) 최저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미만 또는 80%이상에 관계없이 11억원으로 계산하여

갑의 평점은  $20X(11/12) + [2X(12-11)/(12-9)] = 19.0000$ 이고,

을의 평점은  $20X(11/13) = 16.9231$ ,

병의 평점은  $20X(11/14) = 17.7143$ ,

정은  $20X(11/15) = 14.6667$  이라는 의견이 있고,

- 2) 최저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미만과 80%이상으로 구분 80% 미만은 11억원, 80%이상은 13억원으로 계산하여

갑의 평점은  $20X(11/12) + [2X(12-11)/(12-9)] = 19.0000$ 이고,

을의 평점은  $20X(13/13) = 20.0000$ ,

병의 평점은  $20X(13/14) = 18.5714$ ,

정은  $20X(13/15) = 17.3333$  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제안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입찰가격의 평점은 동 예규 [별표 주)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르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가격 평점은 갑 19점, 을 16.9231점, 병 15.7143점, 정 14.6667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4. 개인사업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는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나 영업장소재지의 재무제표 또는 신인도 자료의 경영상태 인정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23, 2008. 08. 11

## ■ 질 의

개인사업자가 입찰공고에서 당해 업종, 종목, 면허가 동일하다면 제출하는 재무제표 또는 신인도 평가서류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영업장소재지가 다르더라도 당해 업종, 종목, 면허 등과 관련된 법령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가 제출한 당해 재무제표 또는 신인도 평가서류는 동 개인사업자의 경영상태 또는 신인도 평가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 ■ 회 신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격심사서류는 당해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바,

이 경우 재무제표 또는 신인도 평가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입찰등록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상의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상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재무제표 또는 신인도 평가서가 당해 사업자에 대해 평가한 것이라면,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기준 등에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당해 입찰자의 경영상태 또는 신인도 평가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경영상태 또는 신인도 평가자료의 인정여부는 당해 재무제표 또는 신인도 평가서의 내용, 관련법령 및 동 자료 발급기관의 확인 등 제반상황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

## 낙찰자 선정

### 1. 협상계약에서 배점한도 적용 적법성 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816, 2010. 08. 12

#### 질 의

"○○ 제조 구매"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발주처 자체 임의대로 특정항목의 배점한도를 10점을 초과하여 입찰 공고하여도 적법한지?

#### 회 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항목이 아닌 분야별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의 각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술능력 분야의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각 항목의 배점한도는 동 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비고란에 따라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발주처의 입찰공고에서 적시한 특정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관계규정에 부합한 것입니다.

### 2. 협상계약에서 가격점수 평가

인터넷 질의 ( '11.04.29)

#### 질 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업무를 추진할 때 유효 복수의 입찰제안서류를 접수하여 기술능력심사를 하였을 때 1개 업체만 협상적격자로 통과하였을 경우 [배점 기준의 85% 이상 득점자] 이때 그 1개 업체에 대해 가격점수를 평가하여 협상 후 계약 등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공고하여야 하는지요?

요약 : 협상적격자가 1개뿐일 경우 가격점수 평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공고하여야 하는지요? 그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지요?

## ■ 회 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당해 입찰이 성립되었으나, 동 예규 또는 해당 발주처가 입찰공고에서 적용하기로 명시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1인 뿐인 경우라 하여도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약, 동 협상결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적격심사시 잘못 입력된 전산자료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1956, 2007. 05. 15

## ■ 질 의

“○○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의 입찰결과 당사가 적격심사대상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전기·통신·소방 등 3개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전기와 통신공사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는 당사의 면허와 동일하나 소방안전협회에서 제출한 서류는 협회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숫자를 잘못 입력한 연유로 점수미달로 탈락시키는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 회 신

공사 등의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공고조건에서 낙찰자결정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낙찰자의 결정 및 심사 자료의 평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동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적격심사 자료로 평

가하는 것이며,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1항에 의하여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동 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 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 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4. 계약체결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6228 ( '11.12.01)

##### ■ 질 의

물품구매입찰에서 참가업체가 입찰공고문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지만 별첨의 규격서 파일에서 정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적격심사를 통과하였을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상기 사유를 근거로 계약체결의 불가를 공지하고 차순위업체를 적격심사하여 계약체결해도 되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물품제조(구매)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항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사양과 관련되는 기술사항을 기재하는 규격서에 명시하는 것 보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고문 본문 중의 "입찰참가자격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별첨 규격서상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우수단체표준제품표시(EQ) 인증을 받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시 갖추어야 할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1순위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입찰자가 납품기한까지 EQ인증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정적이고 동 입찰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5. 유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38, 2005. 08. 08

### 질 의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3개사가 참여하여 그 중 동 평가에서 적격인 2개사를 선정한 후 동 업체를 상대로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지명경쟁입찰(가격개찰)을 실시하였으나 1차 및 2차(재공고)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사만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이 된 바, 이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회 신

용역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결정해야 함.

## 6.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방법

법무지원팀-52, 2005. 07. 11

### 질 의

공사계약의 이행 중 동 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 '나'목에 의거 1차 수의계약을 당초의 △△공사 계약의 낙찰율(94.78%) 이하인 91.4%로 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2차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2차계약시 적용하여야 할 낙찰율은 당초 △△공사 계약 체결시의 낙찰율(94.78%) 이하인지 아니면 1차수의계약시 적용되었던 낙찰율(91.4%) 이하인지요?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

4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1차공사라 함은 당해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금차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가 당초 공사인 '○○대로 개설공사'라면 동 공사의 낙찰율인 94.78% 이하로 하여야 할 것임.

## 계약실적의 인정

### 1. 용역입찰시 이행실적 규제

법무지원팀-816, 2005. 09. 09

#### ■ 질 의

신규업체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용역계약을 수행할 능력과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등으로 제한하여 진입(입찰)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기득권세력을 보호하는 규정이며, 소규모 용역까지도 굳이 실적으로 제한한다면 신규 업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인 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 ■ 회 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공사(제조)실적,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바, 이는 특정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유사)한 계약내용의 실제 수행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이 용역입찰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5호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 목적물의 성질, 규모, 계약이행의 난이도, 경쟁성립의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의 소규모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 또는 수량인지가 불분명하나 당해 계약목적물 계약이행과 관련한 관련법령상의 자격요건 등이 구비되면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소액(수량, 금액)의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임.

## 2. 입찰참가자격 유무효 및 실적인정 범위

법무지원팀-2447, 2007-6-18

### ■ 질 의

감리전문과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 건축사사무소를 인수·합병하여 회사명과 주소지 등을 2007.5.4.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건축사협회에는 2007.5.9. 변동된 등기내용(인수·합병, 회사명 등)을 신고하여 건축사 업무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관할관청에는 2007.5.9. 변경신고하여 2007.5.17.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2007.5.15일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이 공고된 경우 참고로, 감리용역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일은 공고일로 함

#### <질의 1, 2>

입찰참가자격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을 변경(상호, 주소지 등)한 날, 즉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07.5.4)이 공고일 이전이므로 유효한지, 아니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통보 받은 날(07.5.17)이 공고일 이후이므로 무효인지 여부.

#### <질의 3>

법인을 인수·합병한 경우 실적합산 인정은 합병일(2007.5.4)인지 아니면 관할관청 변경수리일(2007.5.17)인지.

### ■ 회 신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

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것인 바, 변경등기의 효력은 그 변경의 신청에 따른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실적인정 포함)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3. 실적제한 입찰에 있어서 공사실적 인정 여부

법무지원팀-1316, 2005-10-20

### ■ 질 의

#### 실적제한 입찰에서

- 1 : 과거 공사실적업체가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려는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과거 공사실적이 있더라도 실적제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2 :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업체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제1호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으로 실적제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3 : 질의 1, 2의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4 : 발주처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잘못 적용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을 시 입찰 및 공사계약의 유효 여부

## ■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 등록자이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목적, 성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 3, 4에 대하여>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유·무효 판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당해 입찰공고 조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한 유권해석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4. 실적제한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여부

법무지원팀-1054, 2007-03-19

### ■ 질 의

“□□항 복컨테이너터미널(2-1단계) 전력중앙감시제작설비 제조·구매”건의 실적제한(총액, 적격심사)입찰에 있어 실적인정범위를 질의함

- 공고 내용(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전력중앙감시제어설비 전문제작 중소기업자로서 전력중앙감시제어설비 제조, 납품실적이 단일건으로 661백만원 이상인 업체

- 발주처 의견

1개사업에 대하여 3개사에 분할배정된 단체수의계약건은 입찰공고 서에 명시한 “적격심사적용기준”에 명시된 ‘단일계약하여 제작 납품 한 실적’으로 볼 수 없음.

- 당사 의견

입찰시 제출한 실적인정증명서상 구매대상물품의 실적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으로 △△공사가 인정한 사항으로 참가자격실적제한금액을 초과하며, “적격심사적용기준”은 입찰참가자격요건과는 별개임.

### ■ 회 신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실적의 인정 여부는 입찰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

## 5. 면허 취득과 납품실적 인정여부

법무심사팀-772, 2005. 02. 28

### ■ 질 의

전기공사가 포함된 설치도조건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수행중 전기공사업등록이 소멸되었으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1. 다른 건의 물품구매입찰(전기공사가 포함된 설치도조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제품의 설치, 시운전 및 준공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현재 전기공사업면허가 없음에도 동등 이상의 납품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다른 전기공사업 면허보유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납품실적합산이 가능한지
3. 물품구매적격심사시 물품구매계약(시운전 조건)과 관련하여 기 수행한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실적을 전기공사협회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공사실적으로 신고한 경우 물품납품 시운전실적도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회 신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동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공사·제조·구매 또는 설치 등의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또는 동 실적으로 동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이행한 실적(관련 면허·등록 등이 반납 또는 취소되기 전에 이미 착수하여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이 상실되고도 계속 수행한 과거의 이행실적 등을 포함)은 그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요구한 입찰에 있어서는 이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적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공고내용, 면허·등록사항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발급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의 내용 및 계약 목적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6. 선금 취득 전의 실적인정 여부

법무지원팀-1932, 2005. 12. 05

### ■ 질 의

1.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군 청사를 활용하여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동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의 학술용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의거 특정인과 수의 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한지와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 여부
2. 동 박물관 건립의 건축설계경기와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를 함에 있어 입찰 참가 자격요건으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 전문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전시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마목) 단일 건 3천만원 이상의 설계실적 또는 3억원 이상의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입찰자가 실내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를 하기 전에 국가기관 등에 제작, 설치한 실적이 공고 상에서 요구한 실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적제한 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수의계약은 계약목적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 또는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계약목적물이 동 시행령상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계약목적물의 특성, 경쟁성립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과정에 원인무효인 사유가 있어 당해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할 것임.

또한, 경쟁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 제한한 경우, 당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실적과 같은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사업과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실적을 의미하는 것인 바,

입찰공고시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 전문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전시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마목) 단일 건 3천만원 이상의 설계실적 또는 3억원 이상의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실적이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신고 등을 필한 후의 제작, 설치 실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 면허, 신고 등을 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적도 인정할 것 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에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신고 등을 필한 후의 실적을 요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

## 7. 공동수급 시 용역실적 인정에 대하여

### ■ 질 의

백과사전 편찬을 위한 번역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2년간 국가기관 번역관련 단일 프로젝트 1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가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다면 이 경우 실적인정방법과 제안서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하인 입찰참가자는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지?

### ■ 회 신

협상에 의한 용역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용역실적의 인정여부는 입찰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분담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실적증명의 발급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이행 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부분으로 분리·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 전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및 개별법령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검토, 재평가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할 것임.

## 8.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준공의 기준일에 대하여

법무심사팀-546, 2005. 02. 17

### ■ 질 의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제적부 전산화 작업 사업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 경우 준공계 접수일자(납품일)와 준공검사일자(납품검사일) 중 어느 일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한 “실적”이란 1건의 공사·제조·납품·용역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 또는 납품기한내에 준공신고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준공 또는 납품 등의 검사에 합격된 공사·제조·납품·용역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준공신고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제조·납품·용역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동법동조동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실적(공사·제조·납품·용역)의 인정여부는 입찰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

## 9. 계열사간 실적승계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6934, 2009-12-28

### ■ 질 의

○○를 인적 분할하여 유통사업부문은 □□와 제작사업부문은 △△와 합병하고  
○○은 청산하기로 한 경우 ○○의 유통사업부문에서 수행하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이행에 의한 사업실적이 ○○의 유통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아 합병한 □□로 승계되는지?

#### < 분할합병계약서 >

제☆조(유통사업부문 및 권리의무의 승계) 분할합병기일 현재 ○○의 유통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는 □□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 회 신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실적인정 포함)된다고 봄. 따라서 이 경우 분할합병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규정된 경우라면 분할합병전의 법인의 사업실적도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사업실적의 승계여부는 사업양수도의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여부,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10.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인정 여부

인터넷질의 2005-02-14

### ■ 질 의

A법인이 2004. 12. 31자로 선박제조회사인 B법인이 보유한 대지, 건축물, 기계설비 및 제조설비, 기타 일체를 포괄 양수한 경우 포괄양도자인 B법인이 보유한 선박건조실적을 승계 받을 수 있는지?

## ■ 회 신

계약에서 어느 법인이 「상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다른 법인의 권리·의무와 보유재산(공장건축물 및 설비 등 유체재산 및 무체재산) 등 일체의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에는 그 포괄양수자는 포괄양도자가 보유한 실적도 포괄하여 승계한다 할 것임.

### 11. 하도급 실적의 인정여부

법무심사팀-598, 2005. 05. 31

## ■ 질 의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시설물관리용역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설물 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기관의 실적제한 입찰에서 당해 용역수행부분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회 신

시설물관리용역 등의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용역수행실적을 말하는 바,

이 경우 용역실적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 뿐 아니라 그 외의 기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 및 해외용역실적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실적증명은 발주한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임.

다만, 구체적인 경우 하도급 용역수행실적의 인정여부는 관련 법령, 입찰공고내용, 당해 용역의 특성, 하도급계약의 승인여부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 12. 하도급업체 시공 전문공사 실적을 원도급업체가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아 실적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1248, 2005. 10. 13

### ■ 질 의

실적제한 입찰에 의한 수문 제작·설치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에서 시공한 전문공사 실적을 원도급업체가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아 실적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적증명서 발급처가 확인한 실적증명서상의 실적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적용성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1호에 의하여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입찰공고 내용, 공사의 특성, 실적증명서, 공사실적의 제한취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제3장 계약관리

제1절 계약체결

제2절 감독 및 인수

제3절 선금금 및 대가지급

제4절 보증시공 및 하자관리

제5절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 제3장 계약관리

### 제1절 계약체결

#### 계약보증금

##### 1.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인터넷 질의 2011. 01. 21

#### ■ 질 의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납부관련

#### ■ 회 신

국가기관이 물품구매를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을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당초 매회별 이행예정량을 최대량(15,000개)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징구한 후, 계약이행중 최대량을 초과하여 일시에 100,000개를 납품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의 성격으로 보아 총액에 대한 계약보증금(100,000개×계약단가×10%)을 감한 금액을 추가 계약보증금으로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봄.

## 2.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인터넷 질의 2011. 01. 10

### ■ 질 의

물품구매계약의 변경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난 2007년도에 '10. 12. 30. 납기로 계약체결한 건에 대하여 '11. 12. 30.으로 납기변경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에 받은 계약이행증권의 기간을 연장(증권배서)하는 방법 이외에, 당초 계약이행증권과 별도로 또하나의 계약이행증권(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이며, 보증기간은 변경계약일로부터 변경납기까지)을 제출하는 방법도 유효한지

### ■ 회 신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나’ 목에 따라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을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하는 것임.

## 3. 정부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인터넷 질의 2011. 05.02

### ■ 질 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2008.3.) 하였고, 2011.4. 하자보수보증금 원금과 보관금이자(연0.5% 적용)를 반환 받았습니다. 상기 건 이전에 반환 받은 보관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은 동 발주처 및 타 기관으로부터 연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환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이자율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보관금의 이자율 적용 기준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한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제53조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수납 받은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에 의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동 취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납부자별로 계산·관리 및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 달성이 달성된 때에는 제63조제1항 및 동 취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보관금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보관금 및 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 4. 장기계속공사 연차준공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

인터넷 질의 2010. 12. 01

## ■ 질 의

국가계약 내용 중 일부는 해지/ 일부는 이행되었을 경우 해지된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 징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계약금액 : 1,000만원

- 계약 미이행(100만원) : 계약 해지
- 계약 이행(900만원) : 납품 대가 지급 계약 금액(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계약이 미이행된 100만 원의 10%인 10만원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 회 신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 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계약상 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일부 품목을 분할납품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동 예규 제8조제1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납부된 당해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하여야 하는 것임.

## 연대보증

### 1. 연대보증인 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084, 2005. 12. 14

## ■ 질 의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와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 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연대보증인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연대보증인과 합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연대보증인의 변경이 가능함. 다만,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변경은 당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 2. 공사이행 보증방법 변경

회계제도과-114, 2010. 01.18

### ■ 질 의

계약상대자가 “원활한 공사진행 및 하자관리”를 위해 수요기관에 연대보증사 입보를 건의하고, 수요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당해 공사대금채권 압류로 인해 계약자의 공사포기 등 원활한 공사이행을 저해하는 상황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공사이행보증방법과 그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동 조제2항은 공사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1회에 한하여 동 조제1항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이행보증 변경과 관련하여 동 조제1항제2호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0/100이상 납부하는 방법”에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동 조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임.

## 공사손해보험

### 1.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법무지원팀-1670, 2007. 04. 23

### ■ 질 의

국도 건설공사에서 터널공사 2Km 도로공사 3Km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공사손해보험 가입은 터널공종 부분만 가입하면 되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손해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계약목적물은 터널건설공사임.

## 2. 공사비 증액시 건설공사 손해보험 추가 부보여부

법무지원팀-484, 2005. 08. 17

## ■ 질 의

의무적 공사손해보험 대상공사에 해당되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당해 공사의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계약금액도 증액이 되어 추가부보를 하여야 하나 공사기간 중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에서 정부투자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

### <질의 1>

이 경우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에 따라 추가되는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질의 2>

지급받을 수 없다면 이 경우에도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추가적으로 손해보험을 부보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에 있어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5조제4항 【현행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7조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

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순계약금액이 증가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보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현행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 제73조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증가된 순계약금액 또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추가 담보함에 소요되는 손해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증가된 순계약금액 또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추가 담보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요령(현행 동 집행기준) 제4조 단서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을 것임.

### 3.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임의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법무심사-844, 2004. 11. 02

#### ■ 질 의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는 아니나 시공상 지하매설물 등의 중요성 등으로 공사손해보험가입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계약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에 의하여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지와 가입시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현행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6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동 요령 제8조(현행 집행기준 제60조)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

니한 공사에 대하여도 특별히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가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특성과 공사시공 중의 위험 및 손해발생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한편, 계약상대자가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할 것이며, 당초 계약체결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이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관련 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현행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 4. 공사손해보험료 정산방법

법무지원팀-2089, 2007. 05. 23

##### ■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제3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6항에 의하면 “...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서는 당해 계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이 실제 납입한 공사손해보험료만 기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실제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계약서상의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공사손해보험료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항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6항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 보험가입범위에 충족되게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의 공사손해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에 차액이 발생 되었다 하여 이를 감액할 수 없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공사손해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임.

## 제2절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1. 용역업무 배치인력 운용

법무지원팀-851, 2005. 08. 26

#### ■ 질 의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운영요원의 자격요건을 당초 보다 상위 기술자를 투입·운영(단, 인원일부 감소)함으로써 고품질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의 계약내용의 위배여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용역과업을 수행할 책임기술자 및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당초 공고조건에 반영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변경 기술자의 기준 및 배치인원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용역 관련 법규 및 당해 계약조건 등의 검토를 통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2. 검사관 지정시기

인터넷 질의 ( '11.12.01)

### ■ 질 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검사) 의하여 검사(수)관 지정은 계약의 이행을 완료된 후에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체결 이후 계약 이행 중에도 지정 하여도 무방한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검사업무를 수행할 검사공무원의 그 지정(임명 등)시기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시기에 지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미리 지정(임명 등)하여도 될 것입니다.

## 3. 외산 사급자재(철근) 공급원 승인

법무심사팀-113, 2005. 04. 29

### ■ 질 의

본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사급자재인 철근을 수입품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품질관리 및 납품실적 미비로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바, 품질관리를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품질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공급원 승인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국내 공공공사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공사 납품실적으로 대체하여 납품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예규 제12조에 의하여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고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

며,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12조에 의한 공사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동 공사자재에 대한 검사기관 및 방법 등은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하되,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수입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의 여부 및 검사는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4. 관급자재 관리 한계

인터넷질의 ( '11.12.04)

##### 질 의

소규모 제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이하 발주처라 함)과의 연간단가계약을 2010.6월경에 체결하여 발주처의 산하기관에서 2010.1월부터 적용 중이던 규격으로 검사·검수를 거쳐 2010.7월에 납품을 완료하여 동 제품을 2010.8월 이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납품이후 새로이 변경된 규격을 적용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며 응분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바, 기납품분에 대한 변경 규격의 적용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계약법에 저촉되는지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계약규격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규격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문서인 규격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의 납품을 완료한 수량에 대하여는 납품 이후 발주처 사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계약상의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5. 특정제품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법무지원팀-1373, 2005. 10. 21

### ■ 질 의

특수시설에 소요되는 마감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당해 설계의도 및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정 제품명을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지와 불가하다면 그 근거는?

### ■ 회 신

설계용역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현행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 규정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시에 설계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는 특정 제품을 설계서에 명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설계용역 대상공사의 특성 및 당해 설계관련 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표준품의 자재로도 시공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정 자재를 지정하여 설계에 반영함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 공종의 설계 기준 및 시공자재의 제반기준(규격, 품질, 성능 및 효율등)에 비추어 특정 규격의 제품이 아니고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규격의 제품을 설계서에 명기할 수도 있을 것임.

## 6. 기성대가 지급시의 약식기성검사 기준

법무지원팀-1617, 2005. 11. 09

### ■ 질 의

기업의 자금난완화 등을 위한 회계통첩('98.4.2 회계 41301-372)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이하 “약식기성검사”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약식기성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시행하되, 단,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기성검사 3회의 적용기준이 공사시행기간 기준인지 아니면 기성회수 신청기준인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따라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약식기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공사착공 후 3회째 기성검사를 하는 때에는 정식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7. 감리원(공사감독관)이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한 제품을 턴기공사의 자재로 사용가능여부 등

법무지원팀-2667, 2007. 07. 02

### ■ 질 의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물품을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에게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신청서 작성제출 시 복수 승인한 것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을 구하는 발주처의 답변서 부분 송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 <발주처 답변·회신 요약>

시공사의 요청으로 계약서와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A사 자동절환스위치(CTTS)를 감리사가 B사제품도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하여 공급 가능케하자 시공사의 하수 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탈락한 질의자로부터 발주처에 감리원(공사감독관)의 복수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시정조치가 접수되어, 질의자도 참석한 기술자문회의 결과 동등이상품으로 판단 처리함을 통보함.

#### <질의사항>

- 1) 발주기관의 설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와 일괄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설계서에 명기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감리원(공사감독관)이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한 제품으로의 사용가능여부
- 3) 감리원이 복수로 승인한 자재의 사용전 검사시 합격으로의 처리 가능여부
-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에 위반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 ■ 회 신

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품질, 규격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설

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서에 명시된 특정제품에 대하여 당초 설계서와 동등 이상의 규격·품질·성능인 제품으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인지 여부 및 승인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에 부합 여부, 당초 입찰공고조건, 규격·품질·성능의 제반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제6호에 의거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귀 질의 다)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를 완성하여 검사를 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계약위반 및 부당의 판단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 8. 책임감리현장에서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 및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책임소재

법무지원팀-3815, 2006. 11. 21

#### ■ 질 의

○○청 수요 “□□~△△간 ☆☆확포장공사”의 책임감리현장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시 감리전문회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와 감리업무 수행시 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책임소재는?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서 검사를 위하여 준공신고서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보는 것이며,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납품 및 준공

### 1. KS 인증기준

법무지원팀-3182, 2006. 09. 25

#### ■ 질 의

일부 입찰자가 저가로 낙찰 받아, KS제품은 납품기간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비KS제품만 납품하여 수금하고 KS제품은 계약을 포기하여 부정당업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함.

질의 1) 관공서에서 입찰시 물품의 규격에 KS제품이 명시되었을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KS인가업체의 제품이어야 하는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물품 납품일까지 KS인증서를 획득한 업체의 제품이어야 하는지?

#### ■ 회 신

물품구매계약에서 물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규격에 KS제품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검사시에 KS제품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임.



## 2. 문서 접수일자 판단기준

법무지원팀-4340, 2006. 12. 28

### ■ 질 의

○○센터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기한인 '06.11.27까지 납품완료하고  
 관련공문과 서류를 '06.11.27. 17:00경에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제출하였으나,  
 ○○센터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기한인 '06.11.27까지 납품완료하고  
 관련공문과 서류를 '06.11.27. 17:00경에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제출하였으나,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공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문서의 접수일자는 처리과에 동 문서가 접수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3.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법무지원팀-634, 2005. 09. 01

### ■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01자로 공사완료 통보를 받았다면 준공검사 기간이 9.14인지 9.15까지인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준

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받은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바, 기간계산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삽입하지 않음.

#### 4. 납품은 하였으나 발주처가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준공에 대하여

법무지원팀-1980, 2005. 12. 08

##### ■ 질 의

###### 계약목적물 인수

○○청에서 발주한 “무선중계기 1식” 계약에 있어 납품 인수도를 위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목적물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로서

###### <질의 1>

당해 계약조건에 정한대로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 및 검사결과를 수요기관이 임의(상급기관의 지시)로 시험 및 검사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지?

###### <질의 2>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는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계약목적물이 인수 또는 납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3>

계약조건에서 정한대로 시행한 시험 및 검사결과가 적합한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지 않고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현행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납품하고,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계약물품의 시험 및 검사를 국가공인기관에서

받는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라면 동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에 정한대로 시험 및 검사를 마쳤음에도 발주기관이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403조의 채권자 지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 납품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서, 규격서, 계약이행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 3에 대하여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동 예규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조건에서 정한대로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 및 검사결과가 적합한 계약목적물인 경우라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동 예규 제31조제1항에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

## 5. 납품 후 사용규격 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6231 ( '11.12.01)

### ■ 질 의

소규모 제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이하 발주처라 함)과의 연간단가계약을 2010.6월경에 체결하여 발주처의 산하기관에서 2010.1월부터 적용 중이던 규격으로 검사·검수를 거쳐 2010.7월에 납품을 완료하여 동 제품을 2010.8월 이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납품이후 새로이 변경된 규격을 적용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며 응분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바, 기납품분에 대한 변경 규격의 적용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계약법에 저촉되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계약규격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규격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문서인 규격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의 납품을 완료한 수량에 대하여는 납품 이후 발주처 사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계약상의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상대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 지점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와 그 방법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58, '08. 09. 08

### ■ 질 의

하나의 법인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얻어 본점과 지점의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점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의 당사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지점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및 위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 ■ 회 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법인의 본점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이므로 이 경우 계약상대자를 법인의 본점에서 동 지점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당해 계약의 이행은 계약상대자인 법인 자체가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허가받은 법인의 용역계약의 내용이 본 처리시설(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계약조건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제3절 선금급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1. 물품구매계약에서 선금지급 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319('07.02.21)

#### ■ 질 의

“탑승교 설계, 제작, 현장설치 및 시운전 ”까지 포함된 제조 물품을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입찰참여 가능하도록 구매입찰 공고하였으나, 제조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계약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참가시 국내공항탑승교 제작설치실적을 요구하였고, 실제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물품제조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고려할 때 물품제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 2. 구매설치계약의 선금지급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73, '08. 09. 09

### ■ 질 의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반면에 ○○개 지방경찰청 수요 무인교통감시장치(CCTV) 설치구매의 본 계약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과 정보통신공사사업면허를 요구하였고,

입찰참가자격에 동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제한하였지만, 국가공인기관 기술검사(과속, 신호위반 등 다기능 모두 취득) 및 2006년도 시행된 신규번호판 특별 기술검사 합격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즉 동 물품구매계약의 검사합격에는 공급업체도 합격하지만 실제로는 제조업체가 거의 합격하는 실정이며, 계약이행내용의 일부가 공사인 등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식이 물품구매라는 사유로 선금지급이 불가한 것인지?

### ■ 회 신

계약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참가시 공사사업면허를 요구하였고, 실제 계약내용 중 일부분이 공사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공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구체적인 경우 선금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선금지급은 발주기관의 예산상황, 계약내용, 관계규정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3. 기성금 지급후 선금지급 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2011. 11. 07

#### ■ 질 의

시설(토목)공사 발주를 2011. 5월에 당초 800,000,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선금신청이 있어 200,000,000원을 5.29일에 선금지급하였고, 2011.9.21일에 기성이 있어 일부 선금 정산을 하고 기성금을 82,03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구간에 수해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11.11.5일 계약금액이 2,3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선금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지급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3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조제2항 각 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동조제 3항에 따라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



## 4. 선금지급보증서 미제출시 선금잔액 공제

인터넷 질의 2011. 10. 20

### ■ 질 의

폐사는 하청 시공받아 공사중인 업체입니다. 선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않고 각공종별로 선급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현시점 공정율(40% 진행된상태) 현재까지 기성율로 선급금을 공제하였으나 2월 · 3월 기성금을 확인한 후 선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급금 잔액 전액을 일시에 공제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저희 업체에선 선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2월분, 3월분 기성을 확정후 선급금 잔액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여준다 하였으나 저희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함. 법적으로 공사진행중 선급금을 전액공제가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 있어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금의 정산은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준공대가 지급시까지는 모두 정산되어야 함.

## 5. 선금급 반환

법무지원팀-665, 2007. 02. 15

### ■ 질 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06.2.13)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속적인 민원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중지(‘06.7.14)와 선금급 반환요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민원에 의한 공사중지)가 발생하였을 때
  - 공사중지 기간에도 선금급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고이월시에도 선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하도업체에 이미 지급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현재 하도급업체가 일시불 반환능력이 불가할 경우 선금이행증권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기간이라도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고 선금지급액을 당해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증명된 경우라면 선금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됨

## 6. 선금잔액 반환에 대한 약정이자 적용이율

회계제도과-1888, 2009.11.19

### ■ 질 의

#### <질의 1>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산출시 적용이율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2항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제5항의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사유발생시점이 동일시점을 의미하는지?

#### <질의 2>

동일시점을 의미한다면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산출시 적용이율은 채권확보시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산출 이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채권확보시 한국은행통계월보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는지?

#### <질의 3>

동일시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산출시 이율(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적용시점은?

###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반환의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약정이자상당액이란 동 예규 제34조제2항의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5항의 약정이자상당액과 동일한 의미(적용이율 및 사유발생시점 등)임

## 7. 선금정산 가능여부(1)

인터넷 질의 2011. 02. 07

### ■ 질 의

당 현장은 장기계속비 공사현장으로 2011.01.10에 2차공사 계약을 체결, 선금은 1.20에 청구하여 1.27에 수령예정. 예를 들어 3월에 기성청구시에 선금을 정산할 경우 1월에 들어온 자재에 대해서 선금 정산이 가능한지 발주처는 선금청구가 1.20에 청구를 하였으니 1월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선금정산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 ■ 회 신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조제2항에 의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발주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지연되어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인건비 지급이나, 자재확보 사실 등이 증명된 경우라면 사후에 지급된 선금으로 동 비용의 충당이 가능하다고 봄.

## 8. 선금정산 가능여부(2)

인터넷 질의 2011. 02. 21

### ■ 질 의

- 계약기간 : '10. 5.18.~'10.12.15.
- 진행사항
  - 가. '10. 5.25. : 업체요청 의해 선금금(2억원) 지급
  - 나. '10.12.15. : 납기내 납품 지연
  - 다. '10.12.29. : 사고이월로 인한 선금 및 이자 반환 요청  
(해군 업체)
  - 라. '10.12.30. : 업체 자금사정으로 인해 선금 반환 불가 통보 '11.1.7.까지 해당 사안 처리 약속 및 업체 귀책사유로 발생 하는 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함
  - 마. '11. 1.27. : 최종 검수 통과, 납품 완료 납기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및 미반환된 선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여부에 대한 질의

### ■ 회 신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등) 제34조 규정에 의거 채권확보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제출하게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과 그 잔액에 대한 동 규정에 의한 약정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반환청구는 동 기준 제37조 각항에 따르는 것임.

## 대가지급

### 1. 연간단가물품의 납품('04)후 대금청구('06) 가능여부

법무지원팀-3467, 2006. 10. 20

#### ■ 질 의

☆☆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에 납품하는 물품을 납기내에 납품(인수증과 성적서로 검사, 검수가 이루어짐) 하였으나 당해년도('04.) 대가지급 청구 누락분을 '06년도에 청구해도 되는지

#### ■ 회 신

국가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동 예규 제22조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납품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한 경우라면 대가지급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2. 다수물품을 동시에 매각하는 입찰에서 낙찰물품의 대금납부 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65, '08. 11. 18

### ■ 질 의

강제 집행되는 물품의 공매를 대행하는 “○○공단 유통사업단”의 전자입찰 입찰자 유의사항 및 동의서약에 공매번호단위로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낙찰자의 결정도 공매번호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낙찰자의 계약이행사항에는 공고에 서정한 기일 내에 낙찰금액 전액을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위 발주처의 입찰에 단위 공매번호 6개에 응찰하여 낙찰이 되지 아니한 2건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았고, 낙찰된 4건의 입찰보증금을 뺀 나머지 잔금 중 준비가 된 2건만이라도 계약하고자 해당금액을 납부하겠다고 발주처에 통보하고 송금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의 전산시스템이 낙찰된 품목 모두의 잔금을 납부해야만 처리되는 일괄납부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어 기일 내에 송금을 못하자 4건의 낙찰취소의 결정과 함께 부정당업자제재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당초에 낙찰된 4건중 2건에 대하여 잔금입금 권리가 회복되어 물건을 출고할 수 없는지?

### ■ 회 신

세입의 원인이 되는 다수의 물품을 동시에 매각하는 입찰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물품별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물품별로 응찰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낙찰자 선정,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다수의 물품 중 낙찰된 물품대가의 선납,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여부 등도 동일한 방식인 각 물품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의 선정, 다수의 물품 중 낙찰된 물품대가의 선납과 입찰보증금의 귀속여부 등은 해당 입찰공고내용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3. 선감리의 기성대가 지급

규제개혁법무담당관-1608, '08. 07. 04

#### ■ 질 의

○○하천정화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전체분 중 4차분(2008년도) 계약을 발주처와 구두 협의하여 1월부터 감리를 투입하였고, 2월초에 감리발주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서류접수가 지연되어 접수일 이전 선감리 이행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차수별로 체결한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0조에 따라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차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용역이행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감리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라 수행하였다면 선감리의 기성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선감리가 해당 차수계약에서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면 해당 차수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기성대가를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4. 우선시공물량에 대한 기성신청 가능여부

한석영월 제05-052호, 2005. 03. 15

#### ■ 질 의

당초 일반발파공법(크롤라드립)으로 설계된 구간이 보안물건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어발파공법으로 변경실시토록 승인되어 현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발파공법으로 암을 절취 시행중 시공물량에 대해 기성청구를 하였는바, 이 경우 신규공종에 대한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현재 계약된 일반발파단가로 기성을 받고 추후 설계변경시 제어발파단가(신규단가)로 변경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전에 우선시공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코자 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액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당초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추후에 설계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첨부하여 개산급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개산급신청사유 및 개산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 계약이행상황,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개산급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5.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무지원팀-3241, 2007. 08. 09

## ■ 질 의

대안입찰공사계약에 있어 원안부분의 계약이행중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면, 수량, 단가, 금액 등은 승인을 얻었으나 변경계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부서의 사전시공 승인으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공 완료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회 신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제5항에 따라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9조의2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우선 시공하게 한 경우로서 도면, 수량, 단가 등을 계약내용으로 확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한 경우라면 동 예규 제39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단가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동 예규 제39조의2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6. BTL사업 공사 기성금 지급

법무지원팀-3956, 2006. 11. 30

## ■ 질 의

BTL사업 공사감리자로서 기성검사 요청을 받아 기성검사 중 계약내역서와 규격이 다른 수량 증감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당 BTL사업 공사 시공사의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령인 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등 민간투자사업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에 소요될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하며 그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설계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한 시공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관련

법무심사팀-259, 2005. 01. 10

### ■ 질 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A사의 부도로 인해 잔여공사를 잔존구성원인 「사가 전부 시공완료 했으나 발주처는 B사에게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B사가 실제 시공한 내용대로 기성대가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 ■ 회 신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출자비율을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는 것이나, 구성원 중 일부가 동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한 경우로서 잔존 구성원이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운용요령에 의한 출자비율의 변경이나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라면 잔여공사의 기성대가는 잔존 구성원의 변경된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이행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기성대가 지급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계약이행상황, 동 예규에 의한 출자비율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 8. 공사타절시 이자보상에 대한 유권해석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2829('06.12.19)

### ■ 질 의

공사시공중 발주자의 사유(부지 미확보로 인한 건축허가 미필)로 공사중지가 약 20개월 정도 되었다가 공사재개로 재착공 후 시공을 하다가 시공자의 사유(압류, 가압류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인 사정)로 공사타절(타절기성:161백만원)을 하고 연대보증시공조치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따라 발주처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 ①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정지된 시점 이후의 잔여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타절준공시 계약자가 실제 시공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② 잔여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약자에게만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시공한 금액비율대로 연대보증인과 안분하여 지급하는지
- ③ 타절준공시 계약자가 실제 시공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 ④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전체공사 완성 후 준공대가 지급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타절준공시 계약자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중에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고 그 후 공사가 재개되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도중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공사타절하고 연대보증사가 전체공사를 완료한 경우에 상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전체공사에 대한 준공대가 지급시에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봄.

## 제4절 보증시공 및 하자관리

### 보증시공

#### 1. 무하자확인서 발급 가능여부(보증기관 변경 관련)

법무심사팀-604, 2005. 02. 24

#### ■ 질 의

회사 사정으로 토목공사업면허를 반납함에 있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하자보증서를 하자보증잔여기간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제출코자 발주기관에 무하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있는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 무하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발생이 없음을 증명하는 “무하자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동 확인서를 발급할지의 여부는 하자검사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 동 확인서의 용도,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계약법규에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일정기간 경과된 부분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은 “무하자확인서”를 발급토록 규정한 내용이 없음.

## 2. 시공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책임과 보수비 청구

법무지원팀-271, 2007. 01. 22

### ■ 질 의

폐사는 ○○시와 A건설회사가 도급계약하여 2004.7.6~2005.4.14까지 시공한 “○○초등학교증축공사”의 연대보증 회사입니다. A건설회사는 공사 준공 후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고 부도가 발생하여 폐사가 하자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1) A회사의 하자보증 기관이 아닌 연대보증을 한 폐사가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폐사가 하자보수를 한다면 A회사의 하자보증을 한 보증기관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 포함)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 또는 보증서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보수보증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발주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기관에 동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민법 및 보증서약관등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임.

### 3.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법무지원팀-4819, 2007. 12. 03

#### ■ 질 의

1. 계약상대자가 타 사업장에서 건설업등록증 대여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약된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차후 전문공종에 대한 전문업체와 정상적인 하도급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가능여부와 지급보증서 기 발행받은 후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지급보증서 유효 여부?
3.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공사를 준공한 경우 하자보수이행증권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규정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련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가능 여부와 발급된 보증서의 효력은 보증서 발급기관의 자체규정 및 해당 보증서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동 일반조건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야 함.

## 하자보증금

### 1. 장기계속공사에서 기성부분 인수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여부

법무지원팀-4345, 2006-12-28

#### ■ 질 의

장기공사계약에서 1차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예정이었으나 추가공사로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였고, 2차공사는 공기연장예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시정지 지시로 준공이 유보된 상태인 경우에

##### <질의 1>

당초 준공시점의 1차, 2차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인수할 수 있는지.

##### <질의 2>

1, 2차공사를 발주처에서 인수하였을 경우 해당 인수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서로 하자보수보증 이행이 가능한지

#### ■ 회 신

장기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예규 제3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수할 수 있으나, 전체 목적물이 아닌 일부분의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라면 그 인수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보증을 위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납부는 할 수 없는 것임.



## 2.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인터넷 질의 2011. 03. 16

### ■ 질 의

2010년 자동문 설치 납품이 완료된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설치업체의 문제로 하자보수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에 관하여

-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13년)까지 동 자동문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해주는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현재 하자만 보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고귀속하여야 하는지
- 첫째 방식의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을 위한 계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제2항에 의거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거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 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 3. 현금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인터넷 질의 2011. 09. 22

### ■ 질 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공사계약에 있어 기 현금납부한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및 보관이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의해 보관이자를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 이자율 계산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보증금은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에 의하여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예금으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동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납부자별로 계산·관리 및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4. 하자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으로 동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법무지원팀-3964, 2006. 11. 30

## ■ 질 의

개인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상대자에게 건축자재와 생산시설을 설치 납품을 완공하였으나 동 계약상대자의 파산으로 납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으로 발주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금에 대하여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반환청구를 하자, 발주기관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다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증기간 동안 보증서를 제출하고 동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 및 법원의 판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임.

## 하자처리

### 1. 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수책임 해당여부

법무지원팀-2756, 2007. 08. 16

#### ■ 질 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계약의 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어 공사의 주요공종인 쓰레기층, 부직포, 고밀도폴리에틸렌 차수막, 부직포, 식생층, 씨드 스프레이 순으로 설계되어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였으나, 금년 7월 폭우로 인하여 평지부와 법면부 경계부분의 식생층(600mm, 약 2,000㎡) 토사가 흘러내리자 발주처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해왔으나 폭우 및 설계서의 공법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하자보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사 흘러내림을 예측하지 못한 시공사의 설계서 검토에 대한 책임한계는?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동 예규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시공상의 하자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이행상황(시공상의 잘못 포함) 및 설계서 등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하자책임의 범위

법무지원팀-5134, 2007. 12. 26

### ■ 질 의

“□□아파트 건설공사 △공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토건공사 : A사, 소방공사 : B사)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B사와 그 연대보증사(b)에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조치한 후 B사와 동 연대보증사(b)에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토건공사 연대보증인(a)에게도 청구 하였는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책임을 토건공사 연대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 ■ 회 신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방식) 제14조에 의거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책임을 토건공사 연대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3. ○○대로 현수교 케이블밴드 안전성에 대한 하자관련 질의

법무지원팀-1590, 2005. 11. 08

### ■ 질 의

○○대로 준공당시 케이블밴드의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3.0이상으로 체결되어 ○○대로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나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상 확인한 결과 안전율 3.0미만의 밴드가 확인되었음.

시공사에서는 준공당시 ○○대로 설계치인 안전율 3.0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현 시점상의 안전율 저하에 대하여는 현수교 특성상 자연적응력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하자사항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 하자가 없는 것인지?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동안 동 예규 제33조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사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이거나 계약목적물의 일상관리를 위한 점검보수 등은 하자보수책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문서, 준공서류, 시공내역 등을 검토하여 시공상의 잘못이 있는지 등 당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시공상의 잘못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규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검사결과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임.

## 4. 복합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을 위한 공종분류에 대하여

법무지원팀-1769, 2005. 11. 22

## ■ 질 의

토목 및 조경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종으로 발주한 “○○천 정비사업” 공사계약에 있어 동 공사에 포함된 교량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종구분을 교량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공원시설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공종구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당해 공사의 특성, 공종간의 하자책임구분가능성 여부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5. 실시설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운영효율 저하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662, 2007. 06. 15

### ■ 질 의

발주기관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시공입찰방식으로 체결한 정수장공사에서 입찰시 농축조 상징수는 전량 회수가 가능토록 무방류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나, 환경부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침전지슬러지 농축조 상징수에 대한 재이용을 금지하여 발주기관 지시에 의하여 방류시스템으로 설계변경하여 준공완료한 경우로서 준공후 정수장 운영과정에 부상하는 슬러지로 인하여 농축조 운영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어느 것이 타당한지?

#### - 발주기관 입장

상기공사는 실시설계시공입찰 방식으로 시행된 공사이고 농축조 운영효율 저하에 따른 사항은 하자사항에 해당하므로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추가공사를 처리하여야 한다.

#### - 계약상대자 입장

상기공사는 수처리공법을 발주처에서 지정하였고 무방류시스템에서 방류시스템으로 변경도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변경한 것으로 설계변경당시에는 슬러지 부상으로 인해 농축조 운영효율 저하가 발생할지는 발주처나 시공사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추가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 회 신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농축조 운영효율 저하의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발주처의 변경된 설계방법에서 비롯된 설계의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

## 6. 건설업양도시 양도자가 계속 시공할 수 있는지

법무41301-55549, 2004. 07. 01

### ■ 질 의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업체로서 당초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업체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공고된 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입찰, 낙찰되어 계약체결후 현재 시공중에 있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전기공사업 및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타법인(Y)에게 양도한 경우 당사가 단독으로 계속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및 아니면 당사로부터 전기공사업 및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양수받은 Y법인과 공동시공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등록 등 시공자격을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이행 중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여러 공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양도된 공사업에 해당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없으며, 동 공사업을 양수한 자가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업 양도에 대한 동의를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7.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하자보수책임여부

법무지원팀-3856, 2007. 09. 19

### ■ 질 의

“○○건물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한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한 부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면 그 기한은?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는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경우 동 보수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가 당초 약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봄.

## 제5절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 계약기간 연장

#### 1. 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법무지원팀-1116, 2005. 09. 29

## ■ 질 의

- 1 :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 2 : 공사기간에 우천을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이 가능한지
- 3 : 공사기간에 휴일을 제외한다면 실제 공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4 : 동바리 존치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산정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근거자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 ■ 회 신

####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의 정의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계약기간은 당초 공고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는 것인 바, 이러한 계약기간의 산정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우천 등의 상황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계약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 바, 통상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중의 휴일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산정함이 일반적일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기간 100일 중 휴일을 제외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100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계약기간의 산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연장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이 관련 규정, 공사목적물의 특성, 계약상대자의 책임유무 및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해야 할 사항임.

## 2. 계약기간과 절대공기와의 동일여부 및 공휴일의 합산여부, 강우일수 전체의 공기연장 가능여부

법무지원팀-3266, 2006. 09. 29

### ■ 질 의

#### <질의 1>

입찰공고서에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70일로 명시하고 계약일인 2006.3.14.로부터 실제공사일수 270일을 합산한 2006.12.08.을 준공일자로 명시한 것이 절대공기를 의미하는지?

#### <질의 2>

실제공사일수에 공휴일과 일요일의 포함여부?

#### <질의 3>

강우로 인한 공사중단시 강우일수 전체를 공사기간 연장으로 산정 가능한지?

## ■ 회 신

### 1. 귀 질의 1,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란 계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계약기간에는 공휴일 및 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절대공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

### 2. 귀 질의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및 연장기간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특성 및 현장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3. 계약체결 후 입찰공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위법 여부

법무심사팀-525, 2005. 05. 26

## ■ 질 의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입찰공고상의 자판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변경 계약하는 것은 기존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고 입찰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조건 변경내용이 입찰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점을 감안할 때 불공정한 것으로서 위법 여부

## ■ 회 신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여 입찰공고 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이후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계약기간 포함)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초 체결한 계약내용을 변경할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4. 집단민원 · 인허가의 지연과 발주처의 책임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176 ( '11.05.03)

##### ■ 질 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계약상대자는 제25조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서 발주자의 책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 1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발주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건립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집단민원으로 공사 착수지연 및 공사방해로 중단된 경우 집단민원이 발주자의 책임인지 여부?  
 질의 3 : 발주자가 허가를 득하는 조건일 경우 허가승인기관에서 집단민원 미해결 사유로 허가 불허 또는 반려하여 허가가 지연된 경우 인허가 지연이 발주자의 책임인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함께 제26조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모두 발주처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발주처에 제기한 민원이 원인이 되어 착공이나 시공이 지연된 경우 및 발주처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여 지연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체상금

### 1. 지체일수 산입 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419, '08. 10. 29

#### ■ 질 의

##### 국가기관과 기자재제작구매설치에 대하여 계속비로 계약

계약조건에는 성능검사가 포함되어, 계약기간까지 성능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중인 상태에서 성능검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해수 공급펌프의 고장으로 성능검사가 중단되었음.

\* 성능검사는 발주자가 해수를 공급하여야 검사가능

경우, 지체중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해수 공급펌프의 고장으로 인해 해수공급중단)로 인해 성능시험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고장일부터 성능시험일까지)을 지체일수의 포함여부

#### ■ 회 신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이미 이행지체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추가 지체되었더라도 지체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이행지체 중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 지체상금 산정에 관하여(분할 납품)

법무지원팀-647, 2005. 08. 30

### ■ 질 의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물품인 압력트랜스미터 90개 중 84개는 납기내에 납품하였으나 6개는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납기후에 납품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계약수량 전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 ■ 회 신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현행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전체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납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 조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은 면제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성질상 분할 가능한 완성품에 해당되는지 및 인수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의 특성, 검사를 거쳐 인수(관리·사용 포함)하였는지의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3. 지체상금 부과 타당성 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66, '08. 10. 24

#### ■ 질 의

- 하천공사현장의 일부 편입용지가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착공하고, 공사편입부지가 실준공일까지 수용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초 준공예정일에 공사를 준공할 수 없었으며, 변경계약시 준공예정일을 조정하고 2008년 동절기에도 공사중지를 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였으나 지체상금 부과 현 장이라 하여 혹한기 시공을 강요하였음. 이 또한 발주처의 귀책사유인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예규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 불가항력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인지 및 해당일수에 대한 산정 등은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및 지체원인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4. 지체상금 관련 질의(민원 발생 등)

법무지원팀-126, 2006. 01. 04

### ■ 질 의

#### <질의 1>

고등학교 신축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진입로 혼잡 등 사유로 마을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자재반입을 할 수 없어 공정이 지연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2>

준공기한이 2005.12.10이나 준공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관급자재 레미콘에 대하여 2005.12. 01에 배정을 받았으나 한파로 인하여 물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사중지를 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3>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 물 공사를 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한지

#### <질의 4>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장에 토사반입을 할 수 없어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5>

건축·토목·조경공사는 준공기한이 2005.12.10이나, 전기, 통신, 설비공사는 준공기한이 2006. 2월인 바, 건축·조경부분은 준공기한 내에 완료되었으나, 토목 부분은 민원발생, 화물연대 파업, 한파로 인한 공사중지, 전기·설비공사 잔여작업의 간섭 등으로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 공사가 완료된 건축·조경 부분에 대하여 완성부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회 신

#### 1.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26조에 의거 수정공정표

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비산 먼지, 소음진동, 진입로 혼잡 등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민원인지의 여부 등 그 발생사유 및 책임의 귀속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 2.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또는 동 예규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의 배정 등 사항과 당시의 기상상태(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악천후인지의 여부 등)등의 요소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또한, 지체상금의 면제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내(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서는 차수별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제3항제3호에 의거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면 준공기한 이후의 지체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되는 동안에 동 일반조건 제32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라면 당해 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3. 질의 4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은 동 예규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시의 화물연대 파업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4. 질의 5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동 예규 제25조제2항 단서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물량 중 지체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관리·사용포함)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지체부분과 외관 및 기능상 독립되고 하자구분이 가능한 정도의 완성부분이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그 해당여부 및 지체상금의 면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공사목적물의 특성, 인수 및 계약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5.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부분인수)

법무심사팀-597, 2005. 05. 27

##### ■ 질 의

800KW 1기와 200KW 1기에 대하여 소수력 발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완성되어 사용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800KW 1기는 합격하였으나 200KW 1기는 불합격되어 보완 후 재검사토록 조치된 바, 현재 합격된 800KW 1기는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상금의 산정은?

갑설 : 200KW 발전기 합격시까지 공사도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

을설 : 200KW 발전기 부분만 지체상금을 부과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조제2항에 의하여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써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등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 물량 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상관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 포함)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성질상 분할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6.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질의(부분준공)

법무지원팀-37, 2005. 07. 15

### ■ 질 의

○○공사를 수주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공사의 마지막 일부분(총 길이 1.5Km 중 132m)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시공을 한 결과 당초 계약기간보다 3개월을 초과하여 준공처리 되었으며, 재시공한 132m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를 받고 도로포장까지 완료하여 차량소통등에 사용되는 경우 발주처가 인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성부분을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의 지체상금 계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기성 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판단 및 지체상금 계산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및 발주처가 인수 사용함으로써 계약목적의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 7.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1)

법무지원팀-1264, 2005. 10. 14

### ■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A, B, C, D, E 5개동으로 독립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에서 4개동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1개동이 미시공 되었을 경우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 조제1항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 조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8.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2)

법무지원팀-1304, 2005. 10. 19

### ■ 질 의

○○오수 처리 시설물을 설계도서대로 공사 완료 후 수질검사 사용검사 전에 발주기관에서 오수처리시설물 사용을 하였고, 준공예정일 전에 사용 중인 오수처리시설물에 대하여 관할 군청에서 방류 수질검사를 실시 현행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아 준공예정일 전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급 받은 이후 개선기간(준공예정일 이후)내에 시공 보완하여 준공 예정일 보다 100일 지연되어 준공필증을 교부하여 준공되었음. 또한 유입량이 당초 설계기준치보다 많아 준공검사시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명령을 받았음.

#### <질의 1>

보안시공 중 오수처리 개선과정에서 시설물(오수처리 개선을 위하여 방류 사용됨) 시정조치 공사기간에 소요된 추가공사비 정산여부

#### <질의 2>

시정조치의 지체된 일수만큼의 제체상금 부과여부

### ■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동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설계서대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시정조치 받은 경우 동 시정조치에 따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서, 시정조치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하여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일수 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5항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바, 준공기간 이후에 동 일반조건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관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을 지체일수

에 포함하며,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의 산정은 사실관계의 발생내용 및 검사결과, 당해 계약조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제6절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 계약해제·해지

#### 1.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법무지원팀-4639, 2006. 12. 29

#### ■ 질 의

착공 및 착수를 하였으나 종합쓰레기장을 건립한다는 민원인의 반대로 현재까지 용지보상 지연으로 재착공이 불가능하여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발주청은 민원인의 용지보상 반대 및 예산회계법을 근거로 공사해지를 요청하는 바, 귀청의 의견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부분이나 완성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 등은 동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2. 공사수행 파기에 의한 공사비 정산

법무지원팀-1534, 2005. 11. 03

### ■ 질 의

계약(2005.3)후 발주처의 문제에 의해 공사가 파기될 상황으로서 이 경우 공사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지, 투입비용만의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공사계약금액과 유사한 타 공사로 대체하여 받을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부분이나 완성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 등은 동 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경우라면 타 공사로의 대체는 곤란한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부정당업자 제재

### 1.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법무지원팀-3670, 2006.11.09

#### ■ 질 의

##### <현황>

당사는 2006.8.14. 이전에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서류가 허위라는 가치분 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당사는 2006.8.15. 이후에 법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 및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질의>

※당사가 입찰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전제로 질의합니다.

2006.8.14. 이전에 입찰과 관련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는 광복61주년 경축 특별조치 대상이라 할 것인데, 2006.8.15.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대하여 제출한 서류(허위가 아니라는 주장 및 서류)가 허위라 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가지고 별도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제1항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허위서류 제출”의 대상 및 범위는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당해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법원에 증거서류로서 제출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2. 물품구매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1항2호의 적용 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559 ( '11.02.01)

### ■ 질 의

물품구매계약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2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 중 물품제조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 하도급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품제조계약이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가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 입찰공고내용, 계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3.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가능 여부

법무지원팀-990, 2005. 09. 23

### ■ 질 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용역 완성 후 검사에 합격하여 대가지급까지 하였으나, 동 설계용역에 의해 작성된 설계서에 의해 수행중인 공사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사항이 일부 확인된 경우

질의 1 : 이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질의 2 : 이 건 용역계약은 조달청이 계약하였는바,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조달청과 수요기관 중 어느 곳에서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 대가지급은 완료되었으나 사후에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있다면 지체일수 산정 방법은



## ■ 회 신

### 1. 질의 1에 대하여 :

설계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하게 한 자에 대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제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이 부실·조잡의 정도, 계약이행 및 검사과정에서 부실이행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의 여부, 지체 없이 제한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정황, 경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2. 질의 2에 대하여 :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업무를 집행한 입찰실시기관 또는 계약의 당사자인 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을 받아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당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의 처분청은 당해 입찰실시 및 계약의 당사자인 조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 3. 질의 3에 대하여 :

설계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현행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하는 것이며, 지체상금의 산정은 동 조 제5항제2호에 의하여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입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의 산정은 사실관계의 발생내용 및 검사결과, 당해 계약조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4.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인터넷 질의 2011. 09. 22

##### ■ 질 의

수의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당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방법 및 제재방법은

##### ■ 회 신

수의계약에 있어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임.

#### 5. 공동도급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질의(하도급 위반)

법무심사팀-740, 2005. 03. 02

##### ■ 질 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계약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제재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 ■ 회 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였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동조제3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한 자에 대하여 재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하도급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6. 뇌물 공여시 부정당업자 제재 승계여부

법무지원팀-440, 2005. 08. 18

### ■ 질 의

방산물자 생산업체 A사는 관련공무원에게 뇌물공여로 인하여 부정당업자제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5.01.20 B사에 A사의 도소매 및 제반사항을 양도하고 (B)라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A사와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토록 하였으며, 그 후 A사는 2005.6.11자로 2년간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었는바,

#### <질의 1>

A, 「회사를 겸임하는 신규대표 (B)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 B사의 명의로 국가를 상대로 A사가 생산하던 물품에 대하여 입찰참가 및 자재의 납품 등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2>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 하도계약의 형태로 A사가 생산하던 물품에 대하여 B사가 참여 가능한지 여부

#### <질의 3>

A사가 생산하던 방산물자를 B사가 국가를 상대로 입찰의 참가 및 자재의 납품 등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계약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기타 사용인 포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또한,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법인(또는 개인)

이 제재처분 이전(또는 이후)에 보유한 면허·등록 등의 일부 업종을 다른 법인(또는 개인)에게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그 이후 양도법인(또는 개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이 양수법인(또는 개인)에 승계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장이 상호,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정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법인(또는 개인)과 양수법인(또는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양도법인(또는 개인)의 제재기간 동안에는 양수법인(또는 개인)이 양수받은 일부 업종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은 동조 제7항 및 제10항에 의거 입찰참가 또는 수의계약체결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는 자라도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하게 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당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등 능력이 있는가를 적의 판단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7. 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각자대표법인에 대한 효력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43('07.01.09)

### ■ 질 의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계약불이행으로 당해 조합과 조합의 대표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 조합의 대표자가 각자대표자로 있는 기업(법인)이 다른 각자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그 기업(법인)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의하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재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조합과 조합의 대표자 및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타법인의 단독대표자인 경우 동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로 인하여 결국 타법인에게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가 각자 대표자로 수인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가 아닌 각자 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타법인에게는 부정당업자제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제4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절 조정기준

제2절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3절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4절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제4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제1절 조정기준

#### 1. 계약금액 조정가능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84, 2008.05.29

#### ■ 질 의

수입물자계약에서 계약 이행중 환율이 지난해말 대비 20%이상(유러화 기준) 인상되어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하여야 하되, 물품 및 용역의 특정조달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0조에 따라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환율변동 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물가변동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이 발생되었거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

## 2.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에 관한 질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74, 2008.11.19

### ■ 질 의

발주청이 감리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단위를 인·월로 하고 1인·월의 단가를 월당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설계와 예정공정표에 준하여 인·월 단위의 산출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계약을 한 후, 국경일로 인한 실근무일의 여하에 불구하고 1개월의 감리기간이 경과되면 1인·월의 대가를 지급하고, 물가변동(노임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도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문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감리용역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실제 감리원이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용역공정예정표를 토대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3. 설계용역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2464, 2007.06.19

#### ■ 질 의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책임·자문감리용역계약 등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나 공사비 효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사업 등은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바,

공사비 효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기술자 노무비 상승률이나 건설공사비 지수에 의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바,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4.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708, 2008-07-04

### ■ 질 의

1.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조정율로 정하고, 본 계약수량 전체를 2008. 02. 24 납품요구(납품기한 : 2008.05.15) 하였음
  2. 이후, 계약상대자는 철강재 등 원자재가 급등함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가 지급이전에 원자재 폭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한 것이므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3항에 의거 당연히 계약금액 조정을 해 주어야하며, 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품을 할수 없다고 하고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
- 가. 동일한 물품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일 이후일지라도 납품대가 지급전에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면 소급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단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일 이전에 납품요구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한지 여부 ?
- 나.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90일전에 단가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납품요구일 이후 물가 변동분은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정한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량의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간단가계약방식으로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 할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5.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인터넷 질의 2011. 06.10

### ■ 질 의

“□□모델개발 및 시스템 통합”용역의 수행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표한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등락율 산정산식에 적용할 물가변동당시가격의 기술료는 발주처가 입찰공고 시 게시한 용역 설계서상의 (인건비+제 경비)×20%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제 경비)×11%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 ■ 회 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기술료는 (인건비+제 경비)×20%를 적용하여 등락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6.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48, 2008.11.12

### ■ 질 의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 제작장 건설 후 자재(PC BOX)를 현지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인도조건은 현장상차도(납품)로 2007.11.16자 PC BOX 공급지시에 의한 계약자재(암거)의 생산, 납품을 진행 중인 상태이며, 제품생산 시점인 2007.11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물가변동 대상수량에 대한 이견이 발생된 상태로 조정기준일(2008.06.01)이전 생산은 하였으나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한 제품납품이 이루어지지 못한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를 질의

## ■ 회 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정한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량의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 할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납품하도록 예정되었던 물량이 발주기관의 납품유보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납품기한이 연장됨으로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하게 되었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의거 납품이 지연된 물량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함.

## 7.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87, 2008.10.02

## ■ 질 의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인 품목조정율을 현지역건을 고려하여 지수 조정율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 회 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였다면 추후에 편의적으로 조정방식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8.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2738, 2006-08-21

### ■ 질 의

#### 〈질의 1〉

계약서에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 당초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자재 가격변동 상황, 가격급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곤란성 여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소급적용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436('08.5.26)

### ■ 질 의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기준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였고, 1차 및 2차 계약금액 조정을 동시에 요구한 경우(선금은 지급하고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음)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날 이전에 이미 이행되어야 할 부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1차 및 2차 조정)을 해 주는지?

### ■ 회 신

물품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정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 조정을 또는 지수 조정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함.



## 10. 물품납품계약에 대한 적용대가 산정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53, 2008.08.19

### ■ 질 의

케이블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이행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

1.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시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2. 발주처의 납품 요청없이, 계약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계, 생산,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요건(계약을 체결한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량의 금액을 의미하며,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로 적용대가를 산정하며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조개시 전에 제출된 제조공정표에 의하여 적용대가 산출이 가능한 것인지,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 되었는지는 제출된 계약문서, 계약조건, 납품요구서,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11. 구매계약의 경우 조정기준일 및 적용대가 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1889, 2008.07.21

### 질 의

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하는 경우로서

1.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조정율이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 “증감된 때” 는 물가변동이 최초 도달 시점인지?, 3%만 넘으면 계약상대자가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 한지?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은 총 계약금액 중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완료 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지?
  - 2-1. 총 계약금액 중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완료 되어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조기수행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 되었다면 이 또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 2-2. 기성대가에 따른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있어 기성대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성대가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성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고, 기성대가 지급 신청 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성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는지?

### 회 신

국가가기관이 체결한 구매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 12. 물가변동 산출내역서 비목군 분류시 기준 내역

법무지원팀-3971, 2006.12.01

### ■ 질 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공종에서 설계내역 단가구성은 노무비 또는 재료비 단일 항목으로, 계약내역의 단가구성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항목이 혼용되어 있어 물가변동의 기초자료인 비목군 분류에 혼동을 초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의 적용에 있어 당해비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다음 어느 설을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계약내역단가구성에 따라 물가변동내역의 비목군을 분류함

을설) 입찰시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의 단가구성을 설계서와 같게 작성할 수 없고, 계약내역의 단가구성에 따라 물가변동 내역의 비목군 분류시 당해 비목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내역의 합계단가를 설계내역의 비목구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비목군을 분류함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제1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산출내역서 만으로는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비목군의 분류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 1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및 물가변동 신청기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385, 2008.06.20

#### ■ 질 의

발주기관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환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기관 및 절차는?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가능한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유로화의 환율 인상만으로는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청구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4.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일이란?

법무지원팀-2310, 2007.06.08

#### ■ 질 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최초조정기준일(산정시점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인지 아니면 수의시담으로 계약단가가 결정된 날인지에 대한 질의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을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수의계약의 경우라면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하는 것임.

## 15.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방법

법무지원팀-541, 2007.02.07

### ■ 질 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연장을 하면서 수정공정예정표를 작성하지 않고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로서 물가변동조정기준일에 5%의 등락폭이 발생한 경우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 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출방법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구간 내 용지보상 지연 및 차선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일정 미정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이행이 지연된 물량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을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

체적인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당해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 및 공사이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 1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법무지원팀-4757, 2007-11-28

### ■ 질 의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변경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조치하시고 변경된 공정예정표에 의거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체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

법무지원팀-3063, 2007.07.27

### ■ 질 의

장기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지체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정산은 별도의 협의 없이 각 차수별 준공을 한 후 최종차수 준공시점에 일괄하여 동 계약 단가로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의 반영여부에 대한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시점은 설계변경 당시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ESC 정산시 이미 준공된 차수물량은 제외된다.

을설) 전체공사 준공되기 이전에 일괄정산을 해도 된다.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9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8. 물품구매계약에서 공사중지기간에 대한 물가변동 반영여부

법무지원팀-3070, 2006.09.15

### ■ 질 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후 설치공사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지시하여 공기가 6개월이상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등

#### <질의 1>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경과되어 공기연장이 될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질의 2>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방법은?

#### <질의 3>

물가변동조정 산정기준일은 설계예산서 작성기준일인지, 계약체결일인지?

#### <질의 4>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 없는 불변확정금액이거나 발주처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의 대가 지급방법은?

### ■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기간요건 및 조정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조정기준일)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기간요건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중지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을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시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 결정된 조정을 산출방식은 계약이행도중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의 요건은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9.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법무지원팀-3029, 2007.07.26

###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 어느 공정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 ㉠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율 : 5%
- ㉡ 기성수량을 +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공정율 : 6%
- ㉢ 발주처에 제출한 월간공정보고서의 실행공정율 : 7%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6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나,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공중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거나 앞서 시공한 경우에도 실적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20.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2995, 2007.07.25

### ■ 질 의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을 설계변경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21. 여러차례 물가 상승분을 한번에 걸쳐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지원팀-2297, 2007.06.07

### ■ 질 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본 계약서 특수조건 제16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1차, 2차 및 3차에 걸쳐 증액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에서 3차까지 순차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점의 지수와 최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점인 3차시점의 지수를 비교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기간요건 및 조정률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2회이상의 계약금액조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 조정후 2차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 22. 물가변동조정신청 후 지급받은 기성대가 공제여부

법무지원팀-1786, 2007.05.01

### ■ 질 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개산급(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으로 청구하였으며, 동 기성대가가 지급되기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한 경우에는 동 기성대가 부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산출시 포함되는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을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

## 23.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차수준공대가 공제여부

법무지원팀-3374, 2006.10.13

### ■ 질 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수행에 있어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 차수준공 이전에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적용대가 산출시 조정기준일 이후 차수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의 공제여부

### ■ 회 신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이며, 동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는 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 또는 지

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을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

## 24.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174, 2007.01.12

### ■ 질 의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이라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 제2절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1. 건설기계의 기계경비지수 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790, 2008.03.25

#### ■ 질 의

2007.4.10 개정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부칙 제2항(건설기계  
에 대한 시간당손료 관련 적용례)에는 “제67조와 제68조제3호가목 및 제70조제5  
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1월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입찰공고일이 2007.01.01 이전이고,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  
2007.01.01 이후인 공사에 대한 건설기계 시간당손료지수 적용방법 등의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 ■ 회 신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07.4.10) 부칙 제3조제2항에서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기계경비지수로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68조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  
01.01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01.01 전에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서 기계경비지수는 종전의 규정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2. 건설기계경비 물가변동 조정업무

인터넷 질의, 기획재정부-790(2008.3.25)

#### ■ 질 의

2007.4.10 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부칙 제2항(건설기계  
에 대한 시간당손료 관련 적용례)에는 “제67조와 제68조제3호'가'목 및 제70조제5  
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입찰공고일이 2007.01.01 이전이고,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  
2007.01.01 이후인 공사에 대한 건설기계 시간당손료지수 적용방법 등의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 ■ 회 신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07.4.10) 부칙 제3조제2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지수조정을 산출시에 기계경비지수로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68조제3호‘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 01. 01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 01. 01 전에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서 기계경비지수는 종전의 규정(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3. 공사손해보험료의 물가변동대가 적용여부

법무지원팀-495, 2007.02.06

## ■ 질 의

공사손해보험료 항목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갑설과 을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가요

### (갑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조정율(K)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에 따라 산출하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임의로 특정품목(비목)을 제외할 수 없으므로 공사손해보험료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 (을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에 따라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공사착공전에 그 이행이 완료된 것이므로, 공사손해보험료는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에 완료되는 것이므로, 공사손해보험료는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까지 공사손해보험료의 기성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공사손해보험료는 이행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임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금액 등의 산정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품목 또는 비목만으로 산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지수조정에 의하는 경우의 비목군 편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하는 것이나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공사손해보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외 별도 비목으로 계상토록 한 취지로 보아 동 공사손해보험료는 지수조정을 산출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4. 수입품 및 노임의 지수산정

법무지원팀-5056, 2007.12.18

## ■ 질 의

### 질의 1

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수입공산품에 대한 비목군분류시 한국은행물가지수에는 원화, 계약, 달러에 대한 월별통계지수중 지수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은?

### 질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2007년9월1일 하반기 노임발표후 기성, 공사 예정공정표상 물량을 공제하여 지수조정률 4%가 산정되었을 경우 조정기준일이 2007년 9월 1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9월1일까지 공정을 제외하고 최초 3%가 나오는 시점인 2007년1월2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자료작성 소관부서인 한국은행([www.bok.or.kr](http://www.bok.or.kr) 물가통계팀 02-759-4352)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동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5. 물가변동 수입물가지수 적용방법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2300('06.10.13)

### 질 의

계약금액 조정여부 검토시 지수조정률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본 계약물품은 수입 물자이므로 한국은행에서 조사하여 공표하는 “수입물가지수 중 당해품류에 속하는 지수”만을 적용하여 지수적용률을 산출할 경우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수입물품 구매계약에 있어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비목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수입물가지수표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비목을 말합니다.

##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수입물가지수 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1725, 2008.07.11

### 질 의

물가변동 발생여부를 조사한바 2008년 6월 한국은행이 공표한 공산품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는 5월 현재 125.56으로서 계약시점인 2007년12월 102.06대비, 수입 물가가 5개월여 만에 23.02% 상승한 것으로 공표 되었었어, 실질적인 물가변동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로 판단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 회 신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가능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100분의 3이상 증감 여부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7. 물가변동시 정기안전점검비 등 경비성 비목의 적용대가 제외 여부

법무지원팀-3408, 2006.10.16

### ■ 질 의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지하철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률에 의한 경우에 정기안전점검비, 폐기물처리비, 건물 및 부지임대료의 비목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적용하는 조정율과 정산항목은

인터넷 질의 2008.12.30

### ■ 질 의

현재까지 4회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장기계속공사의 정산에 있어 ①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항목은 합계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는지? ②적용한다면 전체적으로 합한 율을 적용하는지? ③위 항목 외에도 정산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지?

### ■ 회 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의 대상이 되는 비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의하여 노무비 비목(A)~국민연금보험료 비목(M) 및 기타비목(Z)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목도 조정율 산출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이미 조정된 비목 중에서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목은 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환경보전비·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하도급 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은 그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임.

## 9.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법무지원팀-4328, 2006.12.28

### ■ 질 의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지수조정률 산출시 비교시점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중에 있는 공사계약에 있어 잘못 적용한 비교시점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바로 잡아 지수조정률을 다시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재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초 물가변동조정시 적용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 조정을 재신청하는 시점 (또는 생산지물가지수를 잘못 적용한 것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 이행되는 대가를 산출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로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의 설정 및 조정률 산정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 후에라도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 재조정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중 공사에정공정표상 재조정하여 새로이 산정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3절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1. 물가변동 감액조정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111, 2010.07.19

#### ■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4조제6항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70조의5제3항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1>

계약체결 후 단품증액조정이 없었던 경우에도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 단품증액조정이 없었다면 집행기준 제70조의5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는?

#### <질의 2>

직전 계약금액조정을 할 때에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단품증액요건에 해당되었으나 동시에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단품증액조정을 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금액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같은 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규정은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 ■ 회 신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제3항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되, 당해 단품감액조정으로 인해 조기에 추가적인 계약금액 총액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하도록 한 것이며,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한해 단품감액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제4항에 따르면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건에 해당하였으나 동시에 총액증액요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단품증액조정 없이 총액증액조정만을 하였다면 그 이후 단품감액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서는 공사계약에 한해 자재(단품)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일부 항목의 물가변동은 동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총액)조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청소용역계약에서의 물가변동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72, 2008.09.09

### ■ 질 의

청소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올해 최저임금이 8.3% 인상되었으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을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이 불가능한지 여부 및 조정을 산정방법은?

### ■ 회 신

국가가관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이상 증감되어야 하며, 조정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물가변동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서 품목조정율로 정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동조 제8항에 의하여 당해 계약이 2006.5.25 이

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의 경우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율의 산정여부, 기준 등은 계약서, 설계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3.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등락율 산정

법무지원팀-150, 2008.01.15

#### ■ 질 의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품목조정율)을 신청하였으나, 물가변동시 적용가격 산정방법에서 발주처와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 (갑설)

재료비 산정을 위한 최초원가계산시 전월부터 6개월간의 유통공사 평균가격과 업체의 6개월간의 구매실적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원가 산정시 적용한 원가계산 전월부터 6개월간의 유통공사 평균가격과 물가변동당시 전월부터 6개월간의 업체의 구매실적의 재료비를 적용하여 제품의 물가변동 등락율이 없으므로 물가변동 대상이 아님

##### (을설)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시 비목계산시 재료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전월부터 6개월간의 유통공사 평균가격과 변동시 전월부터 6개월간의 유통공사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제품가격 등락율이 3%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물가변동 대상임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락율은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시점의 가격과 비교시점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입찰당시가격을 유통공사 평균가격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

의 가격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시준시점의 가격과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비교시점의 가격산정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4. 물가변동(품목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방법

법무지원팀-4614, 2007.11.16

##### ■ 질 의

물가변동(품목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재료 및 노무비의 산출항목 및 공량 등 산출근거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와 변경방법을 질의

##### ■ 회 신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락율은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시점의 가격과 비교시점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시준시점의 가격과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비교시점의 가격산정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 5.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의 가격 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548, 2008.04.18

##### ■ 질 의

케이블을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계약체결하여 납품이행 중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입찰당시에는 존재하던 거래실례가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의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방법은?



## ■ 회 신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등락율은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바,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 등 객관적으로 조사·발표 또는 결정되어 있는 가격으로서, 설계가격 또는 예정가격 단가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당시에 존재하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 등이 물가변동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유사한 가격의 존재여부, 다른 방법에 의한 두 시점의 가격산출가능여부 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여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 6. 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로 명시된 경우 계약의 원칙에의 저축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332, 2008.08.20

## ■ 질 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고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로 표기되어 있음은 물가조정방법의 선택이 제한된 것으로 계약원칙에 저축된지 여부 및 조정방법의 변경이 가능한지와 2가지(품목과 지수)로 표기됨이 타당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방식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조정율을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을 계약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을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일단 계약체결시에 정한 물가변동조정을 산정방법을 계약이행중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할 때 지수조정을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1조(보칙) 3항에 품목조정을 명기하여 계약체결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으로 해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7. 민자사업의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754, 2007.11.28

### ■ 질 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3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3.1 기준으로 생산자물가지수는 약 14% 상승하였으나 Cable 가격은 원자재(동) 가격의 급등으로 약 200% 상승하여 공사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번 개정된 국가법 시행령 제64조제6항(특정규격의 자재별 물가변동)에 따라 품목조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

### ■ 회 신

민간투자방식으로 체결한 계약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 내용, 입찰안내서, 당해 협약서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 제4절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1. 물가변동 반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53, 2008.07.31

#### ■ 질 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확정 지연으로 12개월간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로 인한 물가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 하려 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서상 “물가변동 반영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물가변동은 곤란하다고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하였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의무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동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동 법령에 위배되는 것임.

### 2.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64('08.02.13)

#### ■ 질 의

국계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의한 원·부자재의 급등으로 9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동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적용을 배제하고 단축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와 계약체결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어야 하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되는 날에 대한 의미는?

## ■ 회 신

### 1.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자재 급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7항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 2.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체결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한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감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3.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372('08.5.16)

## ■ 질 의

- (1) 원화로 계약하였더라도 동 현장설명서에 반영된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기준으로 환율이 3%이상 변동시 환율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계약내용에 반영되어있는 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2) 환율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전체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금 및 기성대가 지급금분 및 공정진행분 등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원화로 한 경우에는

원화의 엔화에 대한 환율변동 등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증감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와 달리 계약서(현장설명서 포함)에 계약일로부터 60일 기준으로 환율이 3%이상 변동 시 환율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되며,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산출시 이를 공제해야 함.

### 4.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있어 적용대가 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1428, 2008.06.24

#### ■ 질 의

1. 물품제조구매를 위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계약서에는 규격별 단가와 연간 추정물량이 명시되어 있고, 실 수량과 납품기한은 실 사용물량을 납품요구하는 별도의“주문서(납품요구통지서)에 의한다] 하였음
2. 발주기관은 실사용 물량에 대하여 수시로, 구체적인 수량과 납품기한을 명시하여 별도의 주문서(납품요구통지서)를 발행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납품받고 있음
3. 연간단가 계약기간의 종료 즈음에 발행된 주문서의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이후로 지정되고 있음

이 경우 상기3에서와 같이 단가계약 기간중에 주문된 물량(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이후)에 대하여 단가계약 기간이후 조정요건이 충족(90일, 3%)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에 불구하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구매기간의 지정 납기일을 초과하여 조정기준일 이후 지연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 회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조정기준일(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 되는 날)이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완납(최종)대가 지급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 5.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64, 2008.11.18

## ■ 질 의

1.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되어도 예산부족시 및 공사량의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조정가능하다면 그 근거 및 조정방법은?
2. 환율변동에 따른 물가변동을 산출방법은?

## ■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만약,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신청금액 전액에 대

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던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확보 등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조정 시기의 분할 또는 연기 등을 계약상대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등락율은 입찰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가격과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6.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2808, 2008.09.18

### ■ 질 의

아파트건설공사에 있어 공사착공계 제출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사 중단 중인 경우로서 이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에 정한 요건(계약을 체결한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총공사 공정표로 산정하는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676, 2008.07.09

### ■ 질 의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있어 1차 공사를 계약한 후 보상지연, 문화재시굴 등으로 인하여 총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변경 없이 1차공사를 변경계약하고, 또다시 노선 미결정으로 1차공사를 변경계약 한 경우로서 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의 변경이 없어 착공당시 공정표로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1차공사 변경계약시 제출된 공정표로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제5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절 설계변경 기준

제2절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제3절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경우

제4절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제5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제1절 설계변경 기준

#### 1.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인터넷 질의 2009.09.02

#### ■ 질 의

도로공사의 종합보고서에 “발생사토는 ○○구간 처리 및 □□매립에 유용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가 협의후 처리토록 계획하여 발생 사토로 인한 환경영향이 발생치 않도록 계획할 것임”으로 표기된 경우 동 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해당하려면 동 보고서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해당되어야 할 것임.

## 2. 산출내역서(인테리어 specification)의 설계서에의 해당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2 ( '11.05.11)

### 질 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계약한 “○○ 건립공사”에서 실시설계최종납품도서의 제출시 기술부분(설계도면, 공사시방서)에는 바닥석재 재료의 규격, 품질 및 시공방법까지 입찰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석공사 패턴과 석재종류 관련 시공상세도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을설), 발주처에서는 가격부분(산출내역서)에 참고 자료로 제출된 인테리어 specification에 명시된 재료(착색석종)에서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갑설). 이 경우 가격부분에 참고자료로 제출된 인테리어 specification이 설계서에 해당되는지?

#### < 입찰안내서 >

1. 입찰안내서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 3.3실시설계최종납품도서의 규격과 수량
  - ①기술부분, ②가격부분, ③관리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기술부분의 5.공사시방서의 실시설계도면 항목 중 건축계획(인테리어 포함)으로 명시됨.
2. 실시설계최종납품도서 제출시 5.공사시방서 항목에 인테리어 포함한 건축공사시방서를 제출하였고, 12.실시설계도면 항목에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별도로 제출함.
3. 인테리어 specification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항의 설계서에서 제외된 '가격부분'의 산출내역서(총괄내역서) 및 인테리어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및 물량산출서와 함께 제출됨.

#### < 실시설계도서(인테리어 관련) 내용 >

1. 기술부분(설계도면)
  - 1) 인테리어 공사시방서 : 「바닥석재 재료」 규정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듬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
  - 2) 인테리어 설계도면
    - 가. 인테리어 평면도 : “ST04 : 지정화강석으로 마감” 표기
    - 나. 실내재료 마감표 : “ST04 : 종류/화강석, 재료명/L 지정품” 표기
2. 가격부분(산출내역서)
  - 1) 인테리어 specification  
 프로젝트명, 코드번호(ST04), 설치위치, 품명, 모델명, 회사명, 컬러사진, 담당자/연락처 등
  - 2) 총괄내역서(인테리어 부분) : 해당 품명의 규격에 “L 지정품”이라 명시됨.

## ■ 회신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라 함은 입찰안내서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계약문서는 동 예규 제3조에 따라 계약서·설계서·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인테리어 Specification"이 설계서에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항을 표기·기재하기 곤란하여 이를 보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첨부서류라고 한다면 설계서의 일부로 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 등을 설명해 주는 보조서류라면 설계서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3. 재설계도서 교부여부 및 공사비 관련 질의

법무지원팀-742, 2005.09.08

## ■ 질 의

폐사는 신축공사를 낙찰 받은 후 설계 도서를 교부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총액입찰이므로 도면과 물량내역서만 교부하고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설계 도서를 볼 수 있는 방법과 너무 낮게 책정된 공사비를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요구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낙찰자(계약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여기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합니다.(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물량내역서를 포함) 또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나 발주기관에서 해당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 품셈 등은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을 제시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 등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누락, 오류, 수량 및 단가가 과다·과소계상이 되어 있다가,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변경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이 이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4. 전력비 부담관련 현장설명서의 해석

법무지원팀-213, 2008.01.18

##### ■ 질 의

###### <개요>

“○○사 본관건물시설공사”는 토건·전기공사와 빙축열시스템제작설치로 분리 발주되어 계약되고 준공되었으며, 빙축열시스템은 준공전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동 시운전에 대한 전기료를 발주처에서는 시공사에 요청하자 시공사는 전기료 중 기본료를 제외한 사용료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

###### <현장설명서>

토건공사 입찰시 배부된 현장설명서에는 “수전,시수 통수후 사용 비용중 기본료는 발주자가 부담하고 시운전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각 공종별 도급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됨

######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본 공사(토목,건축)입찰의 현실시 제시한 현장설명서의 사항의 각 공종별에 본 공사현장 건축물의 기계실에 설치된 빙축열시스템공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는 경비에 계상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도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공사의 전력비를 자기책임 하에 산정한 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법무심사팀-439, 2005-01-24

### ■ 질 의

○○ 도로개설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시방서에'철거된 물질 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철거물질을 유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기준에 따라 동 철거물질을 100mm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면 동 비용은 누가 부담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사시방서에'철거된 물질 중 성토용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 명시되었으며 또한 설계서에 동 철거대상 물질의 수량과 그 중 유용을 위한 수량과 깨기, 운반 등의 공정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입찰금액)의 산출 및 반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는 동 예규 제19조에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및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법령과 당해계약조건, 설계서,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6. PHC PILE 두부보강 이음자재 비용부담 주체

인터넷 질의 2009.04.24.

### ■ 질 의

진입도로 공사현장으로 PHC파일의 설치가 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PHC말뚝이음만 반영되었으며, 아래의 단가설명서와 시방서를 근거로 할 적에 PHC 말뚝이음단가 중 연결부 재료비의 부담 주체는?

(단가설명서) "이 단가는 PHC말뚝간의 이음을 위한 비용이며, 개소당 2조의 용접밴드를 사용하여 이음하는 것으로 개소당으로 측정한다."라고 명시됨

(자재구매시방서) "용접밴드(외경 400mm, 2개1조) 포함"이라고 명시됨

[답설] 단가산출서상의 PHC 말뚝이음란에 용접밴드라는 명칭의 원가를 반영하였기에 PHC 말뚝이음의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함.

[을설] PHC 말뚝이 관급자재이며, 단가설명서상의 내용 및 자재구매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과 같이 용접밴드 2조가 관급에 포함된 바 용접밴드 재료비는 발주처가 부담해야 함

### ■ 회 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처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며,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임.



## 7. 오락방지막 설치를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583, 2008.09.03

### ■ 질 의

항만공사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락방지막설치에 대하여는 특허공법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에는 견적가로 표시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특허로 명시된 경우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는 설계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8. 세륵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반영여부

법무지원팀-5039, 2007.12.17

### ■ 질 의

#### <개요>

당초 계약에 없던 세륵기를 설치함에 있어 전기인입공사비를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나 임시전력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곤란하다고 하는 바, 전기인입공사를 도급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세륵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기공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도 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

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9. 설계변경 관련 자재 할증 적용

현아 제2005-97호, 2005.02.22

### ■ 질 의

최초 도급계약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수목식재 재료의 할증수량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정한 설계서에 있어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작성시 또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할증적용과 같은 품셈적용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하다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0. 설계변경 관련

법무지원팀-20, 2005.07.08

### ■ 질 의

대학교증축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공사는 냉난방 공기조화공사에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였는바, 이러한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포함되었던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공사를 삭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목적, 성질, 규모, 당해 계약조건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공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한 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11. 설계변경 가능

법무심사팀-1392, 2005.04.19

## ■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등)를 감리단에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서류를 반려하면서 서류일체를 완벽하게 꾸며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본까지 요구하고 있는 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제54조제6항에 규정한 “감리원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3항 서류를 제출 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완벽하게 제본까지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제

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등 동 예규 제19조의7 각호의 사항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예규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 질의의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의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대상은 아니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동 지침서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관련 첨부서류(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서류의 양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수준 및 계약의 관습에 부합되는 정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 12. 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법무지원팀-1257, 2005.10.10

### ■ 질 의

질의 1 : 수의로 체결한 총액계약에 있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 철골부재의 수량산출에 따른 할증을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 파일항타를 함에 있어 파일 길이가 당초 설계 및 산출내역서와 달리 시공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제19조의2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동 예규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 수

량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서가 변경되어 공사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물량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1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건 제2005-04호, 2005.03.03

#### ■ 질 의

1.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여기서 “예정가격단가”가 동 예규에 명시되어 있다해서 반드시 설계변경시 발주처 자체의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동조 제1항에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1항제1호의 단서에 의거 설계변경 단가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금액으로 하여 산정하는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동 예규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예정가격단가를 말하는 것이 아님)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동 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 단가와 예정가격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되지 않고 합계단가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의 합계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14.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242, 2005-12-27

### ■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며, 당해 계약이 준공(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을 말함)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단가 재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그 사실관계 및 당초 설계변경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

## 15. 1식단가 설계변경시 단가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411, 2005.10.27

### ■ 질 의

‘자동수문 유압시스템 설치비 1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공의 한 항목을 설계변경하면서 ‘자동수문 유압시스템 설치비 1식’에서 재료비를 분리하여 사급자재대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1식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료비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국가가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공종의 구성비목에 변경내용의 구성비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당초 산출내역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6.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법무지원팀-340, 2008.01.28

### 질 의

내역입찰로 발주한 “○○국도확장공사”에 있어 2차공사의 설계도면의 계약목적물인 교각(교대)을 완공하고 해당차수의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로서 3차 시공중 발주기관으로부터 2차공사의 대가지급에서 누락된 교각부분의 터파기 되메우기 등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 당해 차수 준공대가가 지급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7.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 자료가 잘못 책정된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2, 2005.07.07

### 질 의

설계용역입찰에 있어 설계용역비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설계대상 목적물에 대한 추정 공사비 산정의 잘못으로 예정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 낙찰 및 계약 체결된 이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및 계약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현행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가격자료(설계용역 대상목적물의 추정 공사비) 작성의 오류, 또는 예정가격 조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8. 규격·가격분리입찰로 집행된 계약 건 규격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44, 2005.07.11

### ■ 질 의

규격·가격분리입찰 방법으로 계약한 ○○도시철도공사 수요 “전기동차 내장재 교체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자 A가 계약서상의 당초 입찰규격과는 다르게 규격입찰 참여업체인 차순위자 B가 제시한 규격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품의 규격은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현행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는 것이나,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체결당시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거 동법동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동 예규 제3조에 의거 계약문서의 일부인 규격서의 내용을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규격변경의 예측가능 여부 및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9. 기성대가 수령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41, 2010.02.26

### ■ 질 의

○○지역 □□시설신축공사 시공중 생활관 물탱크실 터파기시 경암이 발생되어 암 판정 시험의뢰결과 계약내역서상 연암(1689m<sup>3</sup>) 중 일부(321m<sup>3</sup>)가 경암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어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발주처의 승인 전에 경암 부분까지 연암으로 산출하여 기성대가를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연암전체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라도 준공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는 경우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예규 제39조의 2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내용 및 계약이행과정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 20. 하자보수 완료후 월가계산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법무지원팀-1396, 2005.10.26

### ■ 질 의

창호공사를 2003.7.19자로 계약체결(공사기간 '03.7.22~'03. 8.30)하여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공사입니다.

질의 1) : 입찰공고전 기초금액 작성을 위한 월가계산서 작성시 창틀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전자입찰로 경쟁입찰에서 낙찰(86.745%)된 계약금액을 반환하라 하면서 반환금액은 100%로 계산하였는데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공사준공 후 감독관 및 학교실무자 입회하에 준공검사까지 완료했고, 하자보수기간도 다 끝났는데 창문틀 주위에 페인트가 덜 시공되었다고 하면서 부족한 만큼의 페인트 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반환 여부

### ■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당해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 계약과 관련한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소 사유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의 과다·과소 산출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 반환은 곤란한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는 동 예규 제35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한 후 하자보수 확인서 발급여부 및 최종검사의 결과 등에 따라 판단되어질 사항입니다.

## 2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0분의 10 기준

법무지원팀-1402, 2005.10.21

### ■ 질 의

#### <질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를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공사착공부터 현재시점까지 누적증가금액이 10%이상인지, 금회 증감액이 10%이상인지 여부?

#### <질의 2>

질의1에서 증감액은 물가상승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제외되는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라 함은 각각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최초 계약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조정금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22. 조합을 통한 계약이행중 추가물량의 계약내용 변경

법무지원팀-2476, 2007.6.20

### ■ 질 의

무대기계장치 구매설치 계약이행중 동일한 현장에서 시설확충에 의하여 무대기 계장치를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호환성 유지와 하자보수 유지를 위하여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예상치 못한 사실의 발생 등 필요에 의하여 당초 계약물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라 동조 제1항 내지 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계약에 대한 설계의 변경으로 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분리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제조(설치)물량의 내용, 계약체결시 예측가능여부와 당초 계약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23. 면적의 변경이 없는 자재규격의 변경시공과 설계변경

인터넷질의 2009.11.03.

### ■ 질 의

“○○신축공사”의 시공 중 발주처의 구두에 의한 작업요구로 당초 내역서상의 자재(타일)규격을 200\*250에서 600\*300(대형타일)으로 변경 시공하고 실정보고를 한 경우 발주처는 타일의 변경은 승인하면서도 타일총면적의 변경이 없는 단순 규격의 변경의 사유로는 설계변경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

### ■ 회 신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자재(타일)의 변경시공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공사자재의 총면적의 변화가 없이 단순한 규격의 변경만 있더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함.

## 24. 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가능 여부

법무지원팀-58, 2005.07.07

### ■ 질 의

청사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에는 당초 외벽 마감공사시 인조 라임스톤을 벽건식(반건식)공법으로 부착토록 되어 있으나, 외벽시공 벽건식접착은 줄눈시공등이 불가능하므로 자연석의 외벽시공방법인 건식(L형 철물 스트롱양카 석제 본드) 시공 방법으로 변경코자 발주기관에 시공방법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철물 등 부착시공에 필요한 재료가 추가됨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과 의견이 상이한 바, 이 경우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검토한 결과 특정 공종의 시공에 있어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상의 사유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동조동항제4호 및 동 예규 제19조의5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초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의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특정 시공방법의 현장에서의 적용 부합여부 및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25. 설계단가 과소산출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1, 2005.07.07

### ■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작성시 특정품목의 가격을 시중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산출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근거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품셈 적용에 착오·오류가 있다거나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설계내역서의 단가에 비해 계약상대자가 동 예규 제2조제6호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26. 장기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심사팀-1292, 2005.04.14

### ■ 질 의

1. 공사시방서상 연약지반처리공은 시공관리계획기기에 의하여 시공 중 자동연속기록에 따라 실시공량을 정산토록 규정됨
2. 이에 따라 시공 완료 후 구간별 평균심도를 재산정하여 설계변경하기로 협의됨
3. 따라서 기성검사원 제출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개산금으로 차수별 준공하였음
4. 위 경우 제2호내지제3호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차수별 준공시 설계변경이 안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에 의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준공대가의 경우에는 동 예규 제27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공사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격한 경우 동 예규 제40조에 의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차수계약의 공사가 동 예규 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여 준공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당해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동 계약과 관련한 설계변경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규정상 개산급에 의한 준공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27.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777, 2007.07.10

## ■ 질 의

### 1. 계약현황

단체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당초 납품일자는 2007.6.9일이었으나, 2007.3.19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2007.5.25일 설계변경에 대한 서면 승인통보시 선시공 후 설계변경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설계변경 승인내용대로 2007.6.13일 납품을 완료하고 같은 날자로 납품검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발주기관 사업부서에서 납품기한이 지난 2007.6.12일 계약부서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계약부서 담당자는 납품기한이 지나고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시공 하였다는 사유로 아직까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질의내용

- ① 상기내용으로 볼 때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 ② 설계변경이 불가할 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
- ③ 지체상금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우선시공을 승인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전 시공은 정당하다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한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면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동 예규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28.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의 중복적용 제외 여부

법무지원팀-274, 2007-01-22

### ■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업증설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의 경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 (질의 1)

신규비목이 물가정보지에 없는 조립품인 경우 견적서상의 경비 및 이윤을 원가 계산서상의 경비와 동일한 경비로 보아 경비의 중복적용으로 간주하고 경비를 내역서상에서 삭제한 순수자재비와 인건비만을 적용하여 사급자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및 신규비목에 포함된 자재비+인건비+경비 및 이윤을 하나의 자재비로 보아 사급자재비에 반영해야 하는 지 여부.

#### (질의 2)

신규비목에 현장내에 이미 사용중인 조립품(제어용 패널)의 내부 개조작업으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받아 타사의 견적으로 설계변경 하였으나, 견적서상의 자재비+인건비+경비를 내역서에 반영함에 있어 경비를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중복경비로 간주하여 삭제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비목등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여 별도로 가산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29.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법무심사팀-770, 2005.02.25

### ■ 질 의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서상의 고용보험료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하여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원가계산상 고용보험료의 과다계상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되는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으며,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단가의 과다·과소계상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소계상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30.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방법

법무지원팀-27, 2008.01.03

### ■ 질 의

2002. 4.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5차수까지는 당초 내역서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왔으나, 발주처에서 5차까지 및 현재 6차분의 설계변경 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재정산을 요구받았는 바, 이런 경우 최초 내역서 요율대로 적용하여 금액조정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 조정된 부분까지 소급 적용하여 정산을 해야 하는지 또는 금차분만 금년도 요율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 ■ 회신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고, 계약금액의 조정청구는 동 예규 제20조제9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과 동 예규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경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준공대가를 수령한 각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31.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 여부

법무지원팀-364, 2007.01.25

## ■ 질 의

설계변경분에 대한 변경계약을 완료하고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발주처에서 아래와 같이 정산을 요구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설계변경당시 관급자재의 증가분을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있어 발주기관에서는 원가계산시 해당 사급자재에 대한 제경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하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 2) 설계변경당시 원가계산서상의 제경비(산재보험, 안전관리비 등)의 계산착오로 적게 계약된 부분을 정산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단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전이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의한 재료비(사급자재비 포함)에 대하여는 동 예규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 32.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과 기타경비의 계상방법

법무지원팀-1085, 2006.04.04

### ■ 질 의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설치장소 변경 등 설계변경시 현장여건과 구조체가 크게 변동된 경우 모든 품목을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지? 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서에 기타경비로 포함된 운반비, 기계경비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이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가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조건, 산출내역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33.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법무지원팀-553, 2005.08.29

#### ■ 질 의

“○○신축공사”터파기 및 파일공사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설계서와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의 설계변경 책임소재 및 적용 단가는?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당초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할 경우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상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3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등 단가

법무지원팀-194, 2005.07.15

#### ■ 질 의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축물 일부는 계약물량이 감소되고, 다른 건축물의 일부는 증축으로 물량이 증가된 바,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갑설) : 당초 계약 물량과 전체 물량을 대비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신규비목, 동일물량에 대하여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을설) :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물량 전체에 대하여 협의 단가를 적용한다.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동일한 계약 건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감소 또는 삭제하는 공종과 증가하는 공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비목에 있어서는 감소되는 공종의 비목과 증가하는 비목의 물량 부분이 동일한 수량까지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감소된 수량을 상쇄하고도 순증하는 물량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 금액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35. 가시설 강재손료(시트파일, 락) 기간의 추가적용시 신규비목 여부

인터넷 질의 2011. 07. 25

## ■ 질 의

당 현장은 ○○기관에서 발주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이며, 계약은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에 따른 적용단가와 관련한 질의 입니다. 물량내역서 품명에 손료6개월이 표기(하기 변경전후 물량내역서 참조)되고 실시설계 도면상 「건축지하층 시공 완료후 되메우기를 실시하면서 하단 E/A부터 단계별 해체」로 명기되었으며, 예정공정표상 12개월이 예상됨에 따라 손료 12개월 산정으로 발주처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설](기존 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성능, 규격(품목)으로 판단하여) 추가되는 강재손료 6개월은 단순히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로 해석하여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을설](당초 내역서에 있는 그 자재의 성능, 규격(품목) 등과 다른 경우로 보아) 손료기간이 증감된 그 자재는 신규비목으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손료사용기간이 증가되는 경우 그 손료(사용료)는 사용기간의 연장에 따라 증가되는 사용료를 산출한 후 협의에 의하여 새로운 단가를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처음부터 12개월의 손료로 계산한 후 당초의 손료를 감하여 증가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당초의 6개월분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6개월분만 따로 산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물량자체가 증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재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12개월로 처리하여 증감액을 산출하되 당초의 사용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그렇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의 6개월분을 산출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6. 설계변경시 단가적용과 실적공사비 단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00, 2010.07.21

## ■ 질 의

발주처 요구에 의한 추가공사시 도급내역에 있는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저의 감리단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계약상대자는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견해가 맞는지? 실적단가 적용시에도 낙찰율 또는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 $[(A+B)/2]$ 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발표되어 있는 경우라면 단가 결정은 현행 규정대로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낙찰율을 감안하여 협의하되, 동 단가협의시 신규비목에 대하여 발표되어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37. E/S 조정한 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법무심사팀-173, 2005. 01. 12

#### ■ 질 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한 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04.12)
- 설계변경 시점('05.01)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는 설계변경 시점의 거래실례가격이나 건설공사표준품셈,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8. 설계변경과정에서 단가적용 오류시 정정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808 2011. 07. 26

#### ■ 질 의

국가기관의 사정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선시공지시를 받아 시공 중에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과정에서 특정 공종의 누락과 단가적용에 있어 설계사의 실적단가 적용해석 오류로 잘못된 단가로 변경계약이 완료된 경우에 정당한 단가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며, 해당 계약이 준공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39.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3889, 2006.11.27

## ■ 질 의

“○○청사 개축(건축)공사”의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법령 또는 해당부처의 고시에 따라 미집행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강 및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 없는 바, 공사비에 책정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다른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 법령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건강 및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상된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하였다는 사

유로는 정산할 수 없을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전액 감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40.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법무지원팀-599, 2005.8.31

##### ■ 질 의

당 현장은 발주기관과 폐기물업체와 계약이 되어있는 분리발주 현장입니다.(실적 정산) 현재 공정율은 50% 정도 진행한 상태인데 반해 폐기물 반출현황은 계약물량을 초과 반출된 상황으로 건설폐기물의 계약시 건축공사표준품셈의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폐기물의 수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정산코자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려 하여 정산받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여부, 표준품셈 이외의 환경부에서 적용하는 폐기물처리비 계산근거 자료가 있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폐기물의 처리를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직접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당초 폐기물처리업체간에 약정한 물량에 상당한 폐기물의 처리는 당해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 이나, 그 외의 물량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특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제7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 당해 폐기물을 자기 부담으로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정한 폐기물량에 추가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및 당초 발주기관이 당해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량을 산출함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폐기물의 처리량을 다시 산정하고,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가 추가 발생된 폐기물로 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즉시 당해 추가된 폐기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에 정한 바

에 따라 별도 발주하거나 당해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폐기물 발생량의 산출 및 그 처리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41.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법무지원팀-654, 2005.08.24

### ■ 질 의

국가기관과 사후원가검토조건의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연구개발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개발업무가 지연되어 당초의 납기가 경과한 후에도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 작업을 하였으며, 납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추가조치 및 계약이행'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당초 조건부로 기간연장 승인한 건에 대하여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건부승인을 취소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조치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수행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통보를 받은 바 있는 바, 이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정산을 함에 있어 납기이후 투입된 인력 등에 대하여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단, 계약기간 연장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납기 이후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음.)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발주기관이 입찰 전에 정한 사후원가검토기준 등에 의거 원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후원가검토기준이 있고 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하여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준 및 특약의 해석은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약으로 계약금액의 정산시점을 최종납기를 기준으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항목 또는 당초

의 과업내용서에 정한 업무 이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로서 계약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현행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검사에 합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수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귀 질의 내용이 원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과업내용 및 발주기관이 요구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에 해당되어 검사를 거쳐 인수한 용역목적물 인지, 또는 그 용역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필연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인력 및 자재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제2절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 1.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66, 2008.02.12

#### ■ 질 의

“○○조성공사” 계약이행에 있어서,

##### 〈 질의 1 〉

토적집계표상의 터파기, 되메우기 수량이 설계예산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 질의 2 〉

강관 부설 기초공사에 있어서 시방서에는 모래나 콘크리트 기초로, 도면에는 콘크리트 기초로 되어 있으며, 수량산출서에는 모래부설의 수량이 산출되어 있고, 일위대가상에는 모래부설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래자재대가 누락된 경우 모래 자재대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 질의 3 〉

설계도면 수량과 실제 시공 수량이 다를 경우의 수량변경 가능여부?

##### 〈 질의 4 〉

강재를 도면상에 곡선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상에는 곡선설치(밴딩)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설계서상에 곡선설치 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 질의 5 〉

도면에는 있으나 설계서상에 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나 품셈적용상의 문제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 질의 1, 3, 4, 5에 대하여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등 동 예규 제19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 등 당해 공사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설계서대로 이행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 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귀책사유,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

## 2. 알루미늄 창호공사

법무지원팀-641, 2005.09.01

### ■ 질 의

총액 입찰로 장기계속 공사를 하는 중 창호공사의 알루미늄 BAR의 THICKNESS가 도면 시방서에 명시가 없으나 일위대가상 명시되어 도면, 시방서와 일위대가가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BAR의 THICKNESS는 일위대가를 따라도 되는지

질의 2) 두께 및 SIZE 변경시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

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만으로는 투입자재의 규격 등을 확정할 수 없는 등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서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9조의5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해당 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는 예정가격 작성 등의 기준을 제사하는 것이나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에 의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지 등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3.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4, 2008.04.08

#### ■ 질 의

○○공사에서 총액입찰공사로 발주한 □□정수지증설공사의 설계서가 다음과 같이 불일치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공사시방서〉 Sheet Pile 의 설치수량은 도면에 표시된 거리에 의함

〈설계도면〉 정수지 2지에 대한 Sheet Pile 및 Wale, Strut 가시설 반영

〈현장설명서〉 정수지 신설 수량 : 2지로 표시

〈물량내역서〉 Sheet Pile 공 수량 : 1nr(개소)로 표기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4. 물량내역서 누락공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단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78 2011. 05. 11

##### ■ 질 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최저가 낙찰제(내역입찰) 방식으로 낙찰 받아 시공 중인 ○○ 도로건설공사의 포장공 쇄석골재생산 및 운반공종이 물량내역서상 누락되어 발주자에게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단가적용의 방법은?

〈답설〉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이 작용되므로 협의 단가를 적용함

〈을설〉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이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적용

#####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귀 질의와 같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 $[(A+B)/2]$ 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5.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심사팀-902, 2005. 03. 11

##### ■ 질 의

관급자재 이외의 자재에 대한 시험비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시험사를 채용중인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자재와 시험사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 ■ 회신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품질시험관리인 비용은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품질시험사의 경우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1에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품질관리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품질관리원의 인건비를 동 작성기준 제18조제3항제7호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로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라면 별도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을 것이며, 관급자재 이외의 자재에 대한 시험소요비용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설계서에 누락되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관련 규정·기준 및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동 확인 결과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 6.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174, 2006.01.16

## ■ 질 의

- 질의 1. : ○○건설공사 시공에 있어 관계법령상 강관동바리(3개월 7.0m 이하, 2단 보강)로 적정하게 설계된 것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스템동바리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적용단가는 ?
- 질의 2. : ○○건설공사 시행중 공종별 물량내역서 및 계약내역서에는 합판거푸집 3회로 산출되어 있으나 공기부족 및 거푸집 존치기간에 따른 전용회수 부족으로 합판거푸집 2회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 회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 오류 또는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거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발주기관의 확인 및 변경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후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설계변경사항은 설계서,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승인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여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 7. 1식단가 공종의 경우 당초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 적용여부

법무심사팀-602, 2005-02-21

### ■ 질 의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의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우수부와 지표면에서의 제거대상 물량기준이 설계도면, 특별시방서, 물량내역서에 서로 상이한 바, 물량내역서에 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물량 산출기준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철거대상의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도 동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제19조의2제2항 각호의 적용방법은 동 규정, 설계서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8. 신규단가 관련

고객지원센터-166, 2005.05.24

### ■ 질 의

공사계약을 이행하던 중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산출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예규 제19조의2에 의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보아 설계변경 및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의 착오로 인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9. 설계변경 단가적용

법무지원팀-1481, 2005.11.01

### ■ 질 의

○○공사를 내역입찰로 발주 받아 장기계속공사로 기존 하수처리장을 고도화시 설로 개보수하는 공사로 포기조 개조 공사 중 간벽 및 유출수로, 웨어중 일부가 설계에 누락 및 오류로 설계변경 없이는 하수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여 신규 누락분에 대하여는 실정보고 승인을 득하였으나 규격 오류분 및 증가분에 대하여는 단가적용에 대한 의견이 발주처와 상이하여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설)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를 근거로 한 기존 1개소(식)의 단가가 규격이 변경되므로 신규단가로 금액을 적용

을설) : 규격변경 시 기존부분은 기존단가로 늘어나는 부분만 신규단가로 적용하여 신규품을 산정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예규 제19조의2에 의거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신규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품목 또는 비목이라 함은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10. 조립식 강관동바리의 신규비목 적용

법무지원팀-1395, 2005.10.26

### ■ 질 의

설계도면상의 구조물 높이가 약 15m인 구간이 있으나 조립식 강관동바리 적용 비목은 계약에 없는 경우, 작업여건상 조립식 강관동바리를 15m 높이로 설치하여, 이 구간의 수량은 신규 비목인 조립식 강관동바리 10m 초과 20m 이하로 일위대가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발주기관을 대리해 감리단에서는 10m 이하 비목품을 우선 적용하고 그 이상의 5m 구간만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여 할증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비목을 신규비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단 주장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발생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품목"(또는 비목)이란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산출내역서, 성능, 규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11.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될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3, 2008.04.04

### ■ 질 의

1식단가인 품질관리비가 당초 설계수량을 초과하여 시험비·단가산출서와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품질관리항목 등이 발생한 경우 실비정산으로 설계 변경하여 받을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5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품질시험비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된 1식의 단가로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시험방법, 시험횟수 등의 변경으로 그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 12. 신규단가 관련 (설계서 불분명)

1AA-0505-004756, 2005.05.17

### ■ 질 의

공사계약을 이행하던 중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산출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예규 제19조의2에 의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보아 설계변경 및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의 착오로 인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13.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 불분명)

법무심사팀 1398, 2005.04.20

#### ■ 질 의

여굴 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에는 별도내용이 없고 설계도면요약보고서에 “여굴 두께 15cm(숫크리트 7.5cm + 콘크리트 7.5cm)”를 적용토록 표시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 “여굴 부분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에는 여굴버력처리비와 주자재인 레미콘(콘크리트자재) 및 시멘트(숫크리트자재)는 반영되어 있으나, 숫크리트 부자재인 모래, 자갈 및 혼화제(급결제)는 누락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에는 버력처리, 자재수량, 시공수량 등 여굴 수량 전체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비목 또는 물량으로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공사목적물 달성에 필요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누락 등으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여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14.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법무심사팀-885, 2005-03-15

### ■ 질 의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우수부와 지표면에서의 제거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설계도면은 없으며, 물량내역서에는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우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 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공전 공사감독관이 공문으로 “우수면에서나 지표면에서도 하상에서 1M 이하까지 철거할”것을 통보해 온 경우에 물량내역서에 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물량 산출기준 및 계약금액조정방법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 각호의 어나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철거대상 물량 등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세부품목 또는 비목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동 문서로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당초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달리 시공토록 통보한 것인지의 여부는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확인된 철거대상 물량

과 발주기관이 당초의 공사시방서와 다른 내용으로 통보한 철거대상 물량을 상호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동 비교 결과 철거물량의 증가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19조의5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는 관련 규정, 설계서, 현장여건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15.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50, 2008.06.03

### ■ 질 의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2,000m 정도 오류(수량산출서상 계산오류)를 발견하고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였으며, 시공도중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기간 동안 감리자에게 보고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동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불이행하고 시공한 이유만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하는 바,

- 1) 이행전에 설계변경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설계변경이 불가한지요?
- 2) 현장설명시 제공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실시공에 의해서만 시공물량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행전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 후 공사감리자에게 보고 하였지만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행전에 설계변경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설계변경이 불가한지요?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3에 따라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서의 오류, 불분명 또는 현장상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공사감독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당해 계약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이행중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계약 문서, 설계서, 통지문서, 현장상황 등의 제반여건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16.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법무심사팀-1043, 2005.03.29

### ■ 질 의

보온공사가 포함된 현장설치도 조건의 물품구매계약에서 당초 계약체결 당시에는 보온공사에 대한 일반사항만 있었을 뿐 상세규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체결후 이를 확정하고 현장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보온재 Angle 설치가 상세규격상의 도면과 달리 누락 시공된 경우로서 동 누락에도 불구하고 시공상의 품질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물량감소가 된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 회 신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에 맞아야

하고,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서 등에 당해 물품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상대방이 동 예규 제3조에 규정된 규격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설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귀 질의와 같이 상세규격에 설치토록 규정된 조립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누락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동 예규 제9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물품의 증감 조절할" 사항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계약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계약이행으로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조립체의 설치누락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결정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특성,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동 조립체를 설치하지 않고도 구매목적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제품으로서의 보존에 충분한지의 여부를 종합고려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17.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시공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428 2011.07.06

### ■ 질 의

내역입찰로 발주된 “○○연구소 신축공사”에서 설비공사의 가스공사 중 가스 저장탱크공사가 설계되어 있으나 가스저장시설 중 가스저장탱크를 보호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법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콘크리트구조물 도면 및 내역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내역에 가스저장탱크가 1set로 명기되었다고 하여 도면에도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변경 없이 포함하여 시공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과정을 거쳐 건축에서 시공해야 맞는지?

### ■ 회 신

국가기판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서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

에 의한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는 것이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8.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374, 2005.10.21

### ■ 질 의

#### < 질의 1 >

회류식 생물 여과지 공사에서 설계내역서에 여재의 운반비 및 재료비만 반영되고 설치비가 누락되어 있는 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 질의 2 >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 생물여재에 대한 여과공법회사의 견적금액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인 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이러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와 같이 동 예규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작성의 오류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수의계약 공사 및 대형공사 계약 제외)의 경우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되므로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공사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동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누락되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정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4호에 의거 견적가격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19. 슬레이트(석면함유)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 등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69, 2008.9.09

### ■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이전에 계약 착공한 슬레이트 철거공사의 설계내역에 슬레이트 해체, 제거 노무비에 슬레이트공 노무비 없이 보통인부 0.027인만 되어 있으며, 또한 보호구, 비닐 등 재료비 및 노무비가 산출근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표준품셈에 의한 슬레이트공노무비와 소모품등에 재료비 및 인건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도중 관련법령 등이 제·개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내용이외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적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에 이행될 물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0.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부담주체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65 2011.06.15

### ■ 질 의

최저가 내역입찰로 발주되고 동시에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공사인 “○○ 신축 전기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수요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처리 중인 경우라면 당초 예상보다 초과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

- ① 갑설 : 발주자와 폐기물처리업체 간의 계약된 폐기물 발생량보다 초과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 ② 을설 :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분리계약 후 물량변경이나 계약금액조정은 발주처와 폐기물처리업체의 관계에서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 회 신

국가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폐기물의 처리를 발주처가 해당 공사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직접 발주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정한 폐기물량에 추가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당초 발주처가 해당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량을 산출함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폐기물의 처리량을 다시 산정하고,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가 추가 발생된 폐기물로 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추가된 폐기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물처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 발주하거나 해당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추가 폐기물량의 처리방법 및 그 처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21. 시공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729, 2008.3.05

### ■ 질 의

“○○대로 증양버스 전용차로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위한 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와 제20조제2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22.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또는 사급전환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85, 2005.08.02

### ■ 질 의

공사의 공정율이 현재 60%로서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내부공사 및 마감공사 등을 진행 중인 바, 골조공사 등에 기 투입된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수량이 부족한 관급자재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지급이 필요한 관급자재의 타설, 조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관급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등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설계서상의 관급자재물량이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



한 경우라면 동 예규 제13조제7항에 의거 관급자재 등의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처에서 당해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시공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부족한 수량의 지급을 요청한 후 발주처로부터 공급을 받아 시공하거나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추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자재를 임의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당해 공사자재를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 없이 임의 충당하여 공사에 사용한 공사자재에 대한 비용 및 당해 자재의 조립 등에 소요된 부대비용 등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0조 및 제23조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관급자재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처리방법은 설계서, 시공당시의 정황, 계약이행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23.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1968, 2005-12-07

#### ■ 질 의

“○○전력설비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품셈적용오류, 노무비 누락 및 현장 작업환경이 설계조건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산출의 사유라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임.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3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제2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24. 발주처가 입찰시 작성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하는 경우

법무심사팀-1086, 2005.07.06

### ■ 질 의

공사입찰시 입찰참가자에게 배포한 설계서의 공종별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상이(규격오기, 물량누락)하여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하는 경우 신규 비목 및 자재의 수량에 증감 이 발생한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와 이 경우 신규비목 및 증감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

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시 작성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종별 물량내역서 등) 간의 규격이 상이하고, 물량 누락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 등에 대한 단가적용방법 등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25. 품셈적용 착오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심사팀-255, 2005.05.04

### ■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 품셈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설계서에 정한 투입자재 및 시공방법이 공사현장의 구조물 시공에 적용하기 곤란한 바, 현장시공에 적정하도록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가 작성한 공사비 산정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기준 등은 그 자체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서가 변경됨이 없이 품셈적용 등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는 당초 설계서대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동 예규 제19조 등에 정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26.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73, 2005.07.29

### ■ 질 의

"○○지역 전기공사"를 총액입찰로 집행하여 계약 체결된 이후 공사 원가계산서의 한전인입비가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설계금액 또는 예정가격산출조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27. 자재수량 및 수급방법의 변경시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03, 2010.01.22

### ■ 질 의

○○신축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서에 일부 관급자재가 누락되어 수량조정 및 관급자재의 사급대체 요청을 하여 감리단서 검토하고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철근·레미콘 등 추가공사비는 실정보고를 하지 않고 해당공사의 종료 후 감리단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정보고 후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추가공사비를 반영 받을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7항에 의거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동 예규 제19조의6에

따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3항에 의거 그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관급자재의 수량과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등의 변경은 해당자재의 수급상황, 공사의 안전과 품질 등 적정한 계약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 28. 설계도와 계약내역서상의 시공자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법무지원팀-272, 2005.07.22

### ■ 질 의

"○○시설 신축공사"의 보온재가 설계도상에는 석재 후면에 T=6으로 되어있고 계약내역서에는 압출시티로폴 타설부착/석재부착으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예규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사량에 추가하여 시공할 공사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

격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

## 29. 안전점검비 부담주체 및 설계서간 불일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1, 2008.06.02

### ■ 질 의

#### 〈질의 1〉

총액입찰로 계약한 “○○대학교 □□ 신축공사”는 정기안전점검대상공사이며, 현장설명서에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원가 및 물량내역서에 동 점검비용이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 발주처에 동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 〈질의 2〉

위 공사의 파일시공은 EXT PILE(선단철판보강 파일)로 시공하도록 시방서와 도면에 기재되어 있으나 공 내역에는 오거천공 PILE 내역적용으로 되어있으며, EXT PILE시공과는 상이하며 실제공사비가 3배가량 상승이 예상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 -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와 제20조제2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귀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2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 30.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법무지원팀-79, 2005.07.19

#### ■ 질 의

인공조형물을 시공 중 1식으로 잡혀져 있는 F.R.P 조형물이 도면과 내역서에는 F.R.P 조형물로 표기만 되어있고 상세도면이 없어 동 조형물의 시방서와 견적서를 확인하니 E.P.S와 우레탄 코팅으로 하는 조형물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31.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간 상이, 특정제품)

법무지원팀-1983, 2005.12.08

#### ■ 질 의

교좌장치 제작설치공사에 있어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의 공법타입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정제품으로 시공토록 설계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물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입찰에 의한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상품(모델)을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나,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회제 41301-965, '2002. 7.18)"(현행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법찰의 운용 제5조 제4항제5호에 흡수) 에 의거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제3절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경우

#### 1. 단위중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법무지원팀-821, 2005.09.09

#### 질 의

운반토량 산정시 적용하는 단위중량이 당초 설계시 토사=1.8, 풍화암=1.9, 연암=2.3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토질시험결과와 상이하여 현장 시험결과를 활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사량에 추가하여 시공할 공사량이 발생하거나 공사량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그 증감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이나, 해당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 위대가표, 품셈 등은 예정가격 작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나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 등의 오류 등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설계서(설계서에 기재된 토량과 현장실측에 의한 토량에 차이가 있어 설계서의 변동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2.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가시설물)

법무지원팀-970, 2005.09.27

## ■ 질 의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내역입찰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구조물 공사 중 교각이 원지반에서 깊이 -3.2m의 터파기(수량:1,687m<sup>3</sup>)로 설계되어 있으나 Boring 조사한 결과 원지반에서 -0.6m에 지하수가 관측되고 토질은 N치1(원지반:0~-6.8m)로써 초연약지반으로 Opencut로 터파기는 불가하여 터파기의 방법을 토류판 또는 Sheet Pile로 변경할 경우 본 공사의 목적물이 아닌 가시설물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바,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도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임.

### 3. 작업현장 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법무지원팀-297, 2008.01.25

## ■ 질 의

- “○○정화사업” 계약이행에 있어서,
1. 발주자가 입찰 전에 제시한 설계서에는 사업지구에 인접하여 가두리어장이 위치하고 있음을 제시하지 않았음.  
- 작업주요공종인 해저바닥 패각류 인양작업의 경우 현 설계서에는 가두리에 피해를 주는 썰물시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작업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설계시 : 1일1척 인량량 20m<sup>3</sup>)
  2. 가두리어장의 위치가 사업지구로부터 50m이내에 있어 썰물시 짧은 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 있음(실제작업 : 1일1척 인량량 10m<sup>3</sup>)
  3. 입찰전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하여 현장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요청 후 발주처의 선시공후 변경계약 공문을 접수한 후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적조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중단 됨
  4. 발주자측 : 입찰공고에 사업지구에 인접하여 가두리어장이 위치하고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현장의 작업여건을 확인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총액단가 입찰임을 고려할 때 설계변경사유가 아님
  5. 시공사측 :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르므로 설계변경 요구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거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은 총액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됨.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시공방법, 발주기관의 지시내용,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

### 4. 지방서 해석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337, 2006.12.28

## ■ 질 의

2002년 발주하여 현재 시공중인 “○○도로4차로확장공사“의 공사지방서에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진동 감소공법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암발파 절취구간에 위치한 돈사, 모텔, 주유소, 민가 등의 시설물의 소유주로부터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 비산, 분진 등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설계서에 의한 절취공법으로는 정상적인 안전할 발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제반 문제점을 방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새로 제정한 도로건설지침(2004년)에 의거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발파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또는 민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방법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 또는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동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상기의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 함)에 해당되는 경우도 이로 인한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동 예규 제3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

## 5.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

법무지원팀-4924, 2007.12.10

### ■ 질 의

#### 〈질의 1〉

○○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상으로는 저수지 축조에 따른 이설도로공사와 저수지의 제당 축조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토록 설계되었으나, 발주처 사정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음에 따라 연도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시공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저수지 축조에 따른 이설도로공사를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은 병행시공토록 설계된 저수지의 제당 축조공사에 바로 유용하지 못하고 가적치를 한 후에 저수지의 제당공사에 유용하고 있는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2〉

이설도로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저수지의 제당 축조공사에 일정한 규격으로 유용, 시공토록 설계서(시방서 포함)에 명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규격을 유용이 가능한 규격으로 만들기 위한 소할 등의 비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및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6.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상이

법무지원팀-5096, 2007.12.21

### ■ 질 의

당사는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2006.2월에 계약체결 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치 못한 실정입니다. 당초 내역과 동일한 발주처 및 동일 공종의 발주예정 공사를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품목구성이 비슷한 발주예정인 도로개설 또는 타 공사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증가되는 추가 공사의 규모, 변경의 정도,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 여부 및 계약체결시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 7. 토질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법무심사팀-36, 2005.04.19

### ■ 질 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로 설계서에서 정한 토질조건과 달라 설계서의 내용대로(운반로 및 운반거리, 시공 장비, 성토재료 등)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하여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토질상태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조정하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현장상태(토질상태 포함),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8. 공사현장과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64 2011.06.15

### 질 의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한 “○○항 건설공사 “에서 외곽 및 접안시설 기초준설토(조합기중기선 70톤+크램셜 2.29m³)를 해상운반(예선 180HP+토운선 200m³)하여 투기장호안에 접안 후 투기(조합기중기선 70톤+크램셜 1.53m³)하도록 설계되고, 준설토의 해상운반거리(외곽시설 L=0.6km, 접안시설 L=0.2km)에 따른 접안후 투기 위치가 명확히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 도중 해상에서 크램셜을 이용한 준설토 투기시 투기높이에 따른 준설토의 자유경사각을 고려할 적 투기의 한계물량(외곽 및 접안시설 준설토 투기 설계물량 95,341m³ 현설계 해상투기 한계물량 15,937m³, 해상투기가 불가능한 물량 79,404m³)이 발생하여 설계서사의 시공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책임감리원)의 주장대로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감수하고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발주처가 작성·교부한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설계서 및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9.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및 단가 결정 방법

법무심사팀-356, 2005.05.19

### ■ 질 의

시행중에 발견한(하천바닥에 하수도관 매설 등)장애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시설을 설치계획을 내고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가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변경시 가시설에 속하는 항목, 신규단가 등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 1) 시공사의 요청에 의한 공법변경(신기술등 제외)등에 의한 경우
- 2) 발주처의 지시(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에 의한 경우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과 공사현장이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과 설계변경(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였고 설계변경(안)을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우라면 그 설계변경(안)대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설계서를 공사현장과 다르게 작성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동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도 포함)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당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제4절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1. 신기술사용료 지급

법무지원팀-1329, 2007.04.04

#### ■ 질 의

당사는 건설신기술 제336호 장대뺨기와 브라켓으로 구성된 암반파쇄기를 이용한 무진동 암반파쇄공법(Super Wedge공법, 보호기간 '02.06.14 ~'10.06.13)의 보유 회사인 경우로서

##### <질의 1>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 <질의 2>

하도급자와 시공참여자 약정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 <질의 3>

원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 <질의 4>

하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 <질의 5>

당사의 신기술로 설계되었으나 신기술사용료가 누락된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7조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동 예규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19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작성시 계상할 수 있으나, 당초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시공방법이 지정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임.

## 2.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2011. 06. 15

### ■ 질 의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되어 "A"건설사에 낙찰되어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A" 건설사는 반영된 신기술이 아닌 다른 신기술로 변경 시공하려고 할 때 신기술의 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이 경우 당해 공사에 적용된 신기술을 다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으로 변경할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특성, 신기술의 적정성,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3. 신기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인터넷 질의 2011. 08. 10

#### ■ 질 의

시공업체가 공사를 80%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의 특성에 따라 설계보다 더높은 정압이 필요함으로 현재 설계된 투입구의 특허기술 및 제품보다 동등이상의 우수한 새로운 기술 및 제품으로 설계변경하여 기존의 특허기술 및 제품의 결함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새로운 기술. 공법은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재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내외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 외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법, 기자재 등이라도 정부설계의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모든 기술이 포함된다고 하며, 설계변경을 요구 하고 있는 바,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의7에 의거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변경사유 및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참고사항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실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내지 제6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를 참조하시기 바람.

## 4.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대하여

법무심사팀-1055, 2005.03.30

### ■ 질 의

계약체결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공법 으로 설계하여 시공 중 동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기술 공법으로 설계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공법으로 계속 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공법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술 개발자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신기술 사용료 등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나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계없이 계약 상대방은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이행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초 설계된 신기술 공법으로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된 신기술공법 이외의 방법으로 시공토록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공법을 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당초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공법으로 계속 시공토록 할지 또는 새로운 공법으로 변경할지의 여부는 신기술공법의 활용성 및 경제성,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5. 당해 절감액의 의미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10.12.10)

### ■ 질 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터널이나 교량의 품질이 향상되어 유지관리비가 현저하게 절감되거나, 발전소의 효율향상으로 연료비가 현저하게 절감되어 이에 따른 "절감금액"이 구분되어 산출이 가능하고 이를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로서 이때의 "절감금액"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으로 보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절감액”이라 함은 당해공사 계약금액의 절감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준공후의 유지관리비 또는 연료비 절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설계서등 계약문서, 관련기준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6. 신기술공법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3723, 2007.09.11

### ■ 질 의

<개요>

“○○증평국민체육센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공법이 현장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발주청의 동의 하에 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4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여도 무방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상황 등, 제반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7.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법무지원팀-653, 2005-08-23

## ■ 질 의

토목공사에 있어 강널말뚝(Sheet File)을 사용하여 토류벽을 시공함에 있어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당해 공종의 규격란에는 진동식 또는 육상향타로만 기재되어 있어 시공방법이 불분명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상의 장비규격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및 사용 장비의 규격변경이 불가피한 바, 이 경우

### <질의 1>

위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2>

사용자재와 공법이 변경된 경우 신규비목 적용 및 변경되는 자재비에 대하여 실제 구입단가 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동일자재를 사용하는 Sheet File에 있어 그 형태가 Box Type에서 U Type으로 변경될 때 Box Type의 Sheet File이 감량됨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U Type의 Sheet File에 대하여 신규비목 또는 실제 구입단가 반영이 가능한지?

### <질의 3>

현장설명서에 "Sheet File의 일부 규격이 생산 중단되어 다른 규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규격변경으로 인한 단가변동은 없다."고 한 경우에도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 제1호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 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동 조 제2항에 의거 제1항에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당해 설계변경의 목적·사유·책임의 귀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들 요소들이 정부측에 귀결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신규비목이라 함은 동 예규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규정 및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특약을 정함에 있어는 동 예규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

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자체를 배제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제6장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제1절 계약기간 연장
- 제2절 운반거리 변경
- 제3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 제4절 수급자재의 변경



## 제6장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제1절 계약기간 연장

#### 공기연장

##### 1.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기연장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508, 2005.08.24

#### ■ 질 의

“관사 신축공사”에 있어 다음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1.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2. 건물부지내 지하매설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3. 동절기로 인한 공기연장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동 예규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26조에 의거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승인 여부 및 연장기간의 산정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기간 연장의 불가피성, 발생한 사유 및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법무지원팀-3666, 2006.11.09

### ■ 질 의

#### <질의 1>

○○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기간이 3년 연장된 경우에 추가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질의 2>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가설건물, 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크레셔 부지 등의 지급임차료, 산재보험료 및 계약보증서의 연장에 따른 수수료 등의 소요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노무비, 지급임차료, 산재보험료 및 계약보증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예규 제76조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3.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및 1식 단가조정

법무심사팀-51, 2005.01.03

### ■ 질 의

1. 타워크레인의 단가가 1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설계서의 타워크레인 규격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공사부지 확장으로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2.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설사무실의 손율을 재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 〈귀 질의 1)에 대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부지 확장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변경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타워크레인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1식단가로 작성된 경우로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구성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동 단가산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3조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을 재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이 없고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 1), 2)의 사유가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설계서,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

#### 4.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법무지원팀-556, 2007.02.08

##### ■ 질 의

물품구매계약(현장설치도 조건)을 체결하여 설치공사 수행도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하였을 경우 간접노무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산정을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준인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와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1) 간접노무비 산정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실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2) 기계 및 전기공사 시공하도급업체의 현장인원 및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본사에서 실제 project를 수행하는 인원 또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실무인원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

##### ■ 회 신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당해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접노무비 산출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임.

## 5.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3530, 2006.10.26

### ■ 질 의

#### 〈현 황〉

현재 시행중인 용역사업은 2004.11.24. 입찰 공고하여 2004.12.21 계약체결하고 2007.12.31.까지 3년간 차수별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약문서 등에는 이미 입찰공고 당시 시행중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약을 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 〈질의 1〉

2003.9.15.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 7. 9)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질의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5호에 의하면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 2003.9.15. 이후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지?

#### 〈질의 3〉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 계약은?

#### 〈질의 4〉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7.9)에 대한 취지?

#### 〈질의 5〉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회계통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공포된 2003.9.15. 이전인 계약 중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 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건의 제반 비용이 계약상대자의 일방적 책임으로 귀속되는지?

## 회 신

### 〈질의 1, 2, 5에 대한 답변〉

용역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7.9)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일찰일 (또는 입찰마감일)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호)이 공포된 2003.9.15 이전인 계약 중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이에 해당되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통첩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다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한 답변〉

용역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이후에 이행될 부분임.

### 〈질의 4에 대한 답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7.9)은 법정근로시간이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달한 회계통첩임.



## 6. 장기계속공사 전체공기 연장시 손해보험 및 간접비 조정

법무지원팀-5098, 2007-12-21

### ■ 질 의

전체 대안입찰방식으로 체결된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처의 차수별 예산배정액 부족에 따라 전체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해당계약의 특수조건에 “연차별 예산배정액 증감에 따른 제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특약이 약정되어 있을 경우 전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손해보험료 및 간접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주기관의 연차별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체 공기연장에 따른 동 추가비용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 ■ 회 신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연차별 계약기간 및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동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조제1항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 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3항에 따라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 7. 하도급계약에 있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법무지원팀-2214, 2005-12-22

### ■ 질 의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간접노무량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의 간접노무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간접노무비 × 해당직종 단가)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간접노무 업무중 일부를 하도급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간접노무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2절 운반거리 변경

### 운반거리

#### 1.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06, 2008-7-15

### ■ 질 의

항만공사에 있어 사석 구입운반이 당초 설계서상 해상운반 30Km로 현장설명서에 명시되었으나 현장조사결과 50Km인 경우 ①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②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공종 구성단가(구입, 운반, 투하) 전부에 대하여 변경 하여야 하는지 ③아니면, 운반거리 증가분 20Km에 대하여만 변경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 회신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골재원의 위치는 변경이 없으나 실측 결과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서상의 거리보다 늘어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7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2. 현장여건과 다른 운반거리 및 운반량에 대한 설계변경

법무지원팀-256, 2005.07.21

## ■ 질 의

공항 확장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토사의 운반량에 대하여 입찰내역서에는 무대와 유대의 수량만 기재되어 있으며, 토사운반에 대한 설계가 도로설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운반거리 및 운반량이 산정되어 있는 바, 이를 현장여건에 맞는 단지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변경이 가능한 경우 운반거리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 회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설계기준 그 자체는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설계기준이 잘못 적용되어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물량과 실제 시공할 물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설계서의 오류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토사채취, 사토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규정한 기준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 설계서,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3. 골재원 변경에 따른 사석단가 변경

법무지원팀-3393, 2006-10-13

#### 질 의

당 현장의 골재원이 2003년 계약체결시는 전남 영암군에서 육상으로 운반하게 되었으나 공사비 절약을 위해 도서지역인 신안군에서 해상운반하는 것으로 2004년에 설계변경(1차) 하였다가 사정에 의거 목포항에서 골재를 운반하도록 2006년에 설계변경(2차)한 경우 이 때 운반거리 단가를 신규단가로 하는지 아니면 2003년도 단가로 환원하는지 여부.

당초 골재원 : 전남 영암군 삼호면 (46.9km)-----> 신안군 안좌면

1차변경 골재원 : 전남 신안군 안좌면 (0.9km) ---> 신안군 안좌면

2차변경 골재원 : 전남 목포(30.2km) -----> 신안군 안좌면

#### 회 신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거나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산정기준) 제74 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 4.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법무심사팀-444, 2005.01.27

#### 질 의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상 토취장 변경으로 운반로 및 운반 거리가 변경되나 당초 설계서에 운반로 및 운반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2. 순성토“돋기”공종의 단가가 1식단가(깎기, 적재, 운반, 고르기, 다짐)의 5개 세부 비목으로 구성)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토취장 변경으로 토질의 구성내용이 변경 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 회 신

###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및 성토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의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제2항 각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설계서에 명확하게 정한 운반로가 없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취장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1식단가로 구성된 세부비목 및 그 토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6항에 의하여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부품목 또는 비목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동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 문서)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토취장 변경사유 및 토질상태,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5. 사토장 운반거리 실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296, 2007.04.02

### ■ 질 의

송배수관 관로공사로 긴 구간에 걸쳐 공사를 하여야 하는 “○○봉 배수지 건설 공사”(내역입찰, 장기계속)의 현장구간내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 〈질의 1〉

현장설명서에 사토장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운반거리(31km)가 실측치(46.26km)와 다를 경우 당초의 운반경로(단가산출서)의 변경이 없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질의 2〉

설계변경시 단가산출서상의 누락된 운반거리만을 신규단가로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서상의 운반경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전체를 신규단가로 재산출해야 하는지.

#### 〈질의 3〉

단가산출서상의 운반경로 중에 우회전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우회전을 할 수 없을 경우(교통법규 위반)의 운반경로 변경이 가능한지

#### 〈질의 4〉

현장구간이 길게 산재(3km)하므로 현장시점과 종점사이의 운반거리(단가산출서)를 가산 산출할 경우 증감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운반거리와 실제 운반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의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실제 운반거리를 기준으로 동 집행기준 동조동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당초의 운반로 전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라면 운반거리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관련 규정에 따라 운반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6. 계약 후 사토장의 위치확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

인터넷 질의 2009.09.02.

### ■ 질 의

○○도로개설공사의 현장설명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공종명 : 사토, a. 토사 L=2km, b. 리핑암 L=2km 2,903m<sup>3</sup>, c. 발파암 L=2km 39,809m<sup>3</sup>”으로 표기되었으며, 단가산출서에는 “운반 : L=2km … V=35km/Hr”으로, 설계도면 중 유토곡선도에는 사토발생 지점만 ○로 표기됨. 위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사토 발생지점,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는 표기되어있지만 사토장과 운반경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주변도로 여건을 감안한 사토장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조정방법은?

### ■ 회 신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후 사토장이 확정된 경우라면 확정된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르되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7. 사토장 운반거리 단축

법무지원팀-1611, 2005-11-09

### ■ 질 의

#### 〈질의 1〉

발주처 임의대로 공사 중에 사토장 운반거리를 단축하여(당초설계 10Km, 변경 6Km로) 공사비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당초설계는 대형브레이크로 암각기를 설계하였으나 브레이크 장비 진입로 물량이 당초 설계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 중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일방적으로 발파로 공법변경을 하여 공사비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3〉

발파 시 피해 우려기관(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는 시공사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질의 1,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동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여부(이행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필요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시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8. 토취장 변경에 의한 단가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742, 2008.05.02

### ■ 질 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이행중 당해 공사의 설계상의 골재장이 골재의 생산중단(생산불가) 이유로 골재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변경된 골재장을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산출하려고 하는 경우

1. 신규단가 산출시 품 적용을 품셈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에 산출되었던 단가산출서상의 품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변경된 골재장과 변경된 골재장의 운반노선이 중첩되는 구간은 없으며, 입찰시 단가설명서 및 현정설명서상에 상기 골재장에 대한 언급 없음)
2. 만약 단가산출서상의 품을 적용할 경우 품이 과다,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등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상의 골재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골재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르되, 생산중단 또는 생산불가로 새로운 골재장을 새로이 지정한 경우라면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골재가격은 변경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 골재원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의 변경내용, 운반도로조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9. 토취장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단가 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79, 2009.12.07

### ■ 질 의

#### <질의 1,2>

최저가입찰당시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된 순성토 운반공종에 대하여 당초 설계서에 명시한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실비에 의한 단가 산정시 공사용 장비의 조합 기준 및 적용단가의 산정방법은 ?

- 공사용 장비의 조합 : 당초 설계시 적용한 장비조합 , 공사비 절감사유서에 제출된 장비조합, 신규 운반로에 의한 변경당시 장비조합
- 적용단가의 산정방법 : 설계가 적용, 도급낙찰율, 공종낙찰율, 협의단가

#### <질의 3>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 토사 채취료를 토석료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사채취료(흙값)를 별도 반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 회 신

귀 질의 1,2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시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처가 작성한 설계조건 및 시공장비의 변경을 공사비 절감사유로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정금액의 산정은 당초 운반로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공사비 절감사유로 제출한 설계조건 및 시공장비 조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귀 질의 3에 대하여

당초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 토사채취를 위한 토지사용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설계변경당시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가격산정방법은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10. 설계변경(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관련

법무심사팀-112, 2005.05.02

### ■ 질 의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바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기준에 의하여 운반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원가 요소 중 대체된 운반로에 대해서 평균주행속도(운반속도)는 변경당시의 운반로 상태를 감안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으로 적용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당초 운반로를 기준으로 설계 운반속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은 변경이 되나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74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산출함에 있어는 변경된 운반로 조건에 맞는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11. 최저가 입찰 공사계약에서 운반로가 변경된 경우 실비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06, 2008-7-15

### ■ 질 의

최저가 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된 순성토 운반공종에 대하여 계약이행 중 당초 설계서에 명시한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 운반로에 따라 실비 산정시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공사비 절감사유로 제출한 공사용 장비조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아 래 -
  - 당초 설계시 장비조합
- 적재장비 유압식 백호우 0.7m<sup>3</sup> + 운반장비 덤프 15ton
  - 공사비 절감사유서의 장비조합
- 절취장비 도자48ton + 적재장비 로우더 3.5m<sup>3</sup> + 운반장비 덤프 24ton

### ■ 회 신

최저가 입찰시 설계서에 정한 운반장비의 변경을 공사비 절감 사유로 제출하여 체결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상의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 도로환경 등에 차이가 없는 한 운반로 변경에 따른 실비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절감사유로 제출한 운반장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12. 당초 설계서의 사용할 토취장의 자재(점토)가 부적격으로 적격자재가 있는 새로운 토취장으로 변경한 경우 운반거리와 자재변경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법무지원팀-3239, 2007.08.09

### ■ 질 의

○○지구 지표수보강개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소류지의 제당과 복통공사에 점토가 필수적이고, 설계서에 점토의 운반거리가 3.2km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검토한 바, 공사에 적합한 점토는 편도 약 19km이상의 거리에서 채취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 경우 토취장 변경에 따라 재료(원석대)와 운반거리 등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의3에 따라 상이한 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와 같이 발주처의 지시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이 변경되면서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74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고, 골재가격은 변경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설계변경당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제3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 1.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산정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03, 2007.01.17

#### ■ 질 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의 공사정지기간 산정, 잔여계약금액 적용시점과 대출평균금리의 적용시점 등과 관련하여 준공대가지급시 지연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바, 동 대가의 청구 및 지급도 준공대가 지급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준공대가 지급시 하는 것이나, 지연보상금의 청구는 매 중지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시점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 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토록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 있어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가 계약이행 중에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지연보상금 산정 및 지급은 공사정지기간이 최초로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날이 속한 월에 발표된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이후 또다시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이미 60일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60일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정지된 공사기간에 속한 기간에 대하여 그 정지된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정지된 날이 속한 월에 발표된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합산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 2. 의무적 가입보험료의 정산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96, 2008.11.10

### ■ 질 의

- 가. 관계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을 신청한 날 이후부터 증액된 비용만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에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비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한 이후에 실제 발생(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임.

## 3.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정산대상

인터넷 질의 2011. 07. 12

### ■ 질 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산대상에 정규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준 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지급 청구시 제1항 각호의 사유(보험료 납입확인서, 전화분 기성대가의 보험료 지급액 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입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보험료등의 비유를 감안한다면, 보험료 정산시 정산이 대상은 일용직근로자라면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 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시 납부한 금액 적용 기준

인터넷 질의 2011.12.08

##### ■ 질 의

○○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대상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1:1로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시 적용 기준?

1. 사용자가 납부한 금액
2.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합계금액?

#####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 제94조제3항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금액을 정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5. 장기계속공사에서의 법정경비 정산방법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223, 2010.02.05

### ■ 질 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에서 도급내역서상의 지급수수료(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하도급보증수수료, 환경관리비) 정산 관련입니다.

<질의1> 장기계속공사 진행 시 상기의 지급수수료는 차수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계약금액으로 마지막 준공시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2> 만약, 차수별로 정산할 경우 1차분에 미집행이 발생하고, 그 후 초과 집행분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정산방법은?

<질의3> 위 지급수수료 중 미집행분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계약 후 준공처리가 되는지, 또는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미집행분만 정산 후 준공되는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의 정산은 연차 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달리 보험료는 계약이행 완료시에 실비를 정산(사후정산)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비용의 정산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라고 봄.

## 6. 예정가격 작성기준 소급적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96, 2008.11.26

### ■ 질 의

계약기간 2003.5.26~2009.12.31. ○○선 노반신설공사를 하도급한 본인은 2007년부터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고용자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인 경우 2006.12.29. 개정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에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비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한 이후에 실제 발생(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 7. 사후정산 보험료의 예가금액 반영후 변경계약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99, 2008.06.16

### ■ 질 의

공사입찰공고( 07.4.4), 입찰( 07.5.17), 계약체결( 07.6.8)한 경우로서 입찰 공고서, 현장설명서에는 국민건강(연금포함)보험료의 사후정산 내용은 없었으며,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일정률로 산정토록 표기하였으며 산출내역서에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일정율로 반영하여 계약체결 하였음. 발주기관 일상감사에 서 ' 07.4.부터 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상기공사에 적용되지 않았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조정방법에 아래의 갑설, 을설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 총 도급계약금액 변경없이 보험료를 예정가격산출시의 금액으로 증액시키고 차액부분은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다른 과목을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을설 : 입찰공고, 현장설명에 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정산하기로 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보험료를 예정가격산출시의 금액으로 증액 후 총도급계약을 변경하고 보험료 사후정산

###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 제22조에 의한 물가변동, 제23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 계약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법령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 등에서 보험료의 사후정산에 대한 규정 또는 사후정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8. 대가지급시 경유세율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정산대상인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40, 2008.6.10

### ■ 질 의

2005.5.에 “○○항 동측배후단지 조성공사”의 계약체결 후 이행 중 2005.12.에 경유세 인상분(간접비 포함)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으며, 2006.12.에 경유세 인상분을 공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현장의 경유세인상분의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전액소진하지 못한 경우 동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대가 지급시 정산대상인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 법령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산의 대상이 아닌 바,

귀 질의의 경우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분 중 시행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경유대금은 물가변동사유와 관계없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급대상액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경유세율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한 경우라면 동 인상분의 지급잔액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없다 할 것임.

## 9. 가설재 손료 산정

인터넷 질의 2011.08.22

### ■ 질 의

당사가 시공중인 공사의 토목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H-PILE 및 STRUT 자재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1. 경과내용

당 현장의 토목 시방서에

1) 재사용 지급 강재의 사용시 현저히 변형 또는 단면 결손이 되어 있거나 부식 되어 허용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사급강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당 현장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고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가시설 구조 계산시 신재가 아닌 고재를 기준으로 구조계산되어 있음)

#### 2. 질의내용

상기 경과 내용과 같이 가설 구조물에 고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손료 산정시 신재단가 대신 고재의 잔존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단, 표준품셈(2-2) 가설물의 한도 및 손율에 명시된 강재의 손율은 강재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를 신재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강재손료를 산정할 경우 신재/구재의 구분 없이 신재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면과 시방서의 변경 없이 가설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중고품(일부감가상각이 이루어진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계약조건에서 정하였을 경우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허용응력 검증 등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10. 작업부산물(고재) 공제

인터넷 질의 2010.11.22

### ■ 질 의

000환경자원화시설 조성공사의 최저가 내역입찰로 계약하여 시공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1-13 발생재의 처리에 대하여 “시공중 발생한 철근 할증량 만큼은 작업부산물에 해당되므로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공제금액 반영”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재대 공제는 철근이라든가 PHC 파일이 아닌 철거공사 등에 대한 고재이므로 철근 할증량은 고재대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도면상의 물량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의 경우가 아니라면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변경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특정의 사급자재에서 작업설(屑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출내역서에 신규비목(부산물)을 설정(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에 기 반영한 부분은 제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작업설물은 계약상대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1. 강재손료 적용방법

인터넷 질의 2010.09.20

### ■ 질 의

강재손료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지하차도 건설공사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가 약 20개월 지연되면서 기 설치한 가시설 강재를 해체시기가 도래되어 기설치한 강재를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험결과 품질에는 이상 없음) 당초설계는 신재구입으로 손료를 70% 적용·재사용 강재 손료 30% 적용 예정이고, 손료를 100% 적용하였으므로 고재도 환수처리 하려고 하는데 적정한지요?

###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손료를 지급하는 자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지 않습니다. 손료가 많이 발생하였다하여 자재와 관련되는 고재를 발주기관에서 회수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12.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

법무심사팀-637, 2005.06.10

### ■ 질 의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방식)계약에 있어 설계시 작성된 설계서가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의 추정설계와 가구별 배수설비의 개략설계로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관계로 시공을 위하여 재조사·설계를 병행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1) 재조사·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 여부  
질의2) 재조사·설계로 인해 지연되는 공사기간의 연장 여부  
질의3) 지하매설물로 인한 품의 할증 여부

##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와 지질·용수·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3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로서 설제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7에 의하여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동 예규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동 예규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단, 4호 및 5호의 경우는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설계기준, 품셈적용 기준 및 설계서상의 물량 산출방법 등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과 협의하거나 또는 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



### 1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도급계약 정산여부 및 계약금액의 조정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56, 2008.03.25

#### ■ 질 의

당 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같은 법 제55조에 의거 □□청으로부터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의 자격을 획득한 연구소입니다. □□청의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쌍방계약에 의해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그리고 민간회사 등이 해당되며 이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계약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계약금액의 조정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 ■ 회 신

국가계약법령에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경우에 가능하며,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이나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후에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 14. 계약체결이후 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480, 2008.12.05

#### ■ 질 의

외국물품을 조달함에 있어 구매대상 물품이 입찰공고 및 계약 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었으나, 계약체결 이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물품으로 변경되어 수입통관 시 비용(세금)이 추가로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 회신

물품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이외의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시 구매물품이 면세대상이었으나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찰공고내용, 관련법령의 개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 15.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연륙교가 개통된 경우 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무심사팀-1386, 2005. 04. 19

## ■ 질 의

공사계약 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에 도서노임할증을 적용하였으나 연륙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 도서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도서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어느 시기의 육지노임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 ■ 회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가격 작성시의 품목(또는 비목)별 금액·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다거나,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품목(또는 비목)별 금액·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당시의 설계서의 변경은 없으나, 당해 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에서 정한 작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3조에 따라 작업조건

이 변경된 이후에 이행될 물량에 대하여 그 변경되는 작업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이 준공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등은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제4절 수급자재의 변경

### 1. 창호류 사급자재 전환

인터넷 질의, 법무지원팀-1965, 2005.12.01

#### ■ 질 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공사 진행중에 있으나, 당초 지급자재 품목중 임대아파트의 유지관리 어려움이 예상되는 창호류에 대하여 사급자재로 전환하여 설계변경코자 검토하고 있음. 당초 설계내역에는 지급자재로 산정되어 있어 간접비가 미계상되어 있으나, 사급자재 전환검토시 공사발주 건으로 하도급계약 사항이므로 간접비항목(안전관리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손해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한 추가로 반영하여 협의 단가율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 지급자재 설계단가에 간접비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협의단가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3항에 의거 그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동 예규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대가지급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예규 제20조제4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현장상태,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2. 관급자재인지의 판단여부

법무지원팀-528, 2007.02.07

### 질 의

당 현장의 관급자재인 특정품목 A는 수요기관에서 현장설명시 배포한 설계서(관급자재내역서)에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최초 계약 요청한 설계서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에서는 설계변경시 관급자재인 특정품목 A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설명시 발주처에서 배포한 설계서(건축내역서-관급)에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고 도급계약 물량내역서에는 언급이 없는 경우 특정 품목 A는 관급자재인지요?

###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 당해 물품이 관급자재인지의 여부는 당해 설계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현장설명시 배포한 설계서에 특정자재를 관급자재라고 명시하였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자재(관급자재)를 공급하여야 할 것임.

## 3.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법무지원팀-622, 2007.02.13

### 질 의

○○시립대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시공중 관급자재인 철근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추가물량에 대한 가공조립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가 지급하는 관급자재의 수량이 당해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7항에 의하여 관급자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도 동 예규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4.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3948, 2008.11.26

## ■ 질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의 입찰공고서에 ‘국가계약법령 제2조에 의거한 추정가격이 18억원이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한 공사원가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원가내역서의 제출을 종용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와 입찰보증금의 몰수하겠다고 하는데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어떠한 기관이 이용할 수 있나요?
- 2) ○○회는 2007년 4월 이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인지?
- 3) 청와대 민원실에서 ○○회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지도 및 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 4) 조달청은 공공발주공사의 계약과 관리의 담당기관으로서 관리책임은 없는지?
- 5) 조달청은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에도 관급자재의 구매를 대행해도 되는지?
- 6) 입찰공고서에 관급자재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관급자재를 공사비에 포함시키라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 7) ○○회는 국가계약법제2조와 제7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었는지?
- 8) 터무니없는 저가공사의 공사원가내역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찰공고 하였는지?
- 9) 관급자재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켜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서도 귀청에 관급자재로 구매요청을 하여 공급받아도 되는지?

## ■ 회 신

### -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 제2조제3호에 의거 “이용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기관이 이용할 수 있음.

### - 귀 질의 2에 대하여

○○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받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므로,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 제2007-21호) 제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기관임.

### - 귀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은 우리청의 국가계약법규의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님.

### - 귀 질의 4에 대하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수요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발주를 할 수도 있고, 조달청에 조달 의뢰할 수도 있으며,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조달 의뢰한 구매 건에 대한 계약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에서 질의하신 건은 조달 의뢰한 구매 건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발주한 건이므로, 입찰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발주기관에 질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 귀 질의 5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단체가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 제2007-2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 귀 질의 6, 7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하

여 발주기관에서 해당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관급자재대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공사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귀 질의 8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공사 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해당 입찰공고내용,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 귀 질의 9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하여 조달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수요기관에 해당하는 발주기관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조달요청이 가능할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제7장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



## 제7장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

### 1. 근무일수

법무지원팀-259, 2005.07.19

#### ■ 질 의

공사계약에서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하여 규정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와 관련하여

##### <질의 1>

동 규정상의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지, 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인지?

##### <질의 2>

동 규정상의 야간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를 의미하는지? 일몰부터 일출시 까지인지, 「소음진동 등에 관한 규제법」에서 규정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인지, 아니면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외의 시간인지?

##### <질의 3>

만약 휴일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라면 일용노무자들이 일요일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이를 휴일작업으로 보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 4>

2004. 7 이후 계약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현장배치 감리원은 토요일에 근무하여야 하는지?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면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1. 질의 1 및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휴일 및 야간작업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하는 바, 동 규정상 휴일이라 함은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의미함.

귀 질의의 경우 특정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자치부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는 일요일에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인 바, 동 예규 제18조의 야간작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야간근무(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3. 질의 4에 대하여

감리용역계약에서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의하며,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동 예규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내용이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과업내용서가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2. 기성청구시 계약금액 정산가능 여부

법무지원팀-3028, 2007.07.26

### ■ 질 의

○○기관과 시설관리용역 계약(수의)체결시 당사는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계약이행을 한 후 기성대가 청구시 물가변동, 과업내용 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음에도 ○○기관의 판단에 의거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 ■ 회 신

용역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

로 하고 있고,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 법령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 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당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임.

### 3. 시공사책임하에 미술장식품 설치 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900, 2008.08.08

#### ■ 질 의

미술장식품(내·외부 조형물 70% 전·후, 회화 및 판화 30% 전·후) 구매, 설치비용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미술장식품 구매 및 설치에 따른 작품선정을 사전 발주처 승인을 받아 건설회사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동 설치비가 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공무 등을 통하여 작품을 선정하는지? 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 ■ 회 신

국립대학교병원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및 관련법령, 당해 병원의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서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도 민법상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국가기관에서 공사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에 포함된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미술장식품 구매 및 설치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계약문서를 검토하여 당해 사항이 계약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4. 용역계약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법무지원팀-1076, 2005.09.27

### ■ 질 의

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일괄입찰방식으로 공사추진을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에 위해 공사수행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사의 추정사업비를 기준으로 CM(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관리제) 감리대가를 산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경우 건설공사 의 추정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경우에

질의 1 : 위 경우 감리용역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감리대가의 조정은 증가된 공사비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연장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질의 3 : 공사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기준 제3조제4항의 “공사비”는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 중 어느 금액을 말하는지

### ■ 회 신

#### 1.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감리용역계약에서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감리용역 과업내용 외에 계약예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현행: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동 규정 및 발생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또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업무의 수행 등을 요구한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은 동 예규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인 바, 용역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증가된 감리대상 목적물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계약 체결시의 예정가격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 3. 질의 3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

### 5. 실시설계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724, 2007.02.22

#### ■ 질 의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 작성시 누락된 실시설계비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설계변경 대가 산출기준은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배치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29호)의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는지 여부?

#### ■ 회 신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해 설계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부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전에 발주기관에서 그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설계비가 물량내역서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설계서의 누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공사의 특성,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사항이며,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는 설계변경 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음.

## 6. 장기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 2008.03.14

### ■ 질 의

○○시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통신(전산), 전기, 교통(소방), 건축)으로 구성하여 계약을 이행중 1차 준공대가지급액과 관련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1) 당초 계약시 감리원 월투입일수 25일로 대가산정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투입일수를 22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2) 1차계약 준공대가지급액 산정을 분담비율과 감리원 투입비율 어느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3) 1차계약분에 대한 선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이 2차계약으로 이월된 경우 기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은?

### ■ 회 신

(질의 ①)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내지 제17조에 규정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아닌 단지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또는 표준품셈의 적용상의 문제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질의 ②)에 대하여

공동계약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③)에 대하여

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제9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동 조 제2항의 각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집행기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해당차수 계약금액중 연도내에 집행하지 아니하여 이월된 계약금액분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7.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1706, 2006.05.23

### ■ 질 의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측량 용역노임의 경우 '05년도 용역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등락을 산정시 기획재정부 공문(회계제도과-1226, 2005.6.17)에 따라 등락율을 산출하였으나 '06년도도 상기 재정경제부의 공문 내용대로 물가변동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는지?

### ■ 회 신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산정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제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06년도에 적용할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측량 용역의 1일 노임단가가 '05년에 발표한 동용역의 1일노임단가와 동일한 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되었다면 동 1일 노임단가에 의하여 등락율 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등락율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참고로 '05년에 발표한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측량 용역노임의 경우 '04년에 발표한 노임에 비해 실질적인 노임상승과 관계없는 조사방법 변경에 의한 상승분이 존재함에 따라 물가변동을 또한 추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05년도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협조요청(회계제도과-1226 및 1227, 2005.6.17)'을 각 기관에 보내어 '05년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시 당해 노임의 등락을 산정은 동 공문내용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06년도에 적용할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측량 용역노임의 경우는 '05년에 발표한 노임과 조사방법이 동일하여 조사방법변경에 따른 추가 상승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협조요청공문이 적용되지 않음.

## 8.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3530, 2006.10.26

### ■ 질 의

#### < 현황 >

현재 시행중인 용역사업은 2004. 11. 24 입찰공고하여 2004. 12. 21 계약체결하고 2007. 12. 31까지 3년간 차수별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약문서 등에는 이미 입찰공고 당시 시행중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약을 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 < 질의 1 >

2003. 9. 15.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7.9)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 질의 2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제3항5호에 의하면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 2003. 9. 15. 이후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지?

#### < 질의 3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 계약은?

#### < 질의 4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7.09)에 대한 취지?

#### < 질의 5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회계통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공포된 2003. 9. 15. 이전인 계약 중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 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건의 제반 비용이 계약상대자의 일방적 책임으로 귀속되는지?

## ■ 회 신

### <질의 1, 2, 5에 대한 답변>

용역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7.09)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일찰일(또는 입찰마감일)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호)이 공포된 2003년 9월 15일 이전인 계약 중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 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이에 해당되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통첩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다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한 답변>

용역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이후에 이행될 부분입니다.

### <질의 4에 대한 답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7.09)은 법정근로시간이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달한 회계통첩임.

## 9. 공사비용 변동계약에 따른 감리용역비용의 조정 및 재계약 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34, 2008.08.19

### ■ 질 의

감리용역계약에서 당초 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사비 13억원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산정, 예정가격을 결정(119,559,000원)하고 입찰후 계약(105,714,820원)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사비(입찰전)는 13억원이었으나 입찰후 공사계약금액은 12억 원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공사비 13억원이 12억원으로 계약되었으므로 감리용역계약 금액도 설계변경하여 감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감리용역 계약금액을 낮추어 재계약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 바, 계약내용에 달리 정한 특약이 없는 경우 예정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한 관련 공사비 금액보다 실제 체결된 공사계약금액이 작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리용역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임.

## 10.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의 분리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791, 2006. 08. 25

### ■ 질 의

2000. 12. 28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중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 12. 29 개정됨에 따라 증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분리계약을 요구받고 있는 바, 개정된 법 이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이므로

가) 당초 계약물량과 증가된 물량을 일괄계약 처리할 수 있는 지  
나)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분리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06.12.31일까지는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같은 법률 부칙<제7782호, 2005.12.29>제2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바,

귀 질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공사계약 이행중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제8장 공동계약과 하도급

제1절 공동계약

제2절 하도급





## 제8장 공동계약과 하도급

### 제1절 공동계약

#### 공통기준

##### 1. 공동도급계약

법무지원팀-549, 2006. 02. 14

#### ■ 질 의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가 준공후 공사참여 업체의 연명으로 작성한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대표업체가 준공정산이 완료하지 않았다고 공동도급사에게 정산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하여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 당해 공사의 손익의 배분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표1] 제10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배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수급체간의 손익의 배분, 출자지분에 따라 투입한 공사원가의 구성원간의 분담금 배당 및 상환관계 등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사항은 아니며, 공동수급체의 운영위원회 협의 또는 현장경리약정 등에 정한 바에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다면 공동수급체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종국적으로는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2.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적용

법무심사팀-199, 2005. 05. 09

### ■ 질 의

수요자가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참가자격에 전기공사업면허 및 통신공사업면허를 모두 요구하고, 입찰공고내용에는 분담이행방식에 필요한 내역 및 금액을 구분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수급체가 각각의 면허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질의 1)>

위의 경우 통신공사업면허만 보유한 업체와 전기공사업면허만 보유한 각각의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예)60% : 40%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 <질의 2)>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점수계산의 경우(분담이행방식)통신공사업면허만 보유한자는 실적을 제출하고 전기공사업면허보유자는 실적이 전혀 없을 경우에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2항 “면허가 동일할 경우에 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라는 규정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자의 실적을 합산하여 계산을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동일면허가 아닌 각각의 면허이므로 각각의 분담비율대로 실적점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과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 면허 및 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갖춘 자로 공고한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면허보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에 의한 입찰참

가자격 여부(적격심사가 아님)는 동 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입찰의 경우 당해 입찰집행기관이 적용하기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는 당해 입찰에 명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적용할 사항임.

### 3.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제한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456, 2008.05.28

#### ■ 질 의

가격경쟁성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담합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 (예 : 10위 이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할 수 있는지

#### ■ 회 신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483, '07.3.22)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규정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할 수 있음.

### 4.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계열회사

인터넷 질의 2011.04.14

#### ■ 질 의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해당 지역내 면허보유 업체를 지역 의무업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해당기준을 만족한 상태에서 해당지역에 소재지가 있는 계열관계의 회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 ■ 회 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조건을 충족한 상태(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간에 지역의무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서 그와 별도로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계열회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5.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부분이란

삼부업무제06-053호, 2005. 04. 12

## ■ 질 의

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의 내용 중 “분담부분”이란
2. 일반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A, B, C가 각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 중 각각 일부씩을 일반건설업체 1개사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3. 위2의 방법으로 하도급 할 경우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체의 발전소 준공실적 인정범위

## ■ 회 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사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요령 제5조제1항 [별첨1]의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는 바, 이 때 “분담부분”이라 함은 구성원별로 각각 자기출자지분율에 해당되는 시공부분을 의미한다 할 것임.

###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 질의하시기 바람.

### 귀 질의 3에 대하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에서 시공실적의 인정은 「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칙」(회제2210-786, '92.11.26)(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에 의하여 금액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하며, 규모 또는 양에 대하여는 실적증명 발급 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공사부분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한 경우 당해 하수급인의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현행 국토해양부)로 질의하시기 바람.

## 6.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대표자 선임

법무지원팀-3006, 2007. 07. 25

### ■ 질 의

갑(45%), 을(35%), 병(20%) 3개사가 공동협정하여 “갑”사가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협의하여 지분이전 없이 “병”사가 대표사가 되어 공사시행에 모든 사항을 진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또한 지분율이 적은 “병”사가 대표사가 되어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갑”사, “을”사는 면허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4조에 의하여 당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할 수 있으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편의를 위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변경할 수는 없음.

## 7. 공동수급체 구성시 참여비율이 같을 경우 대표자 선정은?

법무지원팀-801, 2005. 09. 14

### ■ 질 의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비율이 50:50일 경우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입찰에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대표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지자체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입찰에서는 대표사가 1%라도 지분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데 그 진위 여부는?

### ■ 회 신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동 운용요령 제4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동 운용요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등급에 등록된 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게 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

## 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면허, 시공능력, 실적이라 함은

법무지원팀-232, 2005. 07. 07

### ■ 질 의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 W사가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의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잔여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바,

#### <질의 1>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서 말하는 면허, 시공능력, 실적이라 함은?

#### <질의 2>

잔존구성원 S사가 발주당시 면허조건 및 적격자 선정기준(PQ심사결과 일정점수 이상자)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기에서 말하는 면허, 시공능력,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회 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 의거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나,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이 때,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인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은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으로 판단하며, 잔존구성원이 면허·실적·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라면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 중 “면허·허가 등”과 “시공능력공시액”의 정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1건의 공사(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임.

## 9. 공동계약의 경우 보증금 납부방법

인터넷질의 2011. 05. 25

### 질 의

공동도급 계약체결한 건으로서 변경계약(공사비 증액)시 계약이행 보증서를 주 관사가 일괄로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분율에 맞게 모든 공동도급사가 계약이행보증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만약,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면 법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납부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이행방식

###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규제개혁법무담당관-3151, 2008. 10. 15

### 질 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 회 신

공사의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



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 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각각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할 것임.

## 2. 수급체구성원이 모두 면허 등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729(2004.05.15)

### ■ 질 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면허 등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 갑설 :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을설 : 각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 ■ 회 신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면허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임.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타법령에 의한 공사등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통합발주하는 경우에는 경쟁률 축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임.

### 3. 대표사의 중도 탈퇴와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

법무지원팀-2793, 2007. 07. 11

#### ■ 질 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A사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시공중 대표사인 A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A사가 공사포기를 하거나 지분양도를 할 경우 잔존구성원인 당사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표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며,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 4.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제재 및 기성대가 지급기준

법무지원팀-4151, 2006. 12. 14

### ■ 질 의

“관대교(□□☆☆대교) 가설공사” 현장에서의 공동계약 이행관련 다음사항을 질의함.

#### < 계약현황 >

- 발주방법 : 내역입찰 - 공사기간 : '05.7.27~'08.10.09
- 계약금액 : 100억원이상 - 지분율 : A사 51%, B사 39%, C사 10%

#### < 현장상황 >

공사착공 후 16개월 동안 B사는 현장직원 1명만 투입하고 분담요청액의 8.6%(171백만원)만 입금하여 현장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

#### < 질의내용 >

- 질의㉓ 공동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B사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할 수 있는지?
- 질의㉔ A사와 C사가 계약이행을 위해 투입한 분담금의 실제비율에 따라 B사의 동의없이 기성을 수령할 수 있는지?
- 질의㉕ 발주처가 위 ㉓㉔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사와 C사가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 회 신

- 귀 질의 ㉓, ㉔에 대하여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표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입찰 및 당해 계약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의하여 구성원의 탈퇴 조치 여부는 귀 공동수급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임.

- 귀 질의 ㉕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동 예규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되, 대가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출자비율(시공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 동 설계도서에 대한 권리 규정은 개정(삭제)되었음.

## 5. 공동도급사간 채권 양수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법무심사팀-960, 2005. 03. 11

### ■ 질 의

A사 및 B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에서 B사가 계약 이행 중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로 탈퇴하고 출자지분을 조정하여 A사가 잔여공사 전부를 이행하고 있는 바,

- 1)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B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당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A사를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2)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B사의 채권(기성대가)을 당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A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직원 및 하도급업체를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3)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B사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에 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발주기관에서 직불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는 출자비율만 달라지고 공동도급계약은 유지되는 것인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에 관한 권

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에 의한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동 일반조건 제43조는 하수급자의 하수급대가 직접청구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체불된 임금에 대한 권리구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임.

## 분담이행방식

### 1.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법무지원팀-378, 2005. 08. 12

#### ■ 질 의

1건 공사에 있어서 주된 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할 경우

질의1) 분담이행 부분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 예) - 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구성업체 : A사(건축공사업), B사, C사(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분담내용 : A사 → 건축공사업(100%)  
                   B사 → 전문소방시설공사업(70%)  
                   C사 → 전문소방시설공사업(30%)

질의2) 질의 1)에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 여부?

- 예) ○ 입찰금액 : 10,000,000,000원  
 - 건축공사업 : 9,000,000,000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000,000,000원  
 ○ 시공능력 : A사 → 10,000,000,000원  
                   B사 → 600,000,000원 / C사 → 500,000,000원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경쟁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바,

<질의 1)에 대한 답변>

입찰공고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의한 복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질의 2)에 대한 답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함.

## 2. 건설업자와 일반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1873, 2005. 11. 23

### ■ 질 의

<질의 1>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동일한 면허, 허가, 등록이어야 하는지 또는 일반사업등록(공장등록) 특허업체와 일반공사업등록자와 공동도급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수급체 구성원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재공고 2회 이상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어 2회 입찰시 등록된 3개 업체 중 가장 건설한 업체와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아니면 재입찰을 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질의 1)에 대한 답변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

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인 바, 귀 질의의 대상이 건설공사인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자”와 “일반사업자”(공장등록)와의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은 할 수 없다 할 것임.

### 질의 2) 에 대한 답변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이 경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동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라 함은 당해 입찰에 참여하였는지 또는 1, 2차의 입찰을 통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임.

### 3. 대표사 단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88, 2008. 11. 14

#### 질 의

##### <질의 1>

다음 예시의 A사 + B사 + C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한지?

예시)

A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공사감리 모두 면허소지

B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면허소지

C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면허소지

D사 :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공사감리 면허소지

##### <질의 2>

위 예시에서 A사 1개사만으로 전력시설물감리를, A사+B사가 정보통신감리를, A사+D사가 소방분야에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 ■ 회 신

공사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주로 면허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는 방식으로서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는 해당 입찰공고의 내용과 관계법규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

### 4. 분담이행방식에서 추가물량의 공정이 불분명한 경우 시공업체 선정기준은

법무지원팀-2845, 2006. 8. 29

## ■ 질 의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추가물량이 토목인지 조경인지 불분명한 경우 시공업체 선정기준은?

## ■ 회 신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분담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추가된 공사의 공종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어느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분담시킬지 여부는 추가된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 출자지분변경

### 1. 공동도급사 부도로 인한 지분을 변경

법무지원팀-4985, 2007. 12. 13

#### ■ 질 의

○○지구(산업단지조성)개발사업” 시행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3개사)중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배분에 대하여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 <갑사>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 의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한다.

##### <을사>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에 의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여 공사에 대하여 잔존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율을 배분한다.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동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중도 탈퇴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3항에 의거 중도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가산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타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부도발생 등의 업체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존재하고 또한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구성원의 잔여지분 전체를 일부 구성원에게 모두 이전하거나 또는 타 구성원에게 일부씩 이전도 가능한 것임.

## 2.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의 계약이행방법

법무심사팀-594, 2005. 06. 07

### ■ 질 의

적격심사에 의하여 체결한 지역공동도급 [A사(70%, 타시도 업체)와 B사(30%, 지역업체), (연대보증업체 : C사)] 감리용역계약을 수행중 A사의 부도로 인하여 용역포기 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질의 가)>

A사가 부도로 인하여 감리용역을 포기함에 따라 동 감리용역의 수행사 결정 여부.

#### <질의 나)>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2항의 계약이행 조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 <질의 다)>

질의2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상의 자격까지 충족되어야 한다면, B사와 C사가 자격미달일 경우 업체추가 여부

#### <질의 라)>

연대보증인인 C사가 용역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가해지는 제재가 없는지

#### <질의 마)>

A사의 부도로 인하여 책임감리의 용역중지가 되었을 경우 공사도 그에 맞춰 공사중지를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질의 가, 나, 다)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동수급체를 탈퇴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제2항에 의하여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되, 잔존구성원 만으로는 면허·실적·시공능력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동 규정에 있어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이라 함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면허·실적·시공능력 등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나, 동 요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상의 자격까지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잔존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출자비율은 동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동 협정서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하는 것이며, 잔여 구성원이 시공능력등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출자비율은 연대보증인과 잔여 구성원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 질의 라)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

#### 질의 마)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정지는 동 예규 제47조의2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

### 3. 가압류로 인한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의 탈퇴와 지분율의 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1841, 2008. 07. 18

#### ■ 질 의

A사와 B사가 50:50 비율로 ○○처리시설공사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사인 A사가 채권자들로부터의 공사대금 채권압류로 인하여 공정에 따른 공사비용출자가 불가하고 계획된 공정에 크게 미달하였습니다.

##### <질의 (1) >

B사가 A사의 지분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먼저 투입할 수 없는 실정하기에 B사와 발주처의 합의로 A사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탈퇴시킬 수 있는지와 탈퇴시킬 경우 발주처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 <질의 (2) >

B사와 발주처의 합의로 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변경에 따른 제재조치는?

#### ■ 회 신

공동이행방식의 시설공사 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다만,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2조 및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해당되어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13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협정서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서 탈퇴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임.

## 제2절 하도급

### 하도급 일반

#### 1. 하수급예정자 변경

법무지원팀-822, 2005. 09. 15

#### ■ 질 의

○○공사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기계설비 및 소방시설공사의 하수급 예정자 저층부(A), 고층부(B)로 되어 A사의 경우 기계설비는 B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고 소방설비는 B사보다 낮은 경우, B사가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A사가 단독으로 B사 공사까지 공사수행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나 하수급예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부도발생, 면허취소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조건과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하도급계약의 승인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입찰공고내용, 산출내역서의 기재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법령에 정한 하도급 금액비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2.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340, 2005. 08. 10

### ■ 질 의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시공에 있어 적격 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당초 하도급 비율(시행비율, 금액비율 및 당해공사 지역 하수급업체 계약 비율)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복수업체와의 하도급업체 변경가능 여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수급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변경 하수급인의 적정성 여부(변경 하수급인의 수를 포함)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당해 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 기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

## 3.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법무지원팀-1086, 2005. 10. 05

### ■ 질 의

“○○고등학교 신축공사”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원수급업체가 하수급업체의 인장을 임의 사용하여 공사포기각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하도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적격심

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바, 하수급자의 변경은 하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부도발생, 면허취소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인감을 임의 사용하여 하수급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수급자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4.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

인터넷 질의 2011. 08. 09

##### 질 의

원도급에 적용받은 물가변동 대상 및 조정기준일을 기준하여 하도급 물가변동 대상금액 및 제외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하도급 기성 및 선급금을 공제하여 물가변동 대상금액과 제외금액에 적용하여 산출 하여도 되는지

##### 회 신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5. 하도급업체의 타절정산과 물가변동

인터넷 질의 2008. 05. 20

### ■ 질 의

저희 회사는 “대한주택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건설 회사입니다.(당 계약서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 “국가계약법에 의한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공사계약을 2006. 6. 12 공동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도중 주관사의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일원인 당사가 잔존 채무를 이행조건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도 타절정산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지명경쟁 입찰하였으나 타절한 업체(부대입찰업체)가 최저가 견적제출로 인해 수의계약(2007.11.23)를 하였습니다.

#### <질의 1>

이 경우 당초 하도업체가 부대입찰업체로서의 지위는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타절정산을 하였으므로 부대입찰업체의 자격이 상실 되는지?

당사의 연동제의 적용은 당사계약일(2006.06.12일)

1차연동제 : 입찰일기준(2006.05.19), 90일 경과일(2006.08.19),  
조정기준일(2007.04.30)

2차연동제 : 입찰일기준(2007.04.30), 90일 경과일(2007.07.30),  
조정기준일(2007.12.31)

3차연동제 : 조정기준일(2007.12.31), 90일 경과일(2008.03.31),  
조정기준일(2008.03.31)

이렇게 연동액이 적용되어 발주처로부터 금액변동이 있었습니다.

#### <질의2>

이러한 경우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에 의거 하도급업체 계약(2007. 11.23)이후 적용분인 3차만 적용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대입찰업체 지위 승계로 인하여 “부대입찰공사에 있어서 부대입찰은 기준시점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하도급계약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되는 경우에는 부대입찰일 적용”에 의거 1차, 2차, 3차 전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귀 질의의 당초 하도급업체가 타절정산을 하고 잔여공사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대입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당사의 연동제의 적용”에 대하여는 타절정산을 이미 하였으므로 타절한 업체가 발주처와 체결한 수의계약사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6. 하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의 법적근거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 2008. 03. 21

## ■ 질 의

하도급 공사계약으로서 지체상금을 징수하면 공사비가 없으니 지체상금을 면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법적근거는?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건설산업기본법」(국토해양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때 가능한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지체상금의 면제에 대한 특약 또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임.

## 7. 소방공사를 부대공사로 하여 시공가능 여부

법무심사팀-1169, 2005. 03. 28

### ■ 질 의

건축공사를 3,842백만 원에 수주하여 시공 중이나 발주당시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이 일부(9천만 원) 내역에 반영된 경우로서 시공사가 토건업 등록은 되어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안 된 경우에

#### <질의 1>

시공사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를 하도급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를 하고 관할소방서에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는지

#### <질의 2>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를 하도급하지 않고 동 분야는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2항에 따라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 일반건설업자가 동 부대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 <질의 4>

위 소방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종된 공사 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 ■ 회 신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면허·등록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하게 함에 있어서도 동 규정 및 공사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당해 공사내용 중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하여 이를 이행토록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내용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령상의 하도급, 전문공사 및 부대공사에 관한 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귀 질의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의 규정,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목적·규모·성질 및 다른 공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 8. 하도급계약업체 부도발생시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해지가능 여부

법무지원팀-799, 2005. 09. 14

### ■ 질 의

○○기관수요 ○○하천공사에 있어 하도급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계약보증금을 원도급 자에게 제출하지 못할 경우의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 여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수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정된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다른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변경 하수급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는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계약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 9. 발주기관의 승인없는 하도급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710, 2008.07.04

### ■ 질 의

우리 기관의 교육센터 교육운영과정에서 위탁업체가 사업수행의 일부 영역중 Help Desk(전화·게시판 상담 등)업무를 다른 업체의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 위탁업체와 계약한 근거법령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입찰되고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2200.04-161-4, 2007.10.21)과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이 붙임서류로 계약되어 있음.

갑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에 의하면 사전에 하도급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2007.12.21로 신설되고 시행일이 2008.06.22부터이므로 본 건은 하도급 승인 대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을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에 관계없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하도급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의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병설) 만약 을설의 경우를 적용한다 해도 발주기관의 교육센터 운영사업중 일부인 (일반운영) Help Desk(전화·게시판 상담 등)는 단순 업무이며 제안서상에 하도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하도급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의 보조 이행자」로 보아야 한다.

발주처 의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 공포(2007.12.21)되고 시행일이 2008.06. 22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시책이 소프트웨어진흥정책과 이 사업이 발주기관의 교육센터운영사업의 일부인 단순 업무 인정과 제안서의 하도급 명시된 부분이 없다면 하도급 승인이 아닌 「사업의 보조 이행자」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타당함(병설)

### ■ 회 신

계약에서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상기 규정은 당해계약에 대한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라도 적용되며 또한 계약문서에 하도급관련 내용의 유무에 불구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에 적용됨.

## 10. 하수급예정자 계약포기시 하도급계획 변경

법무지원팀-3561, 2006. 10. 30

### ■ 질 의

○○항건설사무소와 체결한 호안축조공사계약에서 하수급예정업체의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여 다른 하수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 <질의 1>

당초 제출한 하수급예정업체의 수와 공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 <질의 2>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기된 하도급비율을 유지한 채 누락된 공종을 추가하여 당초의 하도급비율 이상으로 발주한다면 추가된 공종을 합산하였을 때 당초의 하도급률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적정성심사기준 이상이면 가능한지?

#### <질의 3>

질의 1과 관련하여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비율 이상으로 기 계약된 하수급업체에 질의 2의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 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새로운 하수급자와의 하도급계약은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업체 수 또는 하도급 공종 등)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 공종을 추가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동 추가된 공종의 하도급금액의 비율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입찰공고내용, 산출내역서의 기재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법령에 정한 하도급금액비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임.

## 11.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법무지원팀-1645, 2007. 04. 20

### 질 의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업체로 참가한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가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하수급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당초 계약비율 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불가피하게 동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다른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하수급인 변경시에도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비율은 충족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 하수급예정자를 지역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요건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요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되는 하수급예정자가 충족하여야 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12. 발주처에서 하도급실적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무지원팀-5181, 2007. 12. 28

### 질 의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 발주처인 A공사의 승낙으로 계약상대자(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으며, B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사와 변경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필요한 시공실적증명을 B사가 도산하여 하도급시공내역을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 A공사로부터 실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에 통보 또는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 대가지급

### 1.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법무심사팀-165, 2005. 04. 25

## ■ 질 의

공동이행방식의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실하여 하도급계약을 이행 완료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하수급인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하도급대가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는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한 금액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금액만 포함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당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하도급대가 지급책임에 대하여 타 구성원이 책임을 지지도 않는 것임.

## 2.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인터넷 질의 2011. 08. 25

### ■ 질 의

원도급사인 당사는 하도급 계약체결당시 발주처에 선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어 하도급계약서에 선금액을 명시하였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발주처에 선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서의 명시된 선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하도급업체에서는 선금미지급시 공사수행이 어렵다하여 선금보증서와 함께 선금지급요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을 지급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면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의하시기 바람.



### 3.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하도급변경의 적법성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777('07.5.01)

#### ■ 질 의

- 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당초 하도급관리서상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토록 시정지시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변경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발주기관이 조치할 사항은?
- 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대표자가 선금을 발주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을 경우에 선금지급조건에 위배되는지?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미이행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정조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미이행 내용 및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부정당업자제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동 예규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할 것임.

## 4.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법무지원팀-83, 2007. 01. 09

### ■ 질 의

공사계약(계약금액 : 2억원)에서 계약상대자의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액 7,000만원과 국세 5,000만원이 체납되어 발주기관에 압류가 통보된 경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조건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계약금액 : 1.2억원)의 대금을 하수급인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 예규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우선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제9장 대형공사

제1절 공통기준

제2절 설계비 보상

제3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4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5절 기타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제9장 대형공사

### 제1절 공통기준

#### 1. 원안설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참가자격

법무지원팀-1222, 2005. 10. 11

#### ■ 질 의

“○○건설공사 제3공구” 대안입찰과 관련하여 원안설계감리업체가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 <공사현황>

- 공사명 : ○○건설공사 제3공구
- 원안 실시설계 용역수행 납품 완료: '95.11~'98.12
- 원안 실시설계 설계감리자 : ○○공사(제1공구~9공구)
- 대안입찰 일시 : 2005년 8월 22일
- 대안입찰참가자 : A컨소시엄, 「컨소시엄」, 컨소시엄

##### <질의 1>

본 공사는 원안설계를 완료하고 상당한 시일(약 7년)이 경과한 후 대안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그 동안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설계기준의 변경, 주변여건의 변화, 신기술·신공법이 개발되어 이에 대한 반영을 통해 공사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공기 단축을 꾀하였음. 이러한 경우 대안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원인 원안설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설계를 무효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공단 관계규정,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에 원안설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설계 작성에 원안 설계감리자가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안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배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위반 여부

#### ■ 회 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대안입찰에서 대안설계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안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등이 반영된 설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 제도의 취지상 당초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또는 설계감리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설계를 작성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원안설계 이후 대안입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원안설계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설계기준의 변경, 공사현장 여건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 등 대안공종 부분의 제반 과업수행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안설계업체(또는 설계감리업체)라도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안설계자가 대안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입찰공고, 경과기간, 설계기준의 변경정도, 공사현장 여건의 변화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또는 설계감리업체)에 대하여 대안입찰참가를 제한(또는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사전에 대안입찰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또는 설계감리업체)를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대안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귀 질의(1 및 2)의 경우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또는 설계감리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나 낙찰대상에서 제한(또는 배제)하는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서류 등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2.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

법무지원팀-991, 2005. 09. 23

### ■ 질 의

설계용역업과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업체가 설계용역을 완료한 공사가 대안입찰로 공고된 경우 동 대안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된다면 국가계약법령상 적법한 것인지?

### ■ 회 신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대안설계를 제출하는 입찰참가자의 경우에도 또 한 동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또한, 대안입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임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취지상 당초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설계를 작성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다만, 원안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경우 동일한 건의 대안입찰에 대안설계 없이 원안설계만으로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 3.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법무지원팀-339, 2005. 08. 02

#### ■ 질 의

지자체에서 발주한 Fast Tracking 방식의 계속비계약의 일괄입찰공사에서

##### <질의 1>

기본설계 심의시 일부 사항이 입찰안내서에 위배되어 감점처리 되었음에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실시설계서는

갑설 : 입찰안내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하여도 기본설계시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게 반영하여도 무방함.(기본설계 심의시 이미 감점처리 되었으므로)

을설 : 입찰안내서의 내용대로 보완되어야 함.

##### <질의 2>

실시설계도면을 기본설계도면 내용과 상이하게 작성하였을 경우라면

갑설 :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하여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도 실시설계도면을 변경할 수 있다.

을설 : 실시설계 심의 상정 전에 발주기관과 서면합의 하였을 때에만 실시설계도면을 변경할 수 있다.

병설 : 발주기관과 사전에 서면합의하고 실시설계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실시설계도면을 변경할 수 있다.

##### <질의 3>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에 Fast Tracking 부분의 계약이행 중 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가 부적격판정을 받으면 즉시 타절준공 처리하고 계약은 해지한다고 약정한 경우에

갑설 : Fast Tracking 우선시공분은 총 공사 이행일 시점에서 준공처리한다.

을설 : Fast Tracking 우선시공분에 대하여만 준공처리한다.

##### <질의 4>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경우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 ■ 회 신

<질의 1 내지 3에 대하여>

일괄입찰에서 공사의 시급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에 의하여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



성된 실시 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실시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일괄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변경없이 실시설계적격자가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이라면 당초 입찰의 기본계획, 지침, 안내서, 기본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 중 계약특수조건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위 규정 및 당초의 입찰안내서(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 <질의 4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4. 대형공사에 있어 사후환경영향평가의 분리발주 여부

법무지원팀-232, 2007. 01. 18

#### ■ 질 의

일괄입찰공사의 사후환경영향평가는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자가 대상사업의 공사와 별도로 분리발주 하여야 하나 입찰안내서상 계약상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후환경영향평가는 발주자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관련법령상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통합발 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사의 계약내용에서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5.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법무지원팀-4472, 2007. 11. 07

## ■ 질 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과정에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량을 당초수량(설계변경전 해당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다르게 누락시킨 사실을 사후에 발견한 경우 동 설계변경 과정상의 오류내용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지?

## ■ 회 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 정에 조정금액 산출오류 등으로 인하여 일부공종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 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임.

## 6. 기본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실시설계시에 삭제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1017, 2005. 09. 27

## ■ 질 의

일괄입찰로 발주한 '△△지하주차장 건축공사'의 수주회사가 기본설계서에 특정 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명시하여 설계서 평가시 가점요인 중 일 부 도움을 받고 실시설계시에는 동 내용을 삭제하여 위특정인을 배제함이 건설기 술관리법을 위배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석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일괄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설계심의 결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동 실시 설계서를 심의한 결과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서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여 동 실시설계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절차에 따라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며 계약의 이행은 심의를 통과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의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본설계서에 특정인의 신기술 또는 지적재산권 내용을 명시하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자가 동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실시설계시에도 동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요구 여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 기본설계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 하여야 할 사항임.

## 7. 기본설계 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3066, 2006. 09. 15

## ■ 질 의

1.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 기본설계 내용의 보완수준을 초과하는 실시설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있어 계약체결후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하여 증감된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에 불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2. 입찰안내서에 “공사착공시(계약체결후)까지 실시설계적격심의회 제시된 심의위원 의견을 반영 설계도서 수정후 착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 준수 또는 수정후 계약을 해야 하는지?

## ■ 회 신

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7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한 바,

동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8. 턴키공사 계약서류 우선순위 적용

법무지원팀-963, 2007. 03. 13

## ■ 질 의

○○공사와 턴키공사로 계약한 □□지하철공구 공사에서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의 내용중 공사준공시 발주처에 납품하도록 되어있는 지급자재(예비품)에 대한 납품내역이 상이할 경우 일반시방서 기준에 따라 지급자재를 납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기시방서 기준에 따라 지급자재를 납품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동 예규 제2조제4호에 따라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에 대하여도 계약 문서에 적용순위를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입찰시의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9. 대안공사의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507, 2008. 04. 18

### ■ 질 의

대안입찰로 계약한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의 시공 중 발주처의 요구로 수량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노동부고시에 의한 계상기준을 적용하는지?

### ■ 회 신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중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10. 턴키입찰에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산정 기준

법무지원팀-796, 2005. 09. 07

### ■ 질 의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심사를 위한 하도급부분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하도급부분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입찰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

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국가 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을 규율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을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교통부 소관) 또는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따라 처리할 사항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1. 일괄입찰(Fast Track)에서 산출내역서의 작성주체 및 이윤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입찰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법무심사팀-114, 2005. 04. 25

### ■ 질 의

일괄입찰(Fast Track)로 체결코자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1. 총공사 산출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지 및 발주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지
2. 총공사 산출내역서의 이윤율, 일반관리비 등은 당초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내역서상의 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 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괄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총 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동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

은 증액할 수 없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 실시설계에 의한 총 공사 산출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금액 및 이윤율, 일반관리비 등은 계약상대자(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당초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금액 및 요율(비율)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산출내역서 단가·금액 및 요율(비율) 등이 일치하는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하여 입찰안내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여할 수 없을 것임.

## 12.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2757 ( '11.06.02)

### ■ 질 의

1.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령 제8장을 적용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기본설계를 한자는 실시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참여를 배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2. 공공기관 입찰에서 같은 법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가능) 수 있는지
3. 제한규정에 없는 경우라도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있다면 제한 할 수 있는지?

### ■ 회 신

1. 국가기관(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은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입찰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이외 다른 조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강행규정)  
※ 동 입찰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은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됨
2. 국가기관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 및 규칙 제25조에 규정에 정한 “제한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위 조항에 없는 기준으로 제한해서

는 아니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계약법령 제21조의 제한규정 이외에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제한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및 계약업무를 함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해당법령(규정) 등에 따라야 하고 이를 벗어난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2절 설계비 보상

### 1. 대안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238('07.02.07)

#### 질 의

대안입찰에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1개 업체의 대안 설계평가가 불채택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는지? 대안설계가 불채택된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안설계 평가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 회 신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등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경쟁입찰의 성립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특정입찰자자의 대안 설계가 불채택된 사유가 상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경쟁입찰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정 입찰자의 대안설계가 불채택된 때에는 원안설계를 적용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2. 건축설계 공모당선작의 권리 및 보상에 대하여

법무지원팀-1328, 2005. 10. 20

### ■ 질 의

- <질의 1> 건축설계경기 공모당선작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권리 행사방법은?  
 <질의 2> 현저하게 적은 용역비로 발주부서에서 계약 요청한 경우 당선작 제출자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질의 3> 용역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권리주장 및 보상기준은?

### ■ 회 신

건축설계를 공모하는 공고문에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라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발주기관은 당선자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의 이행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공고문에 “계약금액은 적격심사기준에 정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 이하로 한다”로 한 경우, 발주기관이 동 낙찰하한율 보다 현저하게 적은 용역비로 계약요청을 한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낙찰하한율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당선작 제출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동 용역비 산정의 합의가 되지 않아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이행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른 당선자에 대한 보상은 공모조건,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의 불성립 귀책사유, 민사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 3. 대형공사에서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

법무심사팀-339, 2005. 01. 12

### ■ 질 의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시 낙찰탈락자(설계비 보상금 수령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이 발주관서에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여도 되는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 동 설계도서에 대한 권리 규정은 개정(삭제)되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낙찰 탈락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은 당해 입찰공고 내용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면을 이용, 시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제3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1. 일괄입찰공사에서 물가변동

인터넷 질의 2011. 03. 17

## ■ 질 의

일괄입찰공사로 2010. 9. 7 입찰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F/T(Fast Track)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총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분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하여 영구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미이행한 상태입니다.

#### <질의 1>

입찰시 제출한 투찰내역을 총공사 산출내역서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2>

입찰내역을 총공사 산출내역서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된 산출내역서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 <질의 3>

실시설계 미이행부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총공사산출내역서가 확정되었을 경우 조정기준일을 소급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공정표에 의해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해도 되는지

## ■ 회 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 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총 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 증감하는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 요건을 충족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 하여야 하는 것임.

##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법무 41301-55449, 2004.05.28

## ■ 질 의

### <질의 1>

턴키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비, 공사손해보험료 및 미술장식품 등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예산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이 가능한지

### <질의 3>

1차 물가변동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합의서에 1차 증감액을 명시한 후 2차 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5항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합의서가 조정기한을 연장하는 합의서인 경우에는 동 합의서 내용대로 동 예산이 확보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1, 2차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 조정은 1차 계약이 체결된 후 2차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1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임.

## 제4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1. 대형공사 수량정산

법무지원팀-3934, 2007.9.28

## ■ 질 의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의 수량은 일치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을 경우  
(갑설) 산출내역서상의 이중 적용된 수량을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대안입찰공사에서는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계서를 기준으로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 ■ 회 신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공종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2.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에 대하여

법무지원팀-250, 2006.01.23

## ■ 질 의

### <질의 1>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적용단가 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계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를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제3호에 계약상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이 있는지?

### <질의 3>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지?

### <질의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임의의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 ■ 회 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하되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조제3항에

의거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증가된 공사량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가는 동 예규 제21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계상된 경우라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합계단가만 있는 경우에는 합계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 <귀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귀 질의 3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조제2항에 의하여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동조 동 항제3호는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임.

#### <귀 질의 4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현행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거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동 조제1항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에 의거 동 기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 산출내역서의 서식에 정한 바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으나, 다만, 단가 및 금액은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 3. 대형공사 인허가기관 요구사항 수용시의 설계변경

법무지원팀-4724, 2007.11.26

#### ■ 질 의

국가기관과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구간에서 신설도로와 기존도로(군도) 접합부 시공을 위한 교통우회기도 조성시 발주기관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지방경찰청)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교통안전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음.

## 4. 암매각대 단가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1.09.23

### ■ 질 의

#### ○ 현 황

- 당 현장은 일괄입찰공사방식(T/K)으로 발주한 공사로써 실시설계 당시 시장조사한 암매각대(예, -2,000원/㎡)를 설계내역에 공제금액으로 반영한 상태인데, 계약 후 현장에서 시장조사한 암매각대(예, -3,000원/㎡)가 더 높은 경우로서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조정(감액) 해야 하는지 여부 (아래 질의 참조)

#### ○ 질의내용 : 일괄입찰공사방식에서 암매각대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 의견1 :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나, 현장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감액은 가능하므로, 현장에서 시장 조사된 단가(-3,000원/㎡)로 감액 해야한다는 의견
- 의견2 : 일괄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상세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 후 현장에서 시장조사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감액 할 수 없다는 의견

### ■ 회 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일괄입찰공사계약 포함)은 낙찰 및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인바,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그 확정된 계약금액과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조건에 해당하거나 또는 매각대금이나 법정경비 등의 정산특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비목에 대해 실제 지출한 금액이 산출내역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가감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5. 추가시설물의 설치요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72, '08.07.31

### ■ 질 의

일괄입찰로 계약한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입찰일 이후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시설의 설치비는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 ■ 회 신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 관련법령, 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낙찰자 결정 후 심의 확정된 설계서를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임.

## 6.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 금액조정

인터넷 질의 2008.12.17

### ■ 질 의

일괄입찰(턴키)에 있어 전력인입공사 등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는 수탁 공사는 계약시 개략적인 금액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추후 확정된 금액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 ■ 회 신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련 기관에 분리 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분리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로서 동 공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케 하였다면, 이는 시공사의 책임 하에 이행되어야 하는 공사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 부분은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7.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법무지원팀-2148, 2005-12-16

### ■ 질 의

일괄입찰로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의 터널공동구 시공방법이 설계서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에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 설계도면의 단면 변경 없이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는 대신 시공방법을 기계화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계화시공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도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은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상의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임.

## 8.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3875 ( '11.07.29)

### ■ 질 의

“□□공구 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T/K)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입니다. 그러나 하도정비공사의 준설공은 토사굴착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의 지질이 리핑암으로 형성되어 설계시의 준설공단가(토사굴착) 보다 더 높은 품목(리핑암 굴착)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물량의 단가적용에 대하여 아래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입찰안내서〉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로 설계 변경할 경우 공사비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갑설〉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지질조사소홀로 인한 설계시공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는 것이므로 증감물량 모두 산출내역서상 단가(토사단가)를 적용함.

〈을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라 할지라도 설계서가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증가된 물량(리핑암)에 대하여는 리핑단가를, 감소물량은 산출내역서상 단가(토사단가)를 적용함.

### ■ 회 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과 제3항, 동 예규 제21조제4항과 제7항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소된 공사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단가(A)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B)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금액 $[(A+B)/2]$ 에 의합니다. 그리고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9. 대안공사의 설계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62, 2008.10.15

### ■ 질 의

’04. 12. 27일 국가계약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로 발주된 항만공사임  
 공사현장설명서 골재(모래)채취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발주자가 부  
 담하는 관급액으로 설정되었고, 대안설계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증감은 불가능한  
 것으로 입찰안내서의 질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사도급 범  
 위에 포함되지 않았음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대안부분)한 매립용 모래와 재하성토용 모래로는 시  
 공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모래를 사석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으  
 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모래의 감소금액에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  
 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5억원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증가되는 사석량에 대한 금액  
 을 감소되는 금액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질의 : 대안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법으로 시공이 불가  
 하여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설계변경시 관급 감소액을 감안하여 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설 : 관급액은 도급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설계변경시 이를 포함하여 공사비 증감을 따질 수 없음

을설 : 관급액이라 하더라도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된 공종이므로 설계변경시 이를  
 포함하여 공사비 증감을 따질 수 있음

### ■ 회 신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일반조  
 건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  
 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때에는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금액은 계약(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시 관급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그러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6 및 제20조에 따라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 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설계서, 관련규정,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 10. 대안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2068, 2006.06.22

### 질 의

○○공사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정수장 건설공사”에 있어 공사현장 부지 경계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상의 “직접 항타방식”을 “천공후 삽입 항타방식”으로 발주기관이 민원내용을 수용하여 공법을 변경할 경우에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 회 신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민원에 의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민원의 내용,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11. 대안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2753, 2011.06.02

### ■ 질 의

국가기관과 대안입찰로 계약 체결한 “○○도로 건설공사”의 시공 중 현장설명서 조건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책정된 P.S단가공종이 일부 감액되어 감액된 금액에 대한 설계변경시 P.S공종,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증감합산의 방법 중 아래 어느 설의 입장이 타당한지?

- ① 갑설 : 설계변경시 전체계약금액과 동일,
- ② 을설 : 설계변경시 전체계약금액 20 감액,
- ③ 병설 : 설계변경시 전체계약금액 10 감액

### ■ 회 신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및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7항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내용의 미확정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P.S항목 (Provisional Sum : 개략금액)]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2. 부분대안공사의 인허가기관 요구 수용과 위치변경

인터넷 질의 2009-11-18

### ■ 질 의

부분대안공사의 오수차집관로에 대하여 원안설계의 관경 500mm와 동일하게 대안(관경 500mm)을 작성하여 입찰 계약하여 시공 중입니다. 인허가 기관이 발주자에게 오수차집관로의 관경을 기존 청학처리분구와 동일하게 700mm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발주처가 이를 수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는데 발주처는 당사가 오수차집관로의 관경에 대하여 인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계약금액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중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임.

### 13.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3638, 2007-09-06

#### ■ 질 의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구간인 터널시점부 토공은 외부 사토없이 토공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초 원안구간 종점부로 성토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원안구간 종점부에 예상치 못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추가 보상구간 발생 등의 사유로 종점부 시공이 상당기간 지연될 예정이며,

따라서 현재 주공정인 터널공사의 촉박한 공정을 감안할 때 대안구간 터널시점부 절토물량을 원안구간 종점성토부로 바로 운반하지 못하고 용지보상이 완료된 일부구간에 가적치 후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성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대안구간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하여 원안구간종점부의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여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긴급한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해 추가적인 토공가적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안 또는 원안부문 중 어느 부문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대안(대안이 채택된 공중에 한함)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의 이행중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의 변경 등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정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대안이 채택된 공중에서 발생한 사토처리를 위한 사토장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내용변경사유가 발생한 대안공중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14. 대안입찰에서 원안설계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368, 2006.01

### ■ 질 의

대안입찰에 있어 원안으로 계약 체결된 공종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함을 이렇게 표현함)된 사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대안설계로 계약 체결된 공종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에도 원안구간에 서 발생한 사토를 유용 또는 사토하는 항목은 누락되었으며 계약문서에도 원안채택 공종공사의 설계서 내용을 대안채택 공종공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 원안채택 공종공사에 있어 발생한 사토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 조제4호의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대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대안설계가 아닌 원안설계가 채택된 부분의 공종에서 발생하는 사토(암)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 설계서에 사토물량, 처리방법 등이 명시되지 아니 하였다면 동 예규 제19조의2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원안 및 대안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 15. 대안입찰공사의 문화재 시굴관련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1649, 2007.04.20

### ■ 질 의

본 공사는 부분대안입찰 공사로서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서(원안부분, 대안부분)에는 미확정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대안입찰안내서에는 문화재 시·발굴 및 이전 복원에 따른 부담(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대안공종을 설계함에 있어 대안공사구간에 문화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필요한 유적시굴조사비를 산출내역서상에 반영하였음.

갑설 : 대안입찰안내서상 문화재 시·발굴 및 이전 복원공사의 비용부담주체가 발주기관에 있다 할지라도 대안채택된 산출내역서에 유적시굴조사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대안구간에서의 유적시굴조사비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조정 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 원안설계에도 유적시굴조사비는 미확정 공종으로 부담주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대안공종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계약문서)가 아니므로 유적시굴조사비는 대안입찰안내서의 비용부담한계에 의거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회 신

대안공사계약(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동 예규 제19조제2항에 의거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대안입찰안내서 등)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 오류·불분명 등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대안입찰안내서에 의거 문화재 시·발굴 및 이전 복원공사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유적시굴조사비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다 하여 유적시굴조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조사발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조사발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 16. 대안입찰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법무지원팀-3073, 2006.09.15

### ■ 질 의

#### < 현황 >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국도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착공 이후 발주 기관과 인·허가기관인 문화재청과의 노선(路線)결정 재협의 과정에서 당초 노선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어 터널연장이 2.3km에서 4.3km로 약 2km 증가되었으며, 이때 터널구간의 평면선형 및 종횡단선형이 모두 변경되어 시공에 따른 지반조건 및 패턴의 변경과 장대터널로 인한 노임할증 및 운반거리의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 < 질의 >

1. 변경하는 터널구간 4.3km중 2.3km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는 노선이 변경되어 지반조건 등 당초 작업조건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당초 터널구간(2.3km)의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비목의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2. 변경하는 터널 전구간 4.3km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는 기존 계약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비목의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 기관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처가 수용하여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귀 질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터널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대상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이라도 지반조건, 투입장비, 작업조건 등이 당초 설계서의 내용과 달라진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 17. 대안입찰공사의 내역서상의 간접비 조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604, 2007.06.28

### ■ 질 의

당 현장은 2005. 3.에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2005. 4.에 계약체결된 공사로서 대안설계용역비용이 내역서상 직접비(공통가설공사)에 계상되어 있어, 공사원가계산서에 그에 따른 간접비가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바, 현재 공사원가계산서의 직접비 항목에 있는 설계비를 원가계산서상으로 이전 시키는 경우.

갑설) 설계비는 용역비 이므로 공사원가계산서에 포함된 간접비를 총공사비에서 감액시켜야 한다.

을설) 대형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산출내역서의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감액)은 불가하므로 총공사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 ■ 회 신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중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공종별 물량으로 구분되어 있는 설계비 항목을 단순히 공사원가계산서상의 항목으로 변경하여 구분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한 총공사 계약금액은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임.

## 18. 대안입찰공사에서 설계오류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체공사계약 금액의 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84, '08.11.20

### ■ 질 의

발주처의 설계심의를 거쳐 적격판정을 받고 대안입찰로 계약 체결한 “○○도로 공사”의 시공중 □□시 자체감사시 일부공종에 대하여 설계오류를 지적하면서 설 계도면의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공사비의 증감사 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방안이 적합한지 ?

의견 ①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발생할 경우 총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금액은 감액조 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의견 ② ) 대안공사에 대하여 자체감사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는 계약상대자 의 귀책으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되 총액으 로 체결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함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나,

동 예규 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으나 감액은 가능한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19. 일괄입찰에서 계약이행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

법무지원팀-249, 2005.08.25

### ■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 규정한 대형공사의 낙찰자 선정에 필요한 설계심의 등의 제반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계약체결된 일괄입찰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시공은 기본설계서에 의하여야 하는지, 실시설계서에 의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일괄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설계심의 결과 실시설계 수행의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 자문위원회)는 동 실시설계서를 심의한 결과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서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하여 동 실시설계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절차에 따라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 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며 계약의 이행은 동 실시설계서의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의한 설계서의 보완요구는 계약체결 이전에 할 수 있는 조치(계약이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무한정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임)이며 계약체결 이후 입찰의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실시설계서가 미비·불분명 또는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되 계약금액의 증액만큼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가 상이하게 된 귀책사유는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서의 내용 및 실시설계 심의시의 심의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20. 일괄입찰(Fast Track)공사의 계약금액조정

법무심사팀-126, 2005.01.06

### ■ 질 의

일괄입찰(Fast Track)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1. 우선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상의 수량과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당초 우선시공분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공사를 우선시공분에 포함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의 변경 없이 설계도면상의 수량보다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누락 또는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도면상의 수량이 산출내역서에 누락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 경우 산출내역서의 수량은 설계도면과 같게 조정하되, 산출내역서에 누락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 수량의 금액은 무대(0원)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 시행부분은 예산배정상황,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 21.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한계 I

인터넷 질의 2009.06.19.

### ■ 질 의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공구 건설공사”의 시공 중 발주자의 설계조  
정요구가 교량의 형식과 디자인의 전면적인 변경을 초래하고, 당초 기본설계안에  
비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수반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7항의 설계보  
완에 해당되는지?α

### ■ 회 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하는 실시설계서는 일반적으로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실시설계서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실시설계서에 대한 보완을 함에 있어서도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임.



## 22.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외 한계 II

인터넷 질의 2009.06.19.

### ■ 질 의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공구 건설공사”의 시공 중 발주자의 설계조정요구가 동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설계변경요구에 해당한다면 동 공사의 설계지침의 특약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배제는 동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무효인지? 계약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교량 보다 높은 등급으로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거 동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조정을 허용하는 것인지?

### ■ 회 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입찰안내서라 함은 설계 시공일괄입찰 등 대형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가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하여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일부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3항에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입찰안내서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와 같이 입찰안내서에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음.

## 23. 일괄입찰에서의 설계변경(우선시공분 이외의 시공분)

법무지원팀-1897, 2005.11.29

### ■ 질 의

일괄입찰(Fast-Track)공사계약에 있어

- 우선시공분(Fast-Track)에서 계약상대자가 조사 실시한 지질조사보고서 보다 암 물량이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공기 조정이 가능한지
- 계약도면,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가 없는 우선시공분 이외의 공사 부분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향후 계약예정사항으로 총 공사 부기금액만을 명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 회 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예규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안내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조사한 당초의 조사내용보다 많은 양의 암(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의 증액 및 이로 인한 공기 연장(지체상금 면제)은 할 수 없다 할 것임. 또한 장기계속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이는 총사업규모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총공사부기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총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공사기간 등 총사업내용을 확정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6항에의거 우선시공분 (Fast-Track)의 실시설계 적격자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선시공분 이외의 공사물량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단지, 시공의 긴급 등으로 인하여 총공사계약 이전에 하여야 할 실시설계를 총공사계약 이후에 하는 것일 뿐으로서 그 이외의 내용은 일괄입찰계약의 경우와 동일하다 할 것임.

## 24. 일괄입찰공사의 신기술신공법적용에 의한 설계변경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137, 2008. 02. 15

### ■ 질 의

일반 공사에서 신기술·신공법 사용에 의해 현저하게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인정받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괄입찰 공사에서 신기술신공법이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절감액의 100분의 30만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 ■ 회 신

#### 1. “일괄입찰공사에서 신기술신공법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시공중에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음.

#### 2.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절감액의 100분의 30만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나, 객관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동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당해 일괄입찰 공사계약금액 중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정도, 적용법령,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25.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1492, 2007.04.02

### ■ 질 의

#### <질의 1>

일괄입찰로 체결한 ○○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순성토 운반노선이 변경되어 변경된 운반로를 따라 순성토를 운반해야 하나, 산출내역서에 운반거리 4km가 운반비 없이 성토값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질의 2>

당초 설계에는 화포천 습지내에 공사용 가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산출내역서에는 공사완료 후 가축도 재료의 철거비용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교량위치를 화포천 가장자리로 변경하여 공사용 가도로를 조성하도록 변경되고 동 공사용 가도로는 공사중에는 PSC Beam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제작장 기능으로 공사 후에는 기존 농로를 대체하는 영구도로 기능을 갖게 되어 있어 그 공사의 성격이 달라진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해당 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단가는 무대로 처리하고,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26.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실시설계서 변경과 계약금액조정

인터넷 질의 2009-11-18

### ■ 질 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해 우선시공분(Fast Track)에 대해 발주자의 설계지침과 기본계획 및 자체 비교검토를 통해 디젤엔진구동의 기계식RTGC(Rubber Tired Gantry Crane)를 운반 크레인으로 기본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잔여분에 대해 실시설계중인 “□□ 시설공사”와 관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본 공사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에도 불구하고 크레인형식을 전혀 다른 형식인 전기식 RTGC 또는 전기식 RMGC(Rail Mounted Gantry Crane) 기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처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처가 실시설계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 27.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법무심사팀-828, 2005.06.15

### ■ 질 의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의 일부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하고 입찰안내서의 일부 내용과 다른 기본설계부분도 보완하여 실시설계심의회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동 실시설계서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목적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기본설계와 다르게 작성된 실시설계부분은 기본설계에 맞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일괄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실시설계서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실시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범위를 벗어난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발주처의 당초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임.

또한 일괄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한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하고 시공하여야 할 것임.

## 28. 턴키공사에서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인 경우 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44, 2008.04.01

## ■ 질 의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사무소 건설공사 이행중 지자체 청사 등 건립공사에 있어서 2001.9.21 계약체결시 케이블전선 규격이 KS규격이었으나, 공사이행중 공사관련법령(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의 개정으로 2006.7.1부터 IEC규격의 제품만 생산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또는 신규비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공사이행중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의 계약금액은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4호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판단은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기,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 등과 설계서 변경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29. 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방법

법무심사팀-1214, 2005.04.06

## ■ 질 의

턴키공사 시공중 마감도면에는 <냉연강판+방치Paint+조합Paint>로 표기, 철골공사 구조일반사항 도면에는 아연도 강판으로 표기되어있어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동의아래 아연도 강판으로 시공하였는바,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방법은

## ■ 회 신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정

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을 것이며, 설계서의 작성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 시공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마감도면과 구조일반사항 도면의 상이로 시공중 발주자의 동의아래 설계변경 하였다면 동 예규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대로 시공하지 않고 새로운 시공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등 포함)로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동 예규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바,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1조제5항에 의하여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 공종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

### 30.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법무지원팀-4614, 2007.11.16

#### ■ 질 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00집단에너지시설건설공사”를 2007년4월 16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바, 아래 내용을 질의합니다.

질의1) 턴키공사에 있어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실시설계진행 중 발주처의 사업부지 추가확보에 따른 부지활용계획 변경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2) 턴키공사에 있어 기본설계 이후 교통·환경영향평가자료를 실시설계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설계변경 여부



## ■ 회 신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 31.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1043, 2005.09.30

## ■ 질 의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 당시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하였으며, 실시설계단계에서 조사 및 예측이 불가능한 지하구조물을 시공 중 발견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 회 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도 설계서의 오류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등 동 예규 제21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지하구조물의 존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사전인지를 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지하매설 지장물도면, 현장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제5절 기타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1. 기술제안입찰의 계약금액조정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431, 2008.11.13

#### ■ 질 의

- ① 국제법시행령 103조의 기술제안입찰과 105조의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동 시행령 제14조6항3호의 단서조항이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 ②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국제법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설계서의 범위는?
- ③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설계서의 변경은 없으나 산출내역서의 물량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수량산출 착오에 의하여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설계변경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 ④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의 범위는 공사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기술 제안이 채택된 부분”의 범위는

#### ■ 회 신

##### 1. “질의 1”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에서 말하는 공사는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써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를 말함.

##### 2. “질의 2, 3”과 관련하여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바,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조정도 가능하지 않음.

### 3. “질의 4”와 관련하여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기술제안이 채택되어 낙찰이 된 경우에는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의 관련 부분을 수정하는 것임.

## 2. 기술제안으로 일부 증가되는 관급자재의 구입비용 부담주체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42, 2011.05.09

### ■ 질 의

당사는 ○○공사가 입찰공고한 “□□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토공사 및 지정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에서 당사가 제안한 항목(item) 중 원안설계에서 지하2층으로 계획되었던 지하주차장을 Transper Plate 구조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하1층으로 제안, 지급자재비 총액을 약 4.3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제시한 기술제안사항은 기술위원심의회에서 설계적격으로 심사되었으며, 당사가 제시한 입찰내역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는 입찰안내서의 입찰유의사항 중 자항을 근거로 지급자재인 PHC PILE 자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하라는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술제안으로 전체 관급자재 비용은 절감되었으나 추가로 소요되는 일부 관급자재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설계서에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관급자재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구매,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추가도급계약후 비상주감리원의 변경요청 반영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802, 2008.05.08

#### ■ 질 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을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 지시에 의거 2004.8.18 추가도급계약을 완료하여 시공 중입니다. 그러나 계약변경전 2004.5.07 설계도서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였으나 비상주감리원의 설계도서 검토결과가 2005.1.31 통보되어 이미 체결된 변경계약의 내용(시공방법)을 수정하여 시공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민원으로 변경된 시공방법의 재차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인지 아니면 발주처의 부담인지?

#### ■ 회 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안내서(기본계획, 지침 등) 및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계약금액 증·감조정이 가능한 것임.

### 4. 턴키공사의 운반거리 정산

법무지원팀-1177, 2005.10.10

#### ■ 질 의

턴키입찰 공사에서 설계서나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토처리 거리(규격)에 대하여 단가 산출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리(10Km)보다 가까운 경우도 있고 먼 거리도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턴키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설계 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의 이행 중

사토장의 위치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의 변경 등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정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동 예규 제23조 및 계약예규 「실비산정기준」(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바, 개별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입찰안세서, 계약조건, 설계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 5.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법무지원팀-275, 2006.01.10

### ■ 질 의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제경비율 적용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에 규정한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중 ‘관계법령’에 조달청장이 발표한 2005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포함되는지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재경부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율과 같거나 낮고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보다 높을 때 적용하여야 할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 ■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순공사원가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정한 율(퇴직공제부금비 등 법령에 율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이 정한 율을 포함)로서, 동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의 세비목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소관부서에서 발표 또는 고시하는 율, 제20조의 일반관리비율, 제21조의 이윤율을 말하

는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장이 발표하고 있는 “공무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장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공무원가 관련 제경비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소관부서에서 발표 또는 고시하는 율을 기준으로 공무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접노무비, 경비의 일부 세항목,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대하여 공무원가계산시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정한 적용기준으로서, 동 기준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관계법령에 율을 정하지 아니한 제비율 등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로 볼 수 있음.

## 6. 턴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213('08.10.17)

### ■ 질 의

일괄입찰 대상공사에 있어 고효율 기자재의 정부고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성 여부, 가능하다면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액이 불가할 경우 총액 범위내에서 내역조정만 할 수 있는지?

### ■ 회 신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동 조건 제21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공사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공사관련법령 및 관련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를 계약체결이후 공사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조건 제21조제3항제2호에 의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동조건 제21조제2항에 의거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안내서,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7.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공사의 준공서면을 공사감독관이 준공일에 접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송 중 분실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5136, '07.12.26

### 질 의

○○공단에서 발주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계약된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공사(계약금액 82억원)현장입니다. 현장에 상주중인 공사감독관이 차수공사의 준공계서류를 준공기한 내에 접수한 후 경유인을 날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송 중 분실하여 재작성한 준공계 서류를 차수공사의 준공일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 지체상금의 부과여부?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공사감독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의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의 업무는 감리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차수공사 준공기한 내에 공사감독관이 준공계 서류를 접수하고 그 경유인을 날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발송하였다면 동 준공계 서류는 공사감독관이 접수한 날자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8.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 금액 조정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524('08.12.17)

### ■ 질 의

일괄입찰(턴키)에 있어 전력인입공사 등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는 수탁 공사는 계약시 개략적인 금액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추후 확정된 금액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 ■ 회 신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련기관에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분리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로서 공 공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케 하였다면, 이는 시공사의 책임하에 이행되어야 하는 공사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부분은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전의 전선인입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는 상기 기술된 점을 고려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9.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법무지원팀-1862, 2007-5-08

### ■ 질 의

- 2-가. 공사 설계도서에 반영된 특정제품의 판매자가 소수의 협약업체에게만 동 제품을 판매하고, 협약업체가 아닌 자에게는 제품판매단가를 높게 제시함으로써 소수 협력업체에게만 공사수주를 가능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
- 2-나. 대안 및 턴키입찰에서 낙찰 받은 자가 공사설계서에서 지정한 특정자재 및 제품으로 시공하지 않고 다른 자재 및 제품으로 변경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
- 2-다. 공사설계서에서 지정한 특정 신기술의 개발자가 일부업체에게만 신기술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술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에게만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신기술사용권 협약을 하지 않은 업체도 동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 2-라. 공사설계서에서 특정한 신기술 적용대상공사에 대하여 신기술개발자와 기술사용권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 신기술개발업체가 신기술 사용 및 자재판매를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공사수행을 지연 또는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경우 신기술개발자의 기술의 사용 및 자재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가 법적타당성을 가지는 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은 있는지?
- 2-마. 계약상대자가 공사설계서에서 지정한 특정자재만을 신기술개발자로부터 구매한 후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자가 시공한 경우에 신기술보호관계법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는지?

### ■ 회 신

#### 1. 귀 질의 2-가, 2-나, 2-라, 2-마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이행 중 공사자재 변경 요청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해 공사에 사용할 공사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자재로 변경할 것인지 여

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물품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설계서에 반영된 신기술을 신기술개발자가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신기술개발자의 보호 등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동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www.moct.go.kr](http://www.moct.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http://www.ftc.go.kr))에 신고하실 사항임.

## 2. 귀 질의 2-다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는 바, 입찰참가자격 여부는 발주부서의 당해 입찰공고와 관련법령에 따라 정하여 질 사항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제10장 국제입찰



## 제10장 국제입찰

### 1. 국제입찰대상 여부

인터넷 질의 2011. 07. 28

#### ■ 질 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우리공사는 □□공사의 자회사인 ○○개발공사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공사건의 추정금액이 488억원입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당 공사 같은 경우에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는 바, 이 경우 "○○개발공사"는 정부조달협정문(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한국양허표 부속서(ANNEX)3에서 정한 국제입찰대상 조달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조달요청금액에 불문하고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됨.

### 2.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의거 국제입찰 여부

인터넷 질의 2011. 05. 11

#### ■ 질 의

GPA 규정상 회원국들간의 국제 입찰은 가능하고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간의 국제입찰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GPA협정문 제 7조 3항 '가'조에 보면 '공개 입찰절차는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있는 공급자'란 '비회원국'도 포함되는지 상기 조항에 의하면 비회원국도 국제 공개입찰에 입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달기관의 특별한 공고가 나와야지만 국제 입찰에 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입찰 중 공개입찰 및 지명입찰의 정의 및 차이점은

## ■ 회 신

귀하의 질의는 국가계약법규에 의한 질의내용이 아닌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청의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국제입찰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정한 범위내에서 정부조달협정가입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협정 비회원국에 대하여 별도의 국제입찰개방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없으며, 다만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가입국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동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 용어의 정의는 동 특례규정 제2조에 의하는 것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특례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직접 정한 자격 및 지명기준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나,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지명기준 등은 동 특례규정 제4조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됨.

### 3 국제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

법무지원팀-1768, 2005.11.22

## ■ 질 의

국제입찰로 시행하는 내자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정부조달협정회원국 국민으로서 동 회원국에서 생산, 제조(제품의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로 공고한 경우 "한국에서 당해 입찰에 명기된 품목을 생산, 제조(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한다고 인정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 ■ 회 신

국제입찰로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 및 동 특례규정 제12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입찰을 실시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당해 입찰공고 내용, 물품의 원산지, 제품의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을 한자가 정부조달협정 회원국 국민인지 여부, 구매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4. 국제입찰과 지역의무공동계약

인터넷 질의 2011. 03. 30

##### ■ 질 의

국제입찰(물품) 재경부 고시금액이 6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7천만원이 넘는 국제입찰(물품)을 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식으로 진행할 때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을 할 수 있나요? 제안서 평가조항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나요?

##### ■ 회 신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39조에 정한바와 같이 동령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제72조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5. 외국기업 참여시 불이익 해당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173, 2011.08.17

##### ■ 질 의

국내관급입찰에서 입찰공고, 입찰평가 및 낙찰을 심사하는 기관이 조달청인지? 외국기업이 국내입찰에 참여시 입찰평가에 대한 불이익조항이 있는지?

## ■ 회 신

개별적으로 발주되는 국내입찰에서의 입찰공고·적격심사·낙찰자선정은 입찰목적물의 특성·목적·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요청"을 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낙찰자선정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6. 국제입찰진행방법관련

인터넷 질의 2011. 10. 24

## ■ 질 의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진행방법을 2단계 입찰로 실시하여 기술성, 상업성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여도 법규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계약법 상에는 2단계 경쟁 후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가를 불비치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협상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 ■ 회 신

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39조에 정한바와 같이 동령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등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7. 외국기업 평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173, 2011.08.17

### ■ 질 의

외국기업의 국내 관급입찰참여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입찰평가를 하는지?

### ■ 회 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조항은 국가계약법령이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

2011년 12월 인쇄

2011년 12월 발행

□ 발 행 : 조달청

□ 해 석 편 집 :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7071)

위원장 김경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위 원 이영생 위 원 박주선

위 원 장완수 위 원 류정수

위 원 최태홍 변호사 윤태석

위 원 정태일 변호사 유경훈

위 원 우영명 변호사 장기영

□ 편집및인쇄 : 대흥인쇄사(042-634-2513)